

한국장애인재단 2026-02

#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개념화와 적용

: 장애 법률 분석과 측정 도구 개발

윤상용

신은경·김동기·문영임·김보미·장진영·송채은



한국장애인재단 2026-02

#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개념화와 적용

## : 장애 법률 분석과 측정 도구 개발

|       |     |                      |
|-------|-----|----------------------|
| 연구책임자 | 윤상용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 공동연구진 | 신은경 |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 김동기 |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 문영임 | 한국장애인재단 장애통합연구본부장    |
|       | 김보미 | 한국장애인재단 장애통합연구본부 연구원 |
|       | 장진영 | 한국장애인재단 장애통합연구본부 연구원 |
|       | 송채은 | 한국장애인재단 장애통합연구본부 연구원 |

본 연구보고서의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한국장애인재단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요약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장애인의 삶과 권리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요소임
  - 그러나 기존 장애 인식 연구는 주로 의료모델에 기반하여 장애를 개인의 손상과 기능 제한의 문제로 이해하고, 편견·동정·심리적 거리감 등 개인적 태도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으며, 이러한 접근은 장애를 사회적 관계와 권리의 문제로 이해하는 데 한계를 가짐
- 반면 장애의 사회모델과 인권모델은 장애를 사회적 억압과 권리의 문제로 재구성하며,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이해하는 관점을 제시하였음
  - 이에 따라 장애 인식 역시 단순한 심리적 태도가 아니라, 장애를 어떻게 이해하고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위치시키는가에 관한 다차원적 인식 구조로 재개념화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변화된 장애 모델에 기반하여 주관적 장애 인식과 장애 관련 법률의 장애 개념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측정 도구와 분석틀은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였음
  - 특히 장애 법률은 사회의 장애 인식을 반영하고 재생산하는 규범적 장치라는 점에서 중요함
- 이에 본 연구는 장애 인식을 권리 기반의 다차원적 개념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관적 장애 인식 측정 도구와 장애 법률 분석틀을 개발함으로써, 이론과 제도를 연결하는 통합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2.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와 분석을 결합한 단계적 접근으로 수행됨
  - 먼저 개념 모델과 사회모델·인권모델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기존 장애 인식 연구의 한계를 분석함
  - 다음으로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을 인지, 윤리, 정의의 세 차원으로 개념화하고, 차원별 명제를 구성함
  - 이후 장애인권리보장법률을 중심으로 장애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이 법률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를 평가함.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권 기반 장애 인식 측정 문항과 측정 도구를 개발함

## 3.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사회모델 및 인권모델에 기반한 장애 인식 측정 도구와 법률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장애 인식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는 학술적 의의를 가짐
- 또한 정책적으로는 공공정책과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의 인권 기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II. 선행연구 검토

### 1. 장애 개념 모델의 지형: 사회모델과 인권모델 관계를 중심으로

#### 1) 장애 모델 및 장애 관점

- 장애 모델은 사람들을 분류하고 장애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두 가지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장애인의 삶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정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이러한 기능은 장애를 단순한 개인적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해석되는 대상임을 보여줌(Sivers, 2020)
- 나아가 장애 모델은 단순히 분류와 설명에 그치지 않고, 장애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즉 장애가 ‘나쁜 차이(bad difference)’인지, 혹은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차이로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침. 이러한 점에서 장애 모델은 개념적 도구를 넘어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는 규범적 장치로 기능함(Sivers, 2020)
- 장애에 대한 개념적 접근은 크게 소수자 집단 관점(minority group approach)과 보편주의적 관점(universalist or interactional approach)으로 구분됨. 이러한 구분은 장애를 특정 집단의 특수한 상태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 조건의 보편적 형태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반영함(Bickenbach, 2020)
  - 소수자 집단 관점은 장애를 사회적 억압의 결과로 강조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장애와 건강의 관계를 분리하고 손상을 가치중립적인 차이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점은 경험적·철학적 비판의 대상이 됨(Bickenbach, 2020)
  - 보편주의적 관점은 장애를 특정 집단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건강 및 기능 문제와 연결된 연속적 현상으로 이해함으로써,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함



## 2) 사회모델과 인권모델의 관계

- Degener(2016)는 CRPD가 장애를 단순히 사회적 억압의 결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재정립하며, 국가에 대해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보호·촉진·실현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범적 틀을 제시함으로써, CRPD가 단순히 사회모델을 반영하는 수준을 넘어 “장애의 인권모델(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주장함
- 인권모델이 사회모델을 계승·발전시키는 이론이라는 입장은 이른바 ‘개선론(improvement thesis)’으로 정식화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주창자인 Degener는 인권모델이 사회모델과 구별되는 지점을 여섯 가지 명제로 정리하면서, 장애 개념의 역사적 전개가 의료모델에서 사회모델을 거쳐 인권모델로 발전해 왔다고 주장함
- 사회모델과 인권모델 간의 관계를 개선이나 대체의 관계로 이해하는 관점과 달리, 최근 연구에서는 두 모델이 상이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상보적 관계에 있다는 ‘보완론(complementarity thesis)’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Lawson과 Beckett은 인권모델이 사회모델을 대체하거나 일방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두 모델을 상보적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함(Lawson & Beckett, 2021).
- 구체적으로 인권모델은 법과 정책의 설계 및 이행을 위한 제도적·규범적 틀을 제공하는 반면, 사회모델은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틀로서 다양한 맥락에서 장애인의 해방적 정치와 집단적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두 모델은 분명한 대비가 됨

## 2. 장애 개념과 장애 법률

- 장애 법률에서 장애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는 권리보장의 대상과 권리보장의 범위, 국가와 사회의 책임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임
- 이에 국내 장애 법률 중 장애 개념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주요 현행 법률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장애 개념을 살펴보고 그 한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세 법률의 장애 개념은 장애의 정의에 있어서 의료모델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세부 조항에서는 차이를 보임
  - 세 법률 모두 의료모델, 사회모델, 인권모델을 혼용하고 있었으나,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법률의 특성상 다른 두 법률에 비하여 의료모델에 기반한 장애 개념이 지배적임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법」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비해 사회모델과 인권모델을 반영한 권리보장 조항들이 존재하였으나, 장애를 정의함에 있어서 여전히 의료모델의 장애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 국내 주요 장애 법률들은 권리중심의 국제적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 3. 인권 기반 장애 진단 및 평가

- 장애 진단·판정 체계는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는 인권 기반 접근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장애의 제도적 인정을 단순한 복지 수급 판별이 아니라 시민권과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 장치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최근 논의에서는 평가자의 권한에 집중된 전통적 진단체계가 CRPD의 권리 기반 접근과 긴장 관계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당사자의 참여 보장, 다학제적 평가, 접근성 확보, 공동설계(co-design) 등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인권 기반 장애 판정 체계가 제안되고 있음(Waddington & Priestley, 2021)
- 또한 이러한 접근은 장애를 구조적 장벽과 사회적 배제의 문제로 이해하고, 진단의 목적을 통제와 낙인에서 시민권 회복과 자기결정권 보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나아가 장애 인식 및 태도 척도는 단순한 판정 수단을 넘어, 인권 증진과 사회적 포용 수준을 평가하는 실증적 지표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4. 인권 기반 장애 인식 척도 개발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 장애 인식 및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차별 구조를 반영하는 다면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왔으며, 기존 연구들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인지·정서·행동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하면서 다양한 척도를 개발해 왔음
-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초기의 ATDP는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 우호성을 단일 차원으로 측정하였으나, 이후 DFS는 상호작용에서의 긴장감과 심리적 거리감 등을 포함한 다차원적 구조를 제시하였음
  - 최근 SADP와 같은 척도는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인권 기반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적대성뿐 아니라 동정과 보호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양가적 태도’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음
  - 또한 방법론적으로도 최근 척도들은 인지, 정서, 행동 의도를 통합적으로 측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 국내 연구 역시 장애 인식을 단순한 태도 차원을 넘어 인권, 사회정의, 삶의 질, 사회적 배제, 정체성,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 왔음
  - 인권 감수성 지표와 통합적 장애인 인권지표는 권리 보장과 사회정의의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양가적 장애인차별척도(ADS)는 적대적 차별과 호의적 차별을 동시

---

에 측정하였음

- 또한 삶의 질 척도와 사회적 배제 척도는 장애인의 실제 삶의 조건과 참여 수준을 분석하였고, 장애정체감 척도와 주체성 척도는 장애인의 자기수용과 권리주장 능력을 평가하였음
- 환경 척도와 WHODAS 2.0은 ICF 기반 접근을 반영하여 장애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였음



### Ⅲ. 인권 기반 장애 인식 개념화

#### 1. 인권 기반 장애 인식 개념화의 필요성

- 사회모델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 등장한 인권모델은 사회 모델이 의도적으로 배제해 온 손상의 문제—즉 손상을 가진 몸(존재)이 경험하는 육체적 감각과 정신적 의미화(부정성 또는 긍정성),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적·사회심리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하고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하였으며, 또한 장애 내부의 이질성, 즉 손상의 다양성과 성, 인종, 계급 등과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던 사회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다 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보완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인권모델은 개인모델이나 사회모델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장애 개념을 제시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음
- 한편, 장애 모델을 단일한 설명 체계로 이해하는 관점 자체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즉, 장애는 존재론적, 윤리적, 정치사회적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이 이를 전면적으로 포착하여 설명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함
-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장애인권모델’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대신에 보다 포괄적이고 확장적인 개념으로서 ‘인권 기반 장애 인식(human rights-based disability perception)’을 제안하고자 함

#### 2. 인권 실현의 조건과 논거

- 본 연구는 인권을 “어떠한 몸의 존재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명제로 정의하며, 이는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차이와 무관하게 모든 인간

이 존엄한 존재로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함. 또한 인권은 단순한 선언적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제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의미를 갖는다고 봄

- 이에 본 연구는 인권 실현의 조건을 세 가지로 제시함
  - 첫째, 타인으로부터의 수용으로서, 개인이 사회 속에서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는 조건임
  - 둘째, 자기 긍정으로서, 자신을 존엄한 권리 주체로 이해하고 삶을 주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내적 기반임
  - 셋째, 정치사회공동체의 보장으로서, 법·제도·정책 등을 통해 권리 실현의 조건을 제공하는 사회적 책임임
- 결국 인권은 타인의 인정, 자기 긍정, 제도적 보장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권리이며, 이러한 관점은 인간 다양성을 전제로 한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권 실현의 세 가지 조건들은 관계적 존재론에 기반한 Honneth(1995)의 인정 이론과 국제 인권 규범이라는 이중의 이론적 논거에 기반하여 정당화될 수 있음

### 3. 장애 인식의 개념화

- 본 연구는 장애 인식을 단순한 지식이나 태도가 아니라, 장애라는 속성을 지닌 타자에 대한 인식, 즉 '타자성(otherness)'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이해한다. 장애는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가 구성된 차이로 이해되며, 장애 인식은 곧 타자 인식의 한 형태로 파악될 수 있음
- 타자 인식은 우선 장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인지적 차원을 포함함
  - 즉 장애를 비정상성으로 볼 것인지, 인간 다양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인식의 방향은 달라짐
- 또한 타자 인식은 타자를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상호작용할 것인가



에 관한 윤리적 차원을 포함함

- 이는 수용, 공감, 배제, 협력 등의 정서와 행동을 포괄함
- 나아가 타자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장애 인식은 권리와 지원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정의의 문제로 확장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장애 인식을 인지, 윤리, 정의의 세 차원이 결합된 다차원적 인식 체계로 개념화하며, 이를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이론적 토대로 제시함

#### 4.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규범적 구성 요소 및 개념화

##### 1) 인지 영역: 장애에 대한 이해와 타인의 수용의 인식적 기반

-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인지 영역을 구성하는 명제와 구체적 의미는 다음과 같음
- 명제 1(손상의 보편성)
  - 손상은 인간의 삶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인간 조건이다.
- 명제 2(손상의 실존성)
  - 손상은 당사자의 일상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며, 육체적·정신적 고통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
- 명제 3(사회적 억압에 따른 고통·불리의 가중)
  - 손상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 지원체계의 부재 또는 불충분함으로 인해 사회적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추가적인 불편함과 사회적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다.
- 명제 4(장애의 상호작용적 본질)
  - 장애는 손상과 사회·환경적 조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사회참여의 제한이나 불리함이 발생하는 상태이다.

## 2) 윤리 영역: 타자에 대한 태도와 자기 긍정의 관계적 조건

-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인지 영역을 구성하는 명제와 구체적 의미는 다음과 같음
- 명제 5(손상의 중립성·긍정 가능성)
  - 손상은 인간 다양성의 한 형태이며, 본질적으로 비정상·결함·부정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 명제 6(심리적 태도의 평등성)
  -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은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며, 장애인을 향한 심리적 태도 역시 동등한 존중과 개방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 명제 7(외부적 태도의 평등성)
  - 모든 사람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배제·회피·과잉보호와 같은 차별적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 3) 정의 영역: 정치사회공동체의 보장과 권리의 제도화

-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인지 영역을 구성하는 명제와 구체적 의미는 다음과 같음
- 명제 8(장애인의 권리주체성)
  - 장애인은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 기반하여 권리를 재해석·확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주체이다.
- 명제 9(동등한 대우)
  - 사회와 국가는 장애인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해야 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
- 명제 10(국가의 의무성)
  - 국가는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 향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적극적 의무를 가진다.
- 명제 11(지원의 효과성)
  -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은 손상으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 명제 12(지원의 충분성)

-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존엄한 삶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어야 한다.

○ 명제 13(지원의 주류화)

- 장애인 지원은 주류화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수화 전략이 보완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명제 14(당사자 참여)

- 국가는 장애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서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IV.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의 인권 기반 장애 인식 수준 분석

### 1.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 입법 배경 및 입법 추진 경과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논의는 2012년 이후 지속되어 왔으며, 20·21대 국회에서는 여러 법률안 발의와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제정에는 이르지 못했음. 22대 국회에서는 김예지안, 최보윤안, 서미화안이 발의되었고, 이후 이를 통합·조정한 수정대안이 2026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음. 주요 쟁점으로는 탈시설 명시 여부, 거버넌스 구조, 재원 확보 등이 제기되었음
- 입법의 배경에는 기존 「장애인복지법」 중심 체계가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보다 서비스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는 문제의식, CRPD에 부합하는 권리중심 패러다임 전환 요구,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새로운 기본법 체계의 필요성, 그리고 장애 관련 법체계의 분절성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와 장애계는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재구성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
- 결국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새로운 복지서비스 도입을 넘어, 장애인정책의 규범적 기반을 복지·시혜 중심에서 권리·참여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기본 법적 성격을 가짐. 또한 지역사회 자립, 권리구제, 정책조정 등을 포괄하는 상위 법체계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한국 장애정책의 인권 기반 전환을 상징하는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의 인권 기반 장애 인식 수준 분석

### 1) 분석 방법

- 본 연구는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이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적용하였음
  - 분석 대상은 서미화안, 최보윤안, 김예지안의 해당 조문이며, 분석틀은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세 영역인 인지, 윤리, 정의와 각 영역별 명제로 구성되었음
- 평가는 3점 척도를 활용하여, 명제가 조문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경우 2점, 부분적으로 암시된 경우 1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하였음
  - 분석은 단순한 용어 존재 여부가 아니라, 장애의 상호작용적 이해, 권리주체성, 인간 조건으로서의 손상 인식 등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개념적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이를 통해 각 법률안이 장애를 인간 조건, 사회적 관계, 권리의 문제로 어떠한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다차원적으로 비교·분석하였음

### 2) 분석 결과

- 세 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서미화안, 최보윤안, 김예지안)은 전반적으로 윤리 및 정의 영역에서는 높은 수준의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나, 인지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한계를 보였음
  - 특히 손상의 보편성, 실존성, 규범적 중립성과 같은 핵심 명제는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으며, 반면 장애의 상호작용적 본질과 사회적 장벽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충실히 반영되고 있었음. 이는 법률안들이 사회모델의 관점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윤리 영역에서는 심리적·행동적 평등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었고, 정의 영역에서도 권리주체성, 국가의 의무, 당사자 참여 등이 강하게 구현된 것으로 나타났음

- 
- 다만 지원의 충분성과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일부 한계가 확인되었음
  - 종합하면, 세 법률안은 권리보장과 차별금지라는 규범적 측면에서는 진전을 이루었으나, 장애를 인간 조건과 경험의 차원에서 재이해하려는 인지적 전환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V. 인권 기반 주관적 장애 인식 측정 문항 개발

### 1. 주관적 장애 인식 측정 문항 개발 절차

- 본 연구는 인권 기반 주관적 장애 인식 측정 문항 개발을 위해 ① 개념 정의 및 차원구성, ② 초기 문항 풀(Item Pool) 구성, ③ 연구진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 검토의 3단계를 수행하였음
  - 본 연구는 척도 개발이 아닌 문항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내용타당도 검증, 예비조사, 본조사 및 통계적 타당화 절차는 포함하지 않았음
- 1단계에서는 인권모델, 장애인권리협약(CRPD), Honneth의 인정이론 등을 토대로 ‘인권 기반 주관적 장애 인식’을 개념화하였음
  - 이는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고,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인식체계로 정의됨
  - 이를 바탕으로 장애 인식을 인지, 윤리, 정의의 세 차원과 14개의 세부 명제로 구조화하였음. 인지 차원은 손상의 보편성·실존성·상호작용성을, 윤리 차원은 손상의 중립성 및 평등한 태도를, 정의 차원은 권리주체성·국가의 의무·당사자 참여 등을 포함함
- 2단계에서는 기존 인권 및 장애 인식 관련 국내외 연구와 척도를 검토하여 연역적 방식으로 초기 문항 풀을 구성하였음
-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5명의 연구진이 문항들이 3개 차원과 14개 세부 차원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교차 검토하여 안면타당도를 확인하였음

### 2. 주관적 장애 인식 측정 문항(안) 제안

- 본 연구에서는 인지 차원 17문항, 윤리 차원 14문항, 정의 차원 30문항으로 구성된 총 61문항의 측정 문항(안)을 제시하였음

## 1) 인지 차원 문항

| 세부 차원                            | 문항                                                                 |
|----------------------------------|--------------------------------------------------------------------|
| 1. 손상의<br>보편성                    | 장애(손상)를 가졌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다.                               |
|                                  | 장애(손상)는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이다.                                      |
|                                  | 장애(손상)는 누구에게나 삶의 어느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 삶의 보편적 조건이다.                  |
|                                  | 장애(손상)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다양성 중 하나다.                                       |
| 2. 손상의<br>실존성                    | 장애(손상)는 인간의 일상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                                  | 장애(손상)는 개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
| 3. 사회적<br>억압에 따른<br>고통·불리의<br>가중 | 서비스 신청·심사 절차가 복잡해 실제 이용이 어렵다고 본다.                                  |
|                                  | 적절한 지원이 있으면 장애인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                                   |
|                                  |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격리와 같은 사회적 배제를 선고받는 것과 같다.                             |
|                                  | 장애(손상)로 인한 어려움은 사회적 지원이 부족할수록 더 커진다.                               |
| 4. 장애의<br>상호작용적<br>본질            | 장애(손상)를 가진 사람은 사회적 장벽 때문에 이동, 교육, 고용, 문화생활 등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다. |
|                                  | 장애는 주로 개인의 신체·정신 손상 때문에 생긴다.(R) <sup>1)</sup>                      |
|                                  |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보다는 사회적 장벽과 차별로 인해 발생한다.                         |
|                                  |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주로 사회 환경의 문제이지 개인의 손상 때문이 아니다.                 |
|                                  | 장애는 개인의 손상(신체·정신적 특성)과 사회적 장벽(환경·제도·태도)이 함께 작용하면서 생기는 것이다.         |
|                                  | 동일한 장애(손상)를 가지고 있어도 사회적 환경에 따라 삶의 경험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1) R은 역문항(Reverse Item)을 의미함



## 2) 윤리 차원 문항

| 세부 차원                | 문항                                                          |
|----------------------|-------------------------------------------------------------|
| 5. 손상의<br>중립성·긍정 가능성 | 나는 장애(손상)를 숨기거나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정체성의 일부로 본다.          |
|                      |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손상)를 정체성으로 표현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장애(손상)는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거나 열등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
|                      | 장애(손상)가 있는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
| 6. 심리적 태도의<br>평등성    | 나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동일한 인간적 존엄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한다.             |
|                      | 장애인의 삶은 보호의 대상이기 이전에 존엄한 삶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본다.                  |
|                      |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성'에 장애인을 맞추는 것은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 나는 장애인을 대할 때 불편함이나 어색함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
|                      | 나는 장애인을 대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다.       |
| 7. 외부적 태도의<br>평등성    | 나는 장애인과 함께 있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
|                      | 장애인의 삶을 대신 판단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존엄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                  |
|                      |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다.                  |
|                      | 나는 장애인이 학교, 직장,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인다.            |
|                      | 나는 장애인이 주변에 있을 때, 필요하지 않은데도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과하게 대하려 하지 않는다. |

### 3) 정의 차원 문항

| 세부 차원          | 문항                                                                       |
|----------------|--------------------------------------------------------------------------|
| 8. 장애인의 권리 주체성 | 장애인의 일상적 선택과 삶의 방식은 존엄성의 표현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장애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
|                | 장애인도 결혼, 출산, 양육 등에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                | 장애인은 지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시민이다.                   |
|                | 장애인의 삶의 경험과 의견은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
| 9. 동등한 대우      | 장애인의 시민권, 노동권, 주거권은 다른 시민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
|                | 나는 장애인에게도 모든 기본적 인권이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장애인의 권리는 복지 차원의 배려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일부라고 본다.                                 |
|                | 장애 관련 지원에 대한 요구가 지나친 것 같다.                                               |
|                |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 일자리, 이동, 문화생활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
|                | 사회적 억압으로 인해 초래된 기회 불평등 및 결과적 불이익을 보상하고자 하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는 동등한 대우의 원칙에 부합한다. |
| 10. 국가의 의무성    | 장애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다.                                            |
|                | 합리적 편의 제공은 최소화해야 한다.(R)                                                  |
|                |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보다 사회의 책임 있는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                | 장애 관련 지원은 국가의 사회적 책임 범주에 속한다.                                            |
|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사회보장 제도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                                       |
|                | 국가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



| 세부 차원       | 문항                                                         |
|-------------|------------------------------------------------------------|
| 11. 지원의 효과성 | 장애인 지원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
|             | 장애인 지원은 장애인의 자립과 자기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
|             | 장애인 지원은 실제 변화보다는 형식적인 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R)                   |
| 12. 지원의 충분성 | 우리 사회의 대중교통·건물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R)                 |
|             | 학교/직장/공공기관에서 합리적 편의 제공이 실제로 잘 이루어진다.(R)                    |
|             | 장애인 지원 제도는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도달하고 있다.(R)                        |
|             | 장애인 지원은 최소한의 생존 수준이 아니라, 존엄한 삶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
|             | 장애인 지원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 13. 지원의 주류화 | 장애인 지원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제도 안에서 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             |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나 제도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 14. 당사자 참여  | 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 결정 과정에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
|             | 장애인의 정치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                   |
|             | 전문가가 결정하면 당사자 참여는 없어도 된다.(R)                               |

## VI. 결론

### 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 본 연구는 장애 개념과 장애 인식을 개인적 태도와 제도적 구조의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이라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음
  -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장애를 인간 조건과 사회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는 인지 차원, 존엄과 평등의 태도를 포함하는 윤리 차원,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포함하는 정의 차원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구조를 정립하였음
- 이를 토대로 장애인권리보장법틀안을 분석한 결과, 권리주체성·동등한 대우·국가의 의무 등 윤리 및 정의 영역은 비교적 충실히 반영되고 있었으나, 손상의 보편성·실존성·규범적 중립성과 같은 인지 영역의 핵심 요소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현행 법률안이 권리보장 측면에서는 진전을 이루었으나, 장애 개념 자체의 인식론적 전환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줌
- 또한 본 연구는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주관적 장애 인식 측정 문항(안)을 개발하였음
  - 문항은 인지 17문항, 윤리 14문항, 정의 30문항 등 총 6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장애 인식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초적 도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결국 본 연구는 장애 개념의 이론적 재구성, 법률 분석을 통한 제도적 적용 가능성 검토, 그리고 측정 도구 개발을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장애를 인간 다양성과 권리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 향후 연구에서는 첫째, 인권 기반 장애 인식 개념의 이론적 정교화가 요구됨
  - 특히 손상과 손상성의 구분, 타자성 및 인정이론과의 관계, 인간 다양성과의 연결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함
- 둘째, 장애 관련 법률 분석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세계의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을 분석하였으나, 향후에는 시행 예정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주요 장애 관련 법률 전반에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권리 조항, 서비스 체계, 참여 구조 등 법률 전체에 대한 분석과 함께, 법 체계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되어야 함
-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주관적 장애 인식 측정 문항의 실증적 타당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다양한 사회집단을 대상으로 척도의 구조적 적합성과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정교하고 활용 가능한 인권 기반 장애 인식 측정 도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목차

---

|                                          |           |
|------------------------------------------|-----------|
| <b>I. 서론</b>                             | <b>1</b>  |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
|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
| 3. 기대효과                                  | 5         |
| <b>II. 선행연구 검토</b>                       | <b>7</b>  |
| 1. 장애 개념 모델의 지형: 사회모델과 인권모델 관계를 중심으로     | 9         |
| 2. 장애 개념과 장애 법률                          | 20        |
| 3. 인권 기반 장애 진단 및 평가                      | 25        |
| 4. 인권 기반 장애 인식 척도 개발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 29        |
| <b>III. 인권 기반 장애 인식 개념화</b>              | <b>55</b> |
| 1. 인권 기반 장애 인식 개념화의 필요성                  | 57        |
| 2. 인권 실현의 조건과 논거                         | 60        |
| 3. 장애 인식의 개념화                            | 66        |
| 4.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규범적 구성 요소 및 개념화          | 68        |
| <b>IV.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의 인권 기반 장애 인식 수준 분석</b> | <b>75</b> |
| 1.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 입법 배경 및 입법 추진 경과           | 77        |
| 2.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 비교 분석                      | 79        |
| 3.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의 인권 기반 장애 인식 수준 분석         | 93        |
| 4. 소결                                    | 110       |

|                                    |            |
|------------------------------------|------------|
| <b>V. 인권 기반 주관적 장애 인식 측정 문항 개발</b> | <b>113</b> |
| 1. 주관적 장애 인식 측정 문항 개발 절차           | 115        |
| 2. 주관적 장애 인식 측정 문항(안) 제안           | 118        |
| <b>VI. 결론</b>                      | <b>123</b> |
| 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 125        |
|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 127        |
| <b>참고문헌</b>                        | <b>131</b> |



## 표 목차

|                                                    |     |
|----------------------------------------------------|-----|
| 〈표 2-1-1〉 모델의 분류적·설명적 기능 .....                     | 9   |
| 〈표 2-1-2〉 주요 장애 모델 비교 .....                        | 11  |
| 〈표 2-1-3〉 장애의 두 가지 관점 .....                        | 13  |
| 〈표 2-1-4〉 사회모델과 인권모델의 비교 .....                     | 17  |
| 〈표 2-2-1〉 「장애인복지법」 장애 정의 조항 .....                  | 21  |
| 〈표 2-2-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 정의 조항 ..... | 22  |
| 〈표 2-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 정의 조항 .....  | 23  |
| 〈표 2-3-1〉 장애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12가지 가이드 원칙 .....      | 26  |
| 〈표 2-4-1〉 해외 장애 인식 및 태도 척도 현황 .....                | 31  |
| 〈표 2-4-2〉 국내 장애관련 척도개발 연구 현황 .....                 | 33  |
| 〈표 2-4-3〉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척도 문항 .....                   | 38  |
| 〈표 3-2-1〉 인권 실현의 조건과 논거 .....                      | 66  |
| 〈표 3-4-1〉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규범적 구성요소 .....              | 73  |
| 〈표 4-2-1〉 김예지 의원안 주요 조문 .....                      | 80  |
| 〈표 4-2-2〉 최보윤 의원안 주요 조문 .....                      | 84  |
| 〈표 4-2-3〉 서미화 의원안 주요 조문 .....                      | 90  |
| 〈표 4-4-1〉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 분석 결과 .....                   | 110 |
| 〈표 5-2-1〉 인지 차원 문항 .....                           | 118 |
| 〈표 5-2-2〉 윤리 차원 문항 .....                           | 119 |
| 〈표 5-2-3〉 정의 차원 문항 .....                           | 120 |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기대효과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장애를 이해하는 이론적 틀은 단순한 개념 정의를 넘어,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규범적 기반으로 작동한다. 특히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장애인의 삶을 둘러싼 중요한 환경적 요소(environmental factor)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인과 사회가 장애를 어떠한 존재로 이해하는가는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 상호작용과 태도, 정책 수용성, 사회참여의 기회 구조, 나아가 법과 제도의 형성과 운영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즉 장애 인식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나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조건과 권리 실현 가능성을 규정하는 사회적 환경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장애 인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의료모델에 기반한 접근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장애 인식 연구는 장애를 개인의 손상과 기능 제한의 문제로 전제한 채, 장애인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부정적 감정, 동정, 편견 등의 태도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접근은 장애 인식을 주로 ‘개인적 태도(attitude)’의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장애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와 권리, 제도적 구조의 문제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기존의 장애 인식 측정 도구들은 장애인을 보호나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거나, 장애를 부정적 상태로 이해하는 의료모델적 인식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반면 장애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는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장애의 사회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손상이나 결함이 아닌 사회적·구조적 장벽에 의해 형성되는 현상으로 이해함으로써,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억압과 권리의 문제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계승·확장한 장애의 인권모델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재정립하고, 존엄, 자기결정권, 사회참여, 비차별과 같은 원칙을 중심으로 장애인정책과 사회환경 전반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은 장애 모델의 변화는 장애 인식 역시 단순한 심리적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며, 장애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다차원적 인식 구조로 재개념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장애 인식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차원적 개념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장애 모델에 토대하여 개인의 주관적 장애 인식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제도적 차원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확인되는데, 즉 장애인정책의 규범적·실천적 근거가 되는 장애 관련 법률은 다양한 장애 모델이 혼재된 상태에서 일관된 개념 정의를 결여하고 있으며, 실제 지원의 방향과 내용 역시 사회모델 및 인권모델이 제시하는 원칙—예컨대 상호작용적 장애 개념, 권리주체성, 참여, 비차별 등—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특히 장애 법률은 단순한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집합적으로 반영하는 사회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장애 관련 법률에서의 장애 정의와 권리 규정은 사회 구성원들의 주관적 장애 인식이 제도화된 결과이자, 동시에 다시 사회적 인식을 형성·재생산하는 규범적 장치로 기능한다.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 장애 인식과 장애 법률에서의 장애 개념은 상호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장애를 둘러싼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는 상호작용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 인식을 권리 기반의 다차원적 개념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관적 장애 인식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동시에, 장애 법률이 어떠한 수준에서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분석틀의 구축을 시도하는 본 연구는 연구사적 공백을 해소하고 이론과 실재를 아우르는 통합적 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와 실증적 분석을 결합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수행된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 단계에서는 장애 개념 모델의 지형을 분석하고, 특히 사회모델과 인권모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주요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장애 개념의 구성 요소와 정책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존 장애 인식 연구의 한계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개념화를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는 인권의 개념과 그 철학적·규범적 근거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 인식을 인지, 윤리, 정의의 세 차원으로 구조화한다. 각 차원별로 명제 진술을 구성함으로써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다차원적 구조를 이론적으로 정립한다.

이후 장애 관련 법률을 대상으로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반영 수준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을 중심으로 조문 분석을 실시하고, 앞서 도출된 개념적 분석틀을 적용하여 법률이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권리 기반 접근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적·분석적 결과를 토대로 인권 기반 장애 인식 측정 도구를 개발한다. 측정 문항은 각 차원의 명제에 기반하여 구성되며, 향후 실증 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타당성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3. 기대효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및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학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사회모델 및 인권모델에 기반한 주관적 장애 인식 측정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연구의 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기존의 이분법적 장애 이해를 넘어, 인지·윤리·정의의 다차원적 구조를 통해 장애 인식을 분석하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안한다. 이는 장애 연구에서 인식과 제도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연구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며, 장애 인식 전환을 위한 학술적 담론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본 연구가 개발하는 측정 도구와 분석틀이 공공정책 및 교육·인식개선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장애 개념의 일관성 확보와 인권 기반 제도 설계를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장애인의 권리 주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 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사회 전반의 장애 인식 개선과 포용적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II. 선행연구 검토

1. 장애 개념 모델의 지형: 사회모델과 인권모델 관계를 중심으로
2. 장애 개념과 장애 법률
3. 인권 기반 장애 진단 및 평가
4. 인권 기반 장애 인식 척도 개발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 II. 선행연구 검토

### 1. 장애 개념 모델의 지형: 사회모델과 인권모델 관계를 중심으로

#### 1) 장애모델의 개념과 주요 모델

##### (1) 모델의 기능

장애 모델은 사람들을 분류하고 장애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두 가지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장애인의 삶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정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기능은 장애를 단순한 개인적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해석되는 대상임을 보여준다(Sivers, 2020).

첫째, 분류(classification)의 기능이다. 이는 누가 장애인인가를 규정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특정한 제도적 목적—예컨대 복지 수급 자격이나 법적 보호—to 따라 개인을 장애인으로 식별하거나 범주화하는 기준(standards)을 제시한다. 이러한 분류 기능은 정책 운영과 자원 배분에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과소포괄(under-inclusive) 또는 과대포괄(over-inclusive)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정 집단을 부당하게 포함하거나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Sivers, 2020).

둘째, 설명(explanation)의 기능이다. 이는 장애가 어떻게 발생하며 개인이 기능적 제한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설명 기능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향과 정책 설계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설명이 부정확하거나 오도될 경우 정책을 왜곡된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예컨대 생물심리사회적 모델(BPS)의 오용은 이러한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Sivers, 2020).

〈표 2-1-1〉 모델의 분류적·설명적 기능

| 기능 | 설명                                                                                                  | 문제점                                                                |
|----|-----------------------------------------------------------------------------------------------------|--------------------------------------------------------------------|
| 분류 | 특정 목적(예: 혜택 자격, 보호)을 위해 누가 장애인인지 식별하는 기준이나 패러다임 역할을 함. 모델은 전문 용어(terms of art)로 사용되어 프로그램마다 정의가 다름. | 과소/과대포괄적(Under/Over-inclusive)일 수 있으며, 특정 그룹을 부당하게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음. |



| 기능 | 설명                                                                     | 문제점                                                        |
|----|------------------------------------------------------------------------|------------------------------------------------------------|
| 설명 |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과 개인의 기능 제한이 생기는 이유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며, 제한 극복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냄. | 부정확하거나 오도하는 설명을 제공하여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음 (예: BPS 모델의 오용). |

출처 : Sivers, A. (2020). In pursuit of justice for disability: Model neutrality revisited. In A. Cureton & D. Wasserman (Eds.), The Oxford handbook of philosophy and disa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나아가 장애 모델은 단순히 분류와 설명에 그치지 않고, 장애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즉 장애가 ‘나쁜 차이(bad difference)’인지, 혹은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차이로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 모델은 개념적 도구를 넘어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는 규범적 장치로 기능한다(Sivers, 2020).

## (2) 주요 장애 모델 비교

장애에 대한 주요 모델들은 각각 장애의 원인과 해결 방식에 대해 상이한 관점을 제시하며, 이는 정책적 개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된다(Sivers, 2020).

의료모델(medical model)은 장애를 개인의 생리적·심리적 상태, 즉 손상(impairment)에 기초하여 이해한다. 이 모델에서는 장애의 원인을 질병, 부상, 또는 병리적 신체·심리 조건에서 찾으며, 해결책으로는 의학적 치료, 재활, 기능 회복을 통해 생물학적 기능 장애를 제거하는 접근을 강조한다.

반면 사회모델(social model)은 장애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적 환경과 구조에서 찾는다. 즉 장애는 사회적 무관심, 차별, 배제, 물리적 및 태도적 장벽의 결과로 이해되며, 해결책 역시 사회 규범과 제도의 변화, 환경 적응, 장벽 제거를 통한 구조적 개혁에 초점을 둔다.

생물심리사회적모델(biopsychosocial model)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통합적 접근을 취하지만, 실제 정책 적용에서는 개인의 태도 변화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의된다.

도덕모델(moral model)은 장애를 도덕적 또는 종교적 결함이나 죄의 결과로 이해하며, 이에 따라 신앙, 도덕적 교정, 속죄와 같은 방식의 해결을 제시한다.

비극모델(tragedy model)은 장애를 개인의 불운한 운명으로 간주하며, 자선과 동정 중심의 대응을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관계모델(relational model)은 개인과 환경 간의 불일치(mismatch)에 주목하여 장애를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한다. 소수자/다양성 모델(minority/diversity model)은 장애를 정치적 권력관계 속에서 형성된 소수자 정체성으로 파악하고, 권리 운동과 정치적 동원을 통해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인권모델(human rights model)은 장애인을 기본적인 권리의 주체로 이해하며, 장애로 인해 웰빙이 저하되는 상황에 대해 공평한 보호뿐 아니라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강조한다(Sivers, 2020).

〈표 2-1-2〉 주요 장애 모델 비교

| 모델         | 주요 초점                   | 장애의 원인                                      | 해결책(접근방식)                                    |
|------------|-------------------------|---------------------------------------------|----------------------------------------------|
| 의료모델       | 개인의 생리적/심리적 상태 및 손상     | 질병, 부상, 또는 병리학적 신체/심리적 조건                   | 의학적 치료, 요법, 재활을 통한 개인의 기능 회복 및 생물학적 기능 장애 제거 |
| 사회모델       | 사회적 환경과 구조              | 사회적 무관심, 배제, 차별 및 물리적/태도적 장벽                | 사회 규범 및 관행의 변화, 환경 적응 및 장벽 제거를 통한 사회 구조 개혁   |
| 생심리사회 모델   |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 | 생리적 요인 외에 심리적 요인(예: 회복에 대한 믿음 부족)에 큰 비중을 둠. | 심리적 개입을 통한 개인의 태도 변화 및 직업 복귀 촉진. (비판적으로 사용됨) |
| 도덕모델       | 도덕적/종교적 가치              | 장애인의 도덕적 또는 종교적 결함/죄 또는 가족의 잘못.             | 신앙, 도덕적 교정, 또는 속죄                            |
| 비극모델       | 불운하고 비극적인 운명            | 개인의 운 없는 불행(misfortune)으로 인한 무능력.           | 자선, 동정, 자선적 관리 및 통제                          |
| 관계모델       |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            | 개인의 기능과 자연적/구축된 환경 간의 근본적인 불일치              | 환경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 개선                            |
| 소수자/다양성 모델 | 정치적 권력 및 소수자 정체성        | 정치적 권력을 가진 다수 집단에 의한 기회 박탈 및 배제.            | 장애인 권리 운동 및 정치적 힘을 통한 권리 획득                  |



| 모델   | 주요 초점              | 장애의 원인                              | 해결책(접근방식)                                |
|------|--------------------|-------------------------------------|------------------------------------------|
| 인권모델 |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 | 장애로 인한 결함(의학적/사회적) 때문에 웰빙에 미달하는 상황. | 공평한 보호 외에, 부족한 부분을 보상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을 받을 권리 |

출처 : Sivers, A. (2020). In pursuit of justice for disability: Model neutrality revisited. In A. Cureton & D. Wasserman (Eds.), The Oxford handbook of philosophy and disa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2) 장애 관점: 특수한 현상인가, 보편적 현상인가

### (1) 장애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관점

장애에 대한 개념적 접근은 크게 소수자 집단 관점(minority group approach)과 보편주의적 관점(universalist or interactional approach)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장애를 특정 집단의 특수한 상태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 조건의 보편적 형태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반영한다(Bickenbach, 2020).

소수자 집단 관점은 장애를 사회적으로 구성된 억압적 지위로 이해하며, 장애인을 분리되고 고립된 집단으로 간주한다. 이 관점은 장애를 비연속적이고 이분법적인 상태로 파악하고, 장애로 인한 불이익의 원인을 사회적 차별, 편견, 배제, 그리고 제도적 설계의 문제에서 찾는다. 따라서 정책적 대응은 차별의 제거와 권리 보장,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환경적 조치에 초점을 두며, 보상적·시정적 정의를 핵심 원리로 삼는다(Bickenbach, 2020).

반면 보편주의적 관점은 장애를 건강 상태와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이고 연속적인 인간 현상으로 이해한다. 이 관점은 장애를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삶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조건으로 파악하며, 손상과 환경적 장벽의 공동 작용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정책적 대응 역시 단일한 차별 시정에 국한되지 않고, 기능의 최적화, 능력(capacity)의 향상, 수행(performance)의 증진을 위한 의료적 개입과 환경적 조정이 결합된 이중적 접근을 요구한다(Bickenbach, 2020).

이와 같이 두 관점은 장애의 정의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불이익의 원인과 적절한 사회적 대응 방식에 대해 상이한 이론적 입장을 제시한다.

〈표 2-1-3〉 장애의 두 가지 관점

| 관점                     | 핵심 정의                                                       | 불이익의 원인                               | 적절한 사회적 대응(결과)                                                                                          |
|------------------------|-------------------------------------------------------------|---------------------------------------|---------------------------------------------------------------------------------------------------------|
| 소수자 집단 관점<br>(사회모델 기반) | 장애는 분리되고 고립된 집단의 사회적으로 창조되고 평가 절하된 지위(비연속적/이분법적)            | 사회적 설계, 차별, 편견, 배제(건강 및 손상 의 역할 경시)   | 보상적/시정적 정의: 차별 예방 및 보상, 완전한 통합을 위한 사회적 편의 및 지원 제공 (정치적 옹호 중시).                                          |
| 보편주의적 관점<br>(ICF 기반)   | 장애는 본질적인 건강 상태와 환경 결정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이고 연속적인 인간 현상(연속적) | (1) 근본적인 건강 상태와 손상과 (2) 환경적 장벽의 공동 결정 | 일반적인 사회적 의무: (a) 기능 최적화, (b) 능력(Capacity) 향상, (c) 수행(Performance) 증진을 위한 건강 개입(재활) 및 환경 수정 (평등한 기회 보장). |

출처 : Bickenbach, J. (2020). Disability, health and difference. In A. Cureton & D. Wasserman (Eds.), The Oxford handbook of philosophy and disa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2) 소수자 관점의 한계

소수자 집단 관점은 장애를 사회적 억압의 결과로 강조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장애와 건강의 관계를 분리하고 손상을 가치 중립적인 차이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점은 경험적·철학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Bickenbach, 2020).

첫째, 장애와 건강의 분리 주장—즉 “장애가 있지만 완전히 건강하다”는 명제—는 건강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오류를 내포한다. 실제로 건강과 기능은 연속선상에 존재하며, 손상(impairment)은 기능 수준의 저하라는 의미에서 건강의 감소(decrement of health)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를 건강과 무관한 상태로 규정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일관되지 않으며, 손상과 관련된 의료적 필요를 간과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접근은 장애인 의 의료 및 재활 서비스 접근의 정당성을 약화시켜 정책적으로 비생산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Bickenbach, 2020).

둘째, 장애를 단순한 차이(mere difference)로 간주하는 가치 중립성 주장은 손상이 실제로 수반하는 고통, 통증, 기능 제한 등의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손상은 단순한 차이와 달리 개인의 삶의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



며, 이러한 점에서 ‘국소적으로 나쁜(locally bad)’ 특성을 지닌다. 또한 손상을 한편으로는 가치 중립적인 신체적 차이로 이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강한 사회적 정체성의 근거로 간주하는 것은 개념적 긴장을 내포한다(Bickenbach, 2020).

따라서 소수자 관점은 장애의 사회적 차원을 강조하는 데에는 기여하였으나, 손상의 실재성과 건강과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 (3) 보편적 관점의 장점

소수자 관점과 보편주의적 관점 간의 차이는 자원의 배분 방식과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Bickenbach, 2020). 소수자 관점은 주로 차별 시정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환경적 지원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반면, 보편주의적 관점은 의료적 개입과 환경적 조정을 결합한 이중적 대응을 강조한다. 특히 보편주의적 접근은 장애를 인간 삶의 보편적 조건으로 이해함으로써, 노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 속에서 증가하는 기능적 제한과 지원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편주의적 관점은 장애를 특정 집단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건강 및 기능 문제와 연결된 연속적 현상으로 이해함으로써,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 3) 사회모델과 인권모델의 관계

### (1)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 모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CRPD)은 장애를 개인의 특성에 한정하지 않고, 손상과 사회적 장벽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협약 제1조는 장애인을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반에서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방해받을 수 있는 장기적인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장애를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관계적·상호작용적 현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개인 중심적 접근과 구별된다(Degener, 2016).

CRPD의 채택은 장애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 즉 의료모델에서 사회모델로의 이동을 상징하는 것으로 널리 평가되어 왔다. 실제로 협약의 형성 과정에서 사회적 장애 모델은 주요한 준거 틀로 작용하였으며, 장애를 사회적 장벽과 차별의 산물로 이해하는 관점이 협약 전반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Degener(2016)는 이러한 이해를 한 단계 확장하여, CRPD가 단순히 사회모델을 반영하는 수준을 넘어 “장애의 인권모델(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CRPD는 장애를 단순히 사회적 억압의 결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재정립하며, 국가에 대해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보호·촉진·실현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범적 틀을 제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CRPD는 사회모델을 기반으로 하되, 이를 인권의 언어와 제도적 구조 속에서 재구성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규범적인 장애 이해를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Degener, 2016).

## (2) 개선론(improvement thesis)의 논증

인권모델이 사회모델을 계승·발전시키는 이론이라는 입장은 이른바 ‘개선론(improvement thesis)’으로 정식화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Theresia Degener의 논의에서 가장 명확하게 제시된다. Degener는 인권모델이 사회모델과 구별되는 지점을 여섯 가지 명제로 정리하면서, 장애 개념의 역사적 전개가 의료모델에서 사회모델을 거쳐 인권모델로 발전해 왔다고 주장한다(Degener, 2016; Lawson & Beckett, 2021). 그녀는 특히 인권모델의 제도적 구현을 CRPD의 채택과 긴밀히 연결시키며, CRPD가 “장애의 인권모델을 법제화한다”고 평가한다(Degener, 2016; Lawson & Beckett, 2021).

이와 유사하게 Stein과 Stein은 장애 인권 패러다임을 사회모델과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면서도, 그 규범적 확장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해당 패러다임이 사회모델과 마찬가지로 “장애를 구성하는 사회의 역할과 장애 기반의 배제를 시정할 사회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가지지만, 그 핵심을 “개인의 번영(individual flourishing)”과 “존엄성(dignity)”에 둔다는 점에서 규범적 심화를 이룬다고 본다(Lawson & Beckett, 2021). 또한 이 패러다임은 장애인의 평등을 동일성(sameness)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가치에 근거하여 정당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반차별 조치뿐 아니라 자원 투입을 수반하는 적극적 평등 조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모델보다 포괄적인 권리 체계를 지



향한다(Lawson & Beckett, 2021). 나아가 인권의 불가분성(indivisibility)과 권리 실현의 과정 및 결과 모두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권모델은 보다 통합적인 규범 구조를 제시한다.

Degener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인권모델이 사회모델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하면서(builds on), 발전시키고(develops), 나아가 이를 넘어서는(moves beyond)” 모델이라고 평가하며, “장애의 인권모델은 사회모델을 개선한다”는 점을 자신의 주요 발견으로 제시한다(Degener, 2016; Lawson & Beckett, 2021). 이러한 관점이 바로 사회모델과 인권모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개선론’이다.

개선론의 핵심 논거는 두 모델 간의 비교를 통해 제시되며, 특히 Degener가 제시한 여섯 가지 명제 중 일부는 두 모델 간의 본질적 차이를 드러낸다. 첫째, 연대의 범위와 성격에 관한 차이이다. 사회모델이 특정 손상(impairment)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적 권리 주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인권모델은 특정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무관하게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권리 주장에 기반한다(Lawson & Beckett, 2021). 둘째, 모델이 수행하는 기능의 차이이다. 사회모델이 장애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 작동하는 반면, 인권모델은 CRPD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지침과 제도 설계를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는 규범적·실천적 틀로 기능한다(Lawson & Beckett, 2021).

이와 같이 개선론은 인권모델이 사회모델의 이론적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이를 인권의 언어와 제도적 구조 속에서 확장·구체화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고 포괄적인 장애 이해를 제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표 2-1-4〉 사회모델과 인권모델의 비교

| 명제                                                              | 사회모델                                        | 인권모델                                                 | CRPD와의 관계                                                                           |
|-----------------------------------------------------------------|---------------------------------------------|------------------------------------------------------|-------------------------------------------------------------------------------------|
| 명제 1: 장애는 사회적 구성물이지만, 인권은 특정 건강 또는 신체 상태를 요구하지 않는다(장애의 정의와 존엄성) | 장애를 사회의 차별적, 억압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제공             |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인권이 특정 건강 상태나 손상의 부재를 요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CRPD는 손상이 인권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추정을 거부함                                                  |
| 명제 2: 인권은 반차별 이상이다(권리의 범위)                                      | 주로 반차별 정책과 시민권 개혁을 지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모두 포괄하여 더 포괄적임       | CRPD는 두 인권 세트를 완전히 통합하여, 권리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을 보여줌                                       |
| 명제 3: 손상은 인간의 변이로 인식되어야 한다(손상(Impairment)의 인식)                  | 손상으로 인한 고통, 삶의 질 저하 등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음  | 손상을 인간 다양성 및 인류의 일부로 인정하며, 손상의 경험을 포괄할 것을 요구함        | CRPD는 손상을 인간 존엄성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다양성 원칙으로 손상의 윤리적 문제를 다룰 근거를 마련함                 |
| 명제 4: 복합적 차별과 정체성의 총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복합적 차별 및 정체성)                   | 정체성 정치를 해방의 가치 있는 구성요소로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음 | 성별, 연령 등 다층적인 정체성을 인정하고, 소수자 및 문화적 정체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함   | CRPD는 장애인 여성 및 소녀의 복합적 차별을 인정하는 최초의 구속력 있는 조항(제6조)을 포함하며, 수어와 청각 장애인 문화를 인정함        |
| 명제 5: 예방 정책은 인권에 민감할 수 있다(예방 정책)                                | 손상 예방 정책이 차별적이거나 장애인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판적임   | 예방 정책이 인권에 민감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며, 2차 예방을 건강권의 맥락에서 인정함   | CRPD 본문에서 1차 예방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의료모델적 접근을 거부했지만, 2차 예방(추가 장애 방지)은 건강권(제25조)의 일부로 인정함 |
| 명제 6: 빈곤과 장애는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변화를 위한 로드맵이 있다(빈곤과 변화)               | 빈곤과 장애의 상호관련성(2/3가 개발도상국 거주)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둠  | 국제 협력에 대한 독립 조항(제32조)을 통해 빈곤 퇴치 및 사회 변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공함 | CRPD는 개발에 관한 독립 조항을 가진 최초의 인권 조약이며, 국제 협력에서 장애 주류화를 요구함                             |

출처 : Degener, T. (2016). Disability in a human rights context. In M. Sabatello & M. Schulze (Eds.), Human rights and disability advocacy.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3) 보완론(complementarity thesis)의 논증

사회모델과 인권모델 간의 관계를 개선이나 대체의 관계로 이해하는 관점과 달리, 최근 연구에서는 두 모델이 상이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상보적 관계에 있다는 ‘보완론(complementarity thesis)’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특히 Lawson과 Beckett의 논의에서 체계적으로 전개된다(Lawson & Beckett, 2021).

우선 사회모델은 장애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서, 장애가 발생하는 사회적·구조적 조건을 드러내고 정책 개혁이 요구되는 영역을 식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장애를 유발하는 장벽과 억압적 사회 구조를 가시화함으로써 사회 변화의 방향성과 원칙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는다. 실제로 CRPD 초안 작성 과정에서도 사회모델은 장애를 사회적 산물로 이해하는 기본적 인식틀을 제공하며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였다(Lawson & Beckett, 2021).

반면 인권모델은 장애 자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존재론적(ontological) 모델이라기보다, 장애 정책에 대한 규범적 지침을 제시하는 모델로 이해된다. 즉, 인권모델의 초점은 ‘장애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적 규정이 아니라, ‘장애와 관련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규범적 질문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모델은 장애에 대한 서술적(descriptive) 모델이 아니라 규범적(prescriptive) 모델이며, CRPD에 명시된 인권 원칙과 국가의 의무를 통해 장애 정책과 법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Lawson & Beckett, 2021).

이와 같은 차이는 두 모델의 본질적 성격 차이로 이어진다. 사회모델이 장애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이라면, 인권모델은 장애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한 규범적 틀이다. 따라서 두 모델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경쟁적 설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수준에서 작동하는 이론적 장치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권모델은 장애를 인권 침해 그 자체로 정의하는 존재론적 모델을 제시하지 않는다. 만약 장애를 단순히 ‘인권의 부인’으로 정의할 경우, 이는 손상 여부와 관계없이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메타 범주로 확장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장애 개념의 분석적 유용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모델은 장애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기보다, 장애와 관련된 정책적 대응과 권리 보장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Lawson & Beckett,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모델은 공통적으로 억압적이고 배제적인 사회·정치적

구조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규범적 지향을 공유한다. 즉, 두 모델은 모두 장애인의 권리 실현과 사회 정의 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만, 그 작동 방식과 기능은 상이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Lawson과 Beckett은 인권모델이 사회모델을 대체하거나 일방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두 모델을 상보적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Lawson & Beckett, 2021). 이 보완적 관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특히 분명하게 드러난다.

첫째, 인권모델은 법과 정책의 설계 및 이행을 위한 제도적·규범적 틀을 제공하는 반면, 사회모델은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틀로서 다양한 맥락에서 장애인의 해방적 정치와 집단적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즉, 인권모델은 특정한 법적·제도적 환경에서 작동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사회모델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운동과 정치적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모델은 사회모델에 비해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특정한 제도적 조건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Lawson & Beckett, 2021).

둘째, 인권모델의 효과적인 작동은 사회모델이 형성한 집단적 연대에 의존한다. CRPD는 장애 관련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핵심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표 조직의 형성과 연대의 기반은 사회모델이 촉발한 정치적·사회적 실천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사회모델은 다양한 손상을 가진 개인들을 ‘장애인’이라는 집합적 정체성으로 결집시키고, 이를 통해 집단적 행위자로서의 장애인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인권모델은 이러한 집단을 전제로 하여, 국가와 국제사회 차원에서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Lawson & Beckett, 2021).

이와 같이 사회모델과 인권모델은 서로 다른 기능과 수준에서 작동하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 실현과 사회적 변화를 추동한다. 따라서 두 모델 간의 관계는 개선이나 대체의 관계가 아니라,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론적·실천적 틀로서의 상보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 2. 장애 개념과 장애 법률

장애 법률에서 장애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는 권리 보장의 대상과 권리 보장의 범위, 국가와 사회의 책임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이다. 이에 장애에 대한 주요 모델이 의료모델, 사회모델, 인권모델로 변화하는 동안 국내 장애 관련 제도 및 법률 또한 변화되어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다수의 장애 관련 법률이 분화 및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권리중심의 국제적 패러다임을 반영한 법률 체계를 구성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국내 장애 법률 중 장애 개념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주요 현행 법률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장애 개념을 살펴보고 그 한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 1)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개념

우리나라에서 처음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조문화한 법률은 1981년 시행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다(김진우, 2024). 해당 법률의 제2조에서는 심신장애자를 “지체불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이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기능 제한 상태를 장애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모델을 기반의 장애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1989년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며 해당 법률의 제명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장애인등록제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료비 및 자녀교육비 지급 명시 등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 개념은 1989년 이전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장애 개념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26년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제2조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전 「심신장애자 복지법」에서 장애의 종류를 열거했던 것을 정신적 장애와 신체적 장애로 크게 구분하고, 장기간을 오랫동안으로 표현을 변경한 것을 제외하면 손상으로 인한 기능제한을 중심으로 장애를 정의하고 있다는 것에는 큰 변화가 없다(김진우, 2024).

이는 「장애인복지법」이 가진 법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법 중 하나로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재활·복지에 관한 기본법 내지 일반법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어(조원일, 2011), 사회적 급여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는 제한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Degener, 2024).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 관련 정책 및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복지법」은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의료모델에 기반한 장애 개념을 사용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외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표 2-2-1〉 「장애인복지법」 장애 정의 조항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의 일부 선언적 차원의 조항들은 사회모델 또는 인권모델을 일부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의료모델에 머물러 있으며,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의료모델의 영향이 지배적이다. 예를 들어, 제4조(장애인의 권리)에서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있는 존재로 존중받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14조(장애인의 날) 중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는 장애를 치료 또는 재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조원일, 2011).



##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장애 개념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복지중심에서 권리중심으로의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조임영, 2016).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법의 가장 큰 차이는 장애와 장애인을 정의함에 있어서 장애의 범주를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장애 정의에 따른 장애가 있는 자로 정의한다. 하위법령에 따른 장애 종류와 기준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나, 장애에 대한 정의는 「장애인복지법」과 거의 동일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대상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사회적 장벽 등 사회적 요인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 개념이 여전히 의료모델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김진우, 2024).

### 〈표 2-2-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 정의 조항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럼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둔 법률이라는 점에서 「장애인복지법」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제4조(차별행위)에서 차별의 행위를 제한·배제·분리·거부로 인한 불리에 대한 차별로 명시하는 등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장애인의 사회적 불리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회모델을 기반으로 한 장애 개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에서는 장애인을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모델의 장애 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애 개념

2015년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 보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법」은 자기결정력 부족,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타 장애와 다른 욕구와 문제가 존재함에 따라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서비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김희선, 2018).

「발달장애인법」의 발달장애인의 정의는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하며,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뜻한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의료모델의 장애 개념을 사용한 앞선 두 법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 〈표 2-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 정의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장애 정의에 있어서 의료모델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법」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이 인권모델에 기반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2장은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10조(의사소통지원),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손상이나 치료적인 접근이 아닌 역량 중심 접근을 일부 반영한 조항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발달장애인의 잠재적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인해 의료모델의 관점으로 장애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해당 조항의 목적이 치료나 개선 또는 정상화가 아닌, 발달장애인의 잠재적 능력을 계발하는 것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모델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자기결정권 및 사회참여 확대를 규정한 타 조항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해석해보면, 해당 조항의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높이고 자기결정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점에서 「발달장애인법」은 사회모델과 인권모델의 장애 개념이 일부 적용되었다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세 법률의 장애 개념은 장애의 정의에 있어서 의료모델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세부 조항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세 법률 모두 세부 조항에 있어서 의료모델, 사회모델, 인권모델을 혼용하고 있었으나,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법률의 특성상 다른 두 법률에 비하여 의료모델에 기반한 장애 개념이 지배적이었다. 일부 조항에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해 다루고는 있었으나, 장애인을 여전히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존재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법」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비해 사회모델과 인권모델을 반영한 권리보장 조항들이 존재하였으나, 장애를 정의함에 있어서 여전히 의료모델의 장애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국내 주요 장애 법률이 권리중심의 국제적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 정책을 권리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을 인권모델을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3. 인권 기반 장애 진단 및 평가

장애 개념의 변화는 단순한 인식의 전환을 넘어 진단·판정 체계의 구조적 재편을 요구하며, 평가 기준의 설정에 있어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고 인권 중심의 접근을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를 개인의 기능적 결함으로 환원하던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개인과 환경 간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상태로 재개념화하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의 제도적 인정 역시 더 이상 시혜나 보호의 논리에 기반한 낙인적 조치가 아니라,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정당화되는 공적 개입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장애로 인한 기능적 제약 자체뿐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제도적 환경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는 시민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

한편,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급여 체계는 여전히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수급권의 핵심 근거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은 장애의 제도적 인정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장애의 제도적 인정은 단순히 소득보전의 필요성을 판별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 고용, 이동, 의사소통 등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으로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도적 인정의 목적은 ‘복지의 대상화’에서 ‘권리의 주체로서 시민권의 회복과 실현’으로 전환되는 규범적 방향성을 내포하며, 이는 향후 장애인 정책과 평가체계 설계 전반에 중요한 준거틀로 작용한다.

평가자에게 평가의 주도권이 집중되는 전통적 진단평가 방식은 CRPD의 권리 기반 접근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구조적 긴장을 내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Waddington & Priestley, 2021). 이에 Waddington과 Priestley(2021)는 ‘장애 판정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human rights approach to disability assessment)’을 제안하며, 장애를 개인과 환경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재개념화한 평가체계,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 장애와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다학제적 평가, 정보 및 의사소통 접근성의 제도적 확보, 절차의 비과잉성 확보, 그리고 평가체계 전반에 걸친 장애인과의 공동설계(co-design)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는 이한나 외(2025, pp. 28)에 재인용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는 판정 결과의 변경이라기보다 판정 절차 전반의 규범적 지향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이해되며, 기존 진단 중심 판정 체계의 전면적



전환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장애인 정책 전반에 권리 기반 접근을 내재화하기 위한 준거틀로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2018년 유럽연합의 ‘권리, 평등 및 시민권 프로그램(Rights, Equality and Citizenship Programme)’ 지원을 받아 작성된 보고서(Disability Assessment in European States: ANED Synthesis Report, 2018)에 UN 장애인권리협약(CRPD)과 호환되는 장애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12가지 가이드 원칙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2-3-1〉 장애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12가지 가이드 원칙

첫째, 장애 평가의 설계와 시행은 CRPD 제3조에서 규정하는 8가지 일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원칙에는 기회 균등과 차별 금지가 포함되며, 이는 협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이자 제5조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원칙으로는 존엄성, 개인의 자율성, 완전하고 적극적인 참여 및 사회 통합, 차이에 대한 존중, 접근성이 있습니다. 남녀 평등과 “장애 아동의 발달하는 능력에 대한 존중” 또한 CRPD 제3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CRPD에 부합하는 장애 평가 시스템은 이러한 핵심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시스템은 CRPD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장애 평가는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선택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전제 하에, 차별 없는 사회 참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존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CRPD에 명시된 권리는 국가 정부 관할 하에 시행되는 장애 평가 시스템뿐만 아니라 지방 및 지역 차원의 장애 평가 시스템에도 적용됩니다. CRPD 제4조는 이 협약이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 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CRPD 제4조에 규정된 일반적인 의무는 국가가 차별적인 관행을 철폐하고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고려”하며 모든 공공 기관과 단체가 이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장애 평가는 “장기간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장애를 가진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다양한 장벽”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손상만이 아니라)해야 합니다(장애인권협약 제1조). 장애 자체에 대한 평가만으로는 사회적 맥락에서의 장애 평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권 협약에서 정의하는 장애는 권리를 가진 사람과 그들이 직면하는 장애를 유발하는 장벽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적 개념입니다. 장애 평가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넷째, 평가는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의 의무에 따라 접근성이 확보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평가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건물과 모든 형태의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신청서 및 평가 도구 포함)에 대한 (편의를 갖춘)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수화 통역이나 개인 자원과 같이 장애 관련 사유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평가 과정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조항이나 관행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장애 평가 절차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legal capacity)을 타인과 동등하게 인정해야 합니다(장애인권협약 제12조). 이는 “개인의 권리, 의지 및 선호”를 존중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는 “이해 상충 및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최소한의 제한만을 포함해야 하며, 개인의 상황에 비례하고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은 “자신의 법적 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평가 과정이나 그 결과 그 어떤 것도 개인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장애인권협약 제14조). 이는 실제로 장애인이 평가 센터에 자의적으로 구금되거나, 강제 치료를 받도록 강요받거나, 평가자의 근거 없는 의견, 심지어 자의적인 의학적 소견만을 근거로 보안 시설에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한 자유 박탈이든 국제법에 따른 보장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평가 과정이나 그 결과 모두 개인을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되며, 특히 신체적 간섭이나 건강상의 해를 피함으로써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장애인권협약 제17조). 이러한 사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에 대한 의학적 및 기능적 검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직업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직업 시험 및 배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장애 평가는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되는 광범위한 사회적 지원 및 권리에 대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사회적 필요 평가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장애인권협약 제19조)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평가 범위는 “개인이 거주지를 선택하고 누구와 함께 살지 결정할 기회”를 침해하거나 “특정한 주거 형태에서 생활해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에는 개인 지원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지원과 지역사회 시설 이용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홉째, 정책 기능 전반에 걸쳐 장애 평가의 구체적인 자격 및 평가 기준은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명시된 관련 실질적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직업 및 고용(제27조), 적절한 생활 수준 및 사회 보장(제28조), 교육(제24조)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에 중요합니다. 또한 가정 및 가족 생활(제23조), 건강(제25조), 그리고 재활 및 사회복귀(제26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평가에도 적용됩니다.

열 번째, 평가 결정에 대한 불만 제기, 검토 또는 항소 절차 및 평가 과정의 진행은 개인의 사법 접근권(장애인권협약 제13조)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판결을 내릴 때, 특히 모든 단계에서 “직접적 및 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적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열한 번째, 장애인권협약에 따라 장애 평가에 관여하는 “전문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협약 제4조 및 제13조에 보장된 지원과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장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에는 장애에 대한 상호작용적이고 맥락적인 개념, 장애 장벽에 대한 인식 및 사회적 모델, 장애인권협약, 법적 능력, 그리고 개인 중심적 접근 방식에 대한 교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 보유자가 자기 평



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과 그들의 단체, 그리고 인권 기구가 장애 평가 시스템의 설계 및 정기 검토, 그리고 위의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권리 운동의 핵심 주장은 “우리에 관한 것은 우리 없이 결정될 수 없다(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것이며, CRPD 당사국은 제4조(3)에 따라 모든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그들의 대표 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권리 감시 과정에도 그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CRPD 제33조(3)).

제도 내 장애 진단·판정 체계는 장애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인권 지향적 가치와 긴밀히 연동되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관점에서 학술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첫째, 장애 개념의 재정의와 환경적 상호작용으로 초점의 전환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애를 개인이 보유한 ‘의학적 결함’으로 규정하던 전통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개인과 환경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 결과로 재정의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ICF(국제기능·장애·건강 분류) 모델에 기반한 환경 척도(김경미, 윤재영, 2013) 및 사회적 배제 지표(김경미, 김동기, 유동철, 신유리, 2013)와 직접적으로 결합한다. 즉, 새로운 진단 체계의 핵심은 개인의 손상 자체가 아닌, 사회적 참여를 저해하는 구조적 장벽(Structural Barriers)을 식별하는 ‘인권 기반 접근’ 지향성을 척도 내에 내용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단 목적(통제에서 시민권 회복으로)의 전회가 제도적으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진단·판정의 근본 목적은 과거의 ‘낙인과 통제’를 넘어 보편적 ‘시민권의 회복’에 두어야 한다. 이는 인권 감수성 및 사회정의 실천 모형과 궤를 같이 한다. 만약 진단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결과가 도출된다면, 이는 해당 체계 내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전문가의 진단 절차는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Self-determination)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기제로 기능해야 한다.

셋째, 평가 주체의 다원화와 능동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평가 권력의 ‘전문가 독점’ 현상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의 주체성(노승현, 2025) 및 장애 정체성 척도 개발(이익섭, 신은경, 2006)과 직결된다. 이러한 주체성의 회복은 장애인의 법적 역량(Legal Capacity)을 강화하는 실증적 토대가 되며, 진단 과정 자체가 당사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장애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척도는 인권 기반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실증적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 인식 및 태도 관련 척도들은 차세대 진단 체계가 지향해야 할 ‘인권 기반 가이드라인’의 객관적 지표로 활용된다. 특히 삶의 질(QoL) 척도(정소연, 서홍란, 김정인, 2016; 한민정, 강영심, 2022)나 장애인에 대한 양가적 차별 감정 측정 도구(감정기, 임은애, 2004)는, 단순한 등급 판정 및 급여 수급의 매개체를 넘어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모니터링하는 정교한 분석 도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 4. 인권 기반 장애 인식 척도 개발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장애 인식 및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사성이 있어서, 차별적 태도가 비판의 대상이 되며 사회통합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게 된다. 장애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는 혐오와 권위적 동정을 지니면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지니기도 하는 등 다면성을 지닌다(신은경, 이한나, 2011). 지금까지 개발된 척도들도 이러한 다면성을 고려하고 있었다. 즉 장애인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없는 심리적 구성개념으로, 인지·정서·행동 의도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이해되면서(Shannon et al., 2009: 12 재인용) 척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 국외 연구

장애 인식 및 태도에 관한 국외 척도를 고찰해 보면, 장애인을 인권의 주체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척도 내에 반영하면서, 인지·정서·행동의 유기적 관계를 분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1) 내용적 측면의 발전

국외에서 개발된 장애인 태도 척도는 초기에는 비교적 단순한 태도 차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점차 개념적 정교화와 함께 다차원적 구조로 발전해 왔다.



첫째, 초기 연구는 ATDP(Attitudes Towards Disabled People Scale)를 중심으로,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는지 여부, 즉 전반적인 우호성(favorability)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단일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려는 접근으로, 장애를 둘러싼 사회적 의미나 관계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신은경, 이한나, 2011).

둘째, 이후 DFS(Disability Factor Scale)와 같은 척도의 등장과 함께, 장애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경험되는 심리적 반응이 중요한 측정 대상이 되었다. DFS는 접촉 시 긴장(interaction strain), 친교의 거부(rejection of intimacy), 왜곡된 동일시(distressed identification) 등 다양한 하위차원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단순한 호·불호를 넘어 심리적 거리감과 정서적 불편성을 포함하는 복합적 구조임을 보여주었다(감정기, 임은애, 2004).

셋째, 최근에는 SADP(Scale of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Persons)와 같이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인권 기반 관점이 반영된 척도가 등장하였다. SADP는 '낙관주의-인권(optimism-human rights)'과 같은 차원을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을 사회적 참여와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태도를 측정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단순히 부정적 감정이나 적대성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정이나 보호와 같은 긍정적 외양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양가적 태도(ambivalent attitudes) 개념으로 발전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적대적 차별과 호의적 차별로 구분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 (2) 방법론적 측면의 발전

대부분의 척도는 직접 측정방식을 택하고 리커트(Liker) 척도를 활용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수집과 분석의 용이함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소 타당도가 떨어지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또한 초기 척도인 ATDP는 단일차원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후 DFS와 SADP 등에서는 다차원구조를 도출하게 된다. 이는 장애에 대한 태도가 인지-정서-행동 요소의 결합이라는 복잡한 구성개념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최근 척도들은 인지(cognition), 정서(affect), 행동 의도(behavioral intention)를 통합적으로 측정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특정 대상에 대한 신념과 감정반응, 그리고 실제 행동가능성을 동시에 포착하여

인식과 태도에 대한 구조를 보다 다차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표 2-4-1〉 국외 장애 인식 및 태도 척도 현황

| 척도명                                                                       | 발행연도/<br>저자                                            | 연구내용 상세                                                                               |                                                                                       |                                                                                      |
|---------------------------------------------------------------------------|--------------------------------------------------------|---------------------------------------------------------------------------------------|---------------------------------------------------------------------------------------|--------------------------------------------------------------------------------------|
|                                                                           |                                                        | 연구목적                                                                                  | 척도구성                                                                                  | 의의                                                                                   |
| ATDP<br>(Attitudes<br>Towards<br>Disabled<br>People<br>Scale)             | 1960,<br>1966 /<br>Yuker,<br>Block &<br>Campbel<br>l 등 | 장애인을 비장애인<br>과 본질적으로 동<br>일하게 보는지 혹<br>은 다르게 보는지<br>를 측정하여 일반<br>적인 태도를 파악<br>함       | 6점 리커트(Likert)<br>척도를 사용하며,<br>문항 수에 따라<br>Form-Q(20문항),<br>A(30문항), B(30문<br>항)로 구분됨 | 가장 널리 사용되<br>는 표준적인 단일<br>차원 태도 측정 도<br>구로 인정받음                                      |
| DFS<br>(Disability<br>Factor<br>Scale)                                    | 1967,<br>1969 /<br>Siller 등                            | 장애 용어의 모호<br>함으로 인한 측정<br>오차를 줄이고, 태<br>도의 복잡성을 반<br>영한 다차원적 거<br>부 요인을 분석함           | 6점 리커트 척도를<br>사용하며, 모든 장<br>애 유형에 적용 가<br>능한 DFS-G는 원<br>척도 기준 69개 문<br>항으로 구성됨       | 무조건적 거부, 친<br>교 거부, 접촉 시<br>긴장 등 7개의 하<br>위 요인을 도출하<br>여 미묘하고 심층<br>적인 편견을 측정<br>함   |
| SADP<br>(Scale of<br>Attitudes<br>toward the<br>Disabled<br>Persons)      | 1981,<br>1982 /<br>Antonak                             | ATDP의 한계를<br>보완하고, 장애인<br>을 시혜의 대상이<br>아닌 권리의 주체<br>로 보는 패러다임<br>변화를 반영함              | 6점 리커트 척도를<br>사용하며, 총 24개<br>문항으로 구성됨                                                 | 낙관주의-인권, 행<br>동 오해, 염세주의<br>-절망의 3개 하위<br>요인 구조로 타당<br>성을 확보함                        |
| CAMI<br>(Communit<br>y<br>Attitudes<br>toward the<br>Mentally<br>Illness) | 1981 /<br>Taylor &<br>Dear                             | 정신장애인에 대한<br>지역사회의 수용<br>성, 자비심, 사회생<br>활 제한 필요성 등<br>을 다각도로 평가<br>함                  | 5점 리커트 척도를<br>사용하며, 총 40개<br>문항으로 이루어짐                                                | 권위주의, 자비심,<br>사회생활 제한, 지<br>역정신보건이라는<br>4개 하위 요인 체<br>계를 구축함                         |
| SADP and<br>ATDP-O<br>(SADP와<br>ATDP 혼합<br>척도)                            | 1982 /<br>Antonak                                      | SADP의 타당도<br>검증 과정에서<br>ATDP-O와의 적<br>합성을 확인하고<br>각 척도의 강점을<br>결합한 정교한 측<br>정 도구를 마련함 | 요인분석을 통해 변<br>별력이 검증된 32<br>개 문항을 추출하여<br>구성함                                         | 염세주의-절망, 손<br>상된 성격, 동정적<br>사회적 고정관념<br>등 5개 하위 차원<br>을 통해 양가적 차<br>별까지 측정이 가<br>능해짐 |



| 척도명                                             | 발행연도/<br>저자                                  | 연구내용 상세                                                                             |                                |                                                                |
|-------------------------------------------------|----------------------------------------------|-------------------------------------------------------------------------------------|--------------------------------|----------------------------------------------------------------|
|                                                 |                                              | 연구목적                                                                                | 척도구성                           | 의의                                                             |
| MAS<br>(Multidimensional<br>Attitudes<br>Scale) | 2007 /<br>Findler,<br>Vilchinsky &<br>Werner | 태도가 인지, 정서,<br>행동의 세 가지 요<br>소로 이루어져 있<br>다는 이론에 근거<br>하여 장애인 태도<br>를 입체적으로 측<br>정함 | 총 34개의 문항으<br>로 구성된 다차원<br>척도임 | 장애인에 대한 심<br>리학적 태도의 3요<br>소(인지-정서-행<br>동) 간 역동적 상<br>호작용을 분석함 |

국외 장애인 태도 척도는 초기의 단순한 우호도 측정을 넘어, 상호작용 과정에서 정서적 반응, 나아가 인권 기반 인식과 양가적 태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는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려 있으며, 태도 측정 역시 보다 복합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국내연구

국내 장애 혹은 장애인에 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하여 개발된 척도들은 단순한 태도 측정을 넘어 인권, 환경, 삶의 질, 정체성 등 다양한 차원으로 확장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이는 장애를 개인적 특성이 아닌 사회적,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흐름을 본 연구에 반영하여, 향후 척도개발과 연구에서도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2-4-2〉 국내 장애인 관련 척도개발 연구 현황

| 범주                  | 척도명                | 발행<br>연도/저자       | 연구내용 상세                                            |                                                                          |                                                                                                                                                                                                                                                                                 |
|---------------------|--------------------|-------------------|----------------------------------------------------|--------------------------------------------------------------------------|---------------------------------------------------------------------------------------------------------------------------------------------------------------------------------------------------------------------------------------------------------------------------------|
|                     |                    |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연구결과                                                                                                                                                                                                                                                                            |
| 인권<br>및<br>사회<br>정의 | 인권감수성<br>지표        | 2002<br>/문용린<br>외 | 한국인의 인권의식<br>진단을 위한 심리<br>적 측정도구 개발                | 문헌연구, 연령별<br>에피소드 및 문<br>항 개발, 예비검<br>사, 전문가 검토,<br>본 검사(734명)<br>분석     | 인권 관련 갈등 상<br>황 에피소드를 제<br>시하고, 5점 리커<br>트 척도를 사용하<br>여 각 문항의 중요<br>도를 평정하는 방<br>식.<br>인권감수성 점수는<br>모든 연령대에서<br>정상분포를 보여<br>변별력이 높음                                                                                                                                             |
|                     | 통합적<br>장애인<br>인권지표 | 2020<br>/<br>이동영  | 다차원적 측면을<br>고려하여 장애인<br>인권보장 상황을<br>평가할 지표 체계<br>화 | 이론·법제·사례<br>분석을 통한 지<br>표안 구성, 전문<br>가 평정(CVI) 및<br>현실가능성 검증,<br>사전조사 실시 | 실체적 권리 관련<br>21개 항목(공통요<br>소 19개 항목과 추<br>가요소 2개 항목)<br>과 절차적 권리 관<br>련 2개 항목 등을<br>포함하여 총 23개<br>항목으로 설정하여<br>구성하되 개인지표<br>의 경우 평가대상<br>의 구분적용에 따<br>라(재가장애인용과<br>시설장애인용) 환경<br>지표의 경우 접근<br>권과 물리적 환경<br>간 중첩조정에 따<br>라 약간의 항목변<br>경을 유연하게 적<br>용하여 실용성의<br>목적달성에 부합되<br>도록 함 |



| 범주                    | 척도명                         | 발행<br>연도/저자              | 연구내용 상세                                                   |                                                                                   |                                                                                                                                                                                                                                                 |
|-----------------------|-----------------------------|--------------------------|-----------------------------------------------------------|-----------------------------------------------------------------------------------|-------------------------------------------------------------------------------------------------------------------------------------------------------------------------------------------------------------------------------------------------|
|                       |                             |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연구결과                                                                                                                                                                                                                                            |
| 인<br>식<br>및<br>태<br>도 | 양가적<br>장애인차별<br>척도<br>(ADS) | 2004<br>/<br>감정기,<br>임은애 | 적대적 차별뿐 아<br>니라 동정·과보호<br>등 호의적 외양을<br>띤 복합적 차별 태<br>도 측정 | 개방형 조사(305<br>문항 도출), 전문<br>가 자문(11명),<br>4차례 예비조사,<br>본 조사(887명)<br>및 요인분석       | 최종 35개 문항 신<br>뢰도와 타당도 검<br>증                                                                                                                                                                                                                   |
|                       | 직장 내<br>장애<br>포용척도          | 2022<br>/<br>이미지,<br>지은  | 직장 내 장애인 근<br>로자에 대한 비장<br>애 동료 및 고용주<br>의 인식과 태도 객<br>관화 | 문헌연구, 심층면<br>담, FGI(4회), 델<br>파이조사(2회),<br>예 비 / 본 조 사<br>(1,100명), 타당<br>화 및 표준화 | 직장 내 장애포용<br>척도 54문항 개발.<br>직장 내 장애포용<br>의 이론적인 틀인<br>ABC (지식<br>(Acknowledge)-<br>무장애환경(Barrier<br>Free)-종합적 태도<br>(Comprehensive<br>Attitude))로 모형<br>을 개발하고 해석<br>적인 틀인 3A(인지<br>(Awareness)-수용<br>(Acceptance)-옹<br>호(Advocacy)) 모<br>형을 제안 |
|                       | SADP 및<br>ATDP-O<br>한국판     | 2011<br>/<br>신은경,<br>이한나 | 국외의 대표적 태<br>도 척도를 한국 상<br>황에 맞게 재구성<br>하고 타당도 검증         | 비장애인 500명<br>표집, 탐색적·확<br>인적 요인분석,<br>DFS 척도와의<br>상관분석을 통한<br>수렴타당도 검증            | 3개 요인, 15개 문<br>항으로 재구성 후<br>타당도 검증                                                                                                                                                                                                             |

| 범주                  | 척도명              | 발행<br>연도/저자           | 연구내용 상세                                   |                                                                        |                          |
|---------------------|------------------|-----------------------|-------------------------------------------|------------------------------------------------------------------------|--------------------------|
|                     |                  |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연구결과                     |
| 삶의 질<br>및<br>사회적 배재 | 성인발달장애인 삶의 질 척도  | 2016<br>/<br>정소연 외    | 성인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척도 개발 | Felce와 Perry (1995) 모형 기초,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 시설 이용 장애인 430명 조사 및 확인적 요인분석 | 5개 요인, 총 20개 문항          |
|                     | 발달장애인 가족 삶의 질 척도 | 2022<br>/<br>한민정, 강영심 | 한국의 가족 구조와 사회 환경을 반영한 발달장애인 가족용 삶의 질 측정   | 문헌분석, 심층면담, 델파이조사, 인지적 면담 기반 예비조사, 본조사(200명), 요인분석                     | 5개 요인, 총 22개 문항          |
|                     | 장애인용 사회적 배제 척도   | 2013<br>/<br>김경미 외    | 장애인이 겪는 물질적 분배나 사회적 참여에서의 배제 정도를 주관적으로 측정 | 당사자 FGI(8회), 예비조사(450명), 본조사(900명),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 4개 요인, 총 47문항 척도 개발      |
| 정체성<br>및<br>주체성     | 장애정체감 척도         | 2006<br>/<br>이익섭, 신은경 | 장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정체성 형성 과정 측정      | 문헌연구, 전문가 FGI, 당사자 심층면담, 예비조사(150명), 본조사(395명), 요인분석                   | 5개 요인, 총 23문항 척도개발       |
|                     | 장애대학생 주체성 척도     | 2025<br>/<br>노승현      | 장애대학생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능력 측정       | 문헌분석 및 당사자 면담, 2차례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토, 본조사(305명),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              | 5개 요인, 29개 문항을 최종 척도로 도출 |



| 범주                  | 척도명                   | 발행<br>연도/저자              | 연구내용 상세                                                      |                                                                                 |                                                       |
|---------------------|-----------------------|--------------------------|--------------------------------------------------------------|---------------------------------------------------------------------------------|-------------------------------------------------------|
|                     |                       |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연구결과                                                  |
| 환경<br>및<br>평가<br>체계 | 장애인의<br>환경 척도         | 2013<br>/<br>김경미,<br>윤재영 | ICF 분류체계를<br>기반으로 장애인의<br>사회참여를<br>방해하거나<br>촉진하는 환경<br>요인 분석 | 심층<br>인터뷰(38명)를<br>통한 문항 도출,<br>전국 641명<br>설문조사 및<br>요인분석                       | 5개 요인, 총 30개<br>문항                                    |
|                     | 한국어판<br>WHODAS<br>2.0 | 2012<br>/<br>신은경,<br>신형익 | WHO의 국제 표준<br>장애 평가 도구의<br>한국어판 타당화<br>및 신뢰도 검증              | 인지 면담(19명),<br>FGI, 양적<br>조사(993명),<br>Rasch<br>모형(문항반응이<br>론) 분석 및<br>확인적 요인분석 | 6개 요인 총,<br>36문항. 원척도와<br>수정척도 모두<br>수용 가능한 모델<br>적합도 |

### (1) 인권 및 사회정의

척도에서 장애 인식과 태도를 인권 및 사회정의의 문제로 접근하는 범주에 해당하는 것에는 인권 감수성 지표(문용린 외, 2002)와 통합적 장애인 인권지표(이동영, 2020)가 포함되며, 장애인의 권리 보장 수준과 사회적 정의 실현 정도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들 척도는 법·제도적 요소와 실제 삶의 조건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장애를 둘러싼 구조적 불평등과 권리 침해 상황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 (2) 인식 및 태도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반응을 측정하는 척도들로 구성된다. 양가적 장애인차별척도(ADS)(감정기, 임은애, 2004)는 적대적 태도뿐 아니라 동정이나 과보호와 같은 ‘호의적 차별’까지 포함한 복합적 태도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또한 직장 내 장애 포용척도(이미지, 지은, 2022)는 고용 맥락에서의 태도를 구체화하여, 지식·환경·종합적 태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며, SADP 및 ATDP-O 한국판(신은경, 이한나, 2011)은 해외 척도를 국내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여 타당성을 검증

한 사례이다. 이 범주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다층성과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 (3) 삶의 질 및 사회적 배제

이 범주는 장애인의 실제 삶의 조건과 사회참여 수준을 반영하는 척도들로 이루어진다. 성인 발달장애인 삶의 질 척도(정소연 외, 2016)와 발달장애인 가족 삶의 질 척도(한민정, 강영심, 2022)는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의 삶의 질을 측정하며, 장애인용 사회적 배제 척도(김경미 외, 2013)는 경제적·사회적 참여에서의 배제 경험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위치를 분석한다.

### (4) 정체성 및 주체성

정체성 및 주체성 범주는 장애인의 내적 인식과 자기 결정적 삶의 역량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장애정체감 척도(이익섭, 신은경, 2006)는 장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다루며, 장애대학생 주체성 척도(노승현, 2025)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 범주는 장애인을 수동적 대상이 아닌 능동적 주체로 이해하는 최근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한다.

### (5) 환경 및 평가체계

이 범주는 장애를 개인이 아닌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는 접근을 기반으로 한다. 장애인의 환경 척도(김경미, 윤재영, 2013)는 ICF 체계를 토대로 사회참여를 촉진하거나 제한하는 환경 요인을 분석하며, 한국어판 WHODAS 2.0(신은경, 신형익, 2012)은 국제 표준화된 기능 및 장애 평가 도구를 국내에 적용한 사례이다. 이 범주는 장애를 둘러싼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및 서비스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장애 관련 측정도구들은 초기에는 인권 감수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왔다면, 점차적으로 단순한 차별 여부를 넘어 양가적 감정이나 사회적 배제와 같은 심층적 심리 기제를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ICF나 WHO의 국제 표준 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측정의 객관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범주            | 척도명                         | 척도 문항구성                  |        |                                                |   |
|---------------|-----------------------------|--------------------------|--------|------------------------------------------------|---|
|               |                             | 황판사의 고민(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        | ◎                                              | ◎ |
|               |                             | 려씨의 임금(이주노동자의 노동권)       |        | ◎                                              | ◎ |
|               |                             | 국가 의료정보센터 설립(사생활권)       |        |                                                | ◎ |
|               |                             | 의사의 고민(장애우의 신체의 자유권)     |        |                                                | ◎ |
|               |                             | 가족 회의(노인의 행복추구권, 결혼할 권리) |        |                                                | ◎ |
|               |                             |                          |        |                                                |   |
| 인식<br>및<br>태도 | 양가적<br>장애인차별<br>척도<br>(ADS) | 요인                       |        | 문항                                             |   |
|               |                             | 권<br>위<br>적<br>지<br>배    |        | 능력 위주의 경쟁사회에서 장애인이라고 특별히 배려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
|               |                             |                          |        | 숫자도 많지 않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거액의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
|               |                             |                          |        | 장애인복지를 위해 추가로 세금부담을 하고 싶지는 않다.                 |   |
|               |                             |                          |        |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
|               |                             |                          |        | 장애인이 일반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             |   |
|               |                             |                          |        | 장애인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사회가 일일이 배려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   |
|               |                             | 적<br>대<br>적              | 멸<br>시 | 장애인은 체면이 없다.                                   |   |
|               |                             |                          |        | 장애인은 다른 삶을 배려할 줄 모른다.                          |   |
|               |                             |                          |        | 장애인은 성격이 괴팍하다.                                 |   |
|               |                             |                          |        | 장애인은 대체로 지저분하다.                                |   |
|               |                             |                          |        | 장애인은 도덕적 판단력이 부족하다.                            |   |
|               |                             |                          |        | 장애인은 사회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   |
|               |                             | 배<br>재<br>적<br>분<br>리    |        | 장애인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                            |   |
|               |                             |                          |        | 장애인을 대하면 뭔가 도와줘야 할 것 같은 부담감 때문에 긴장하게 된다.       |   |
|               |                             |                          |        | 장애인은 가까이 하기가 부담스럽다.                            |   |
|               |                             |                          |        | 장애인이 도움을 청할 때 돕게 되는 것은 측은한 생각 때문이다.            |   |
|               |                             |                          |        | 장애인 시설이 주거지 가까이 있으면 주위에 피해를 주게 된다.             |   |
|               |                             |                          |        | 우리 마을에 장애인복지 시설이 세워지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   |
|               |                             |                          |        |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   |
|               |                             |                          |        | 장애인과 같은 운동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정상인들이 불편해진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범주 | 척도명          | 척도 문항구성  |                                                                                                                                                                                                                                                                                                                                   |                                                                                                                                                                                                                                                                                          |
|----|--------------|----------|-----------------------------------------------------------------------------------------------------------------------------------------------------------------------------------------------------------------------------------------------------------------------------------------------------------------------------------|------------------------------------------------------------------------------------------------------------------------------------------------------------------------------------------------------------------------------------------------------------------------------------------|
|    |              | 호의적      | 보<br>호<br>적<br>분<br>리                                                                                                                                                                                                                                                                                                             | <p>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게 되면 장애학생에게 오히려 불리할 것이다.</p> <p>나와 가까운 장애아동에게는 일반학교보다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권하고 싶다.</p> <p>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일하게 하는 편이 본인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p> <p>장애인들은 자기들끼리 있을 때 훨씬 마음이 편할 것이다.</p> <p>장애아동과 함께 교육을 받으면 정상아동이 여러 모로 손해를 본다.</p> <p>비장애인들과 함께 활동하면 장애인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p> |
|    |              |          | 동<br>정                                                                                                                                                                                                                                                                                                                            | <p>장애인의 성공담을 들으면 가슴이 찡해진다.</p> <p>TV에서 장애인이 어렵게 사는 사연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p> <p>장애인이 혼자서 힘든 일을 해 내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다.</p> <p>장애인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p> <p>길에서 힘들어하는 장애인을 외면하고 지나치면 마음이 찝찝하다.</p>                                                                                                |
|    |              |          | 온<br>정<br>적<br>지<br>배                                                                                                                                                                                                                                                                                                             | <p>건강한 사람이 장애인을 돕거나 배려하는 호의를 베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p> <p>건강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p> <p>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데 장애인이 내 뒤에 있다면 순서를 양보할 수 있다.</p> <p>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배려이다.</p>                                                                                   |
|    | 직장 내 장애 포용척도 | 하위<br>속성 | 문항내용                                                                                                                                                                                                                                                                                                                              |                                                                                                                                                                                                                                                                                          |
|    |              | 인지       | <p>장애인 인권이나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법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알고 있다.</p> <p>장애인 고용관련법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알고 있다.</p> <p>장애인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배치된 근로지원인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p> <p>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알고 있다.</p> <p>장애인 근로자에게 효율적인 업무공간(작업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를 알고 있다.</p> <p>장애유형별 행동 특성과 이와 관련된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p> <p>장애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지원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p> |                                                                                                                                                                                                                                                                                          |

| 범주 | 척도명 | 척도 문항구성     |                                                                         |
|----|-----|-------------|-------------------------------------------------------------------------|
|    |     |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                                                   |
|    |     |             | 장애인 근로자의 이동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알고 있다. (예, 휠체어 이동 통로, 경사로, 점자블럭, 저상버스 등) |
|    |     |             | 장애유형별 기능적 제한과 이와 관련된 보조공학지원에 대하여 알고 있다.                                 |
|    |     |             |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에 대하여 알고 있다.                                                 |
|    |     |             | 회사(사업체)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서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을 알고 있다.                            |
|    |     | 수용          | (역)장애인은 주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
|    |     |             | (역)장애인은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
|    |     |             | (역)(현재 부서에서) 장애인 동료와 협업하게 된다면 업무 외적으로도 챙겨야 할 것 같아 부담이 클 것이다.            |
|    |     |             | (역)(현재 부서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어도 내가 장애인 동료에게 도움을 받는 상황은 거의 없을 것이다.             |
|    |     |             | (역)장애인은 취업보다 장애인복지관, 교육기관, 보호시설 등을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
|    |     |             | (역)(내가 고용주, 인사담당자라면) 장애인 직원은 채용에서부터 업무배치, 인사관리까지 신경 쓸 일이 많아 피하고 싶다.     |
|    |     |             | (역)장애인은 장애 관련 회사 또는 장애인을 주로 채용하는 회사에 다니는 것이 옳다.                         |
|    |     |             | (역)(현재 직장에서) 장애인 직원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    |     |             | (역)비슷한 임금을 받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하면 비장애인이 일을 더 많이 하거나 더 잘할 것이다.               |
|    |     |             | (역)장애인 특별채용 전형은 비장애인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                                 |
|    |     |             | (역)(내가 고용주라면) 장애인 직원 채용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까 걱정부터 든다.        |
|    |     |             | (역)(내가 고용주라면) 장애인 직원을 채용할 때 업무 능력적인 부분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
|    |     |             | (역)(현재 부서에서) 장애인 동료와 갈등이 생기면 괜한 오해를 받을 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피해야 한다.            |
|    |     |             | (역)(현재 직장에서) 장애인 직원 채용은 나와는 별로 관계없는 일이다.                                |
|    |     | 응<br>회<br>적 | (현재 부서에서) 장애인 동료가 직장생활 중에 좌절하거나 어려움을 느낀다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며 격려할 것이다.         |
|    |     |             | (현재 부서에서) 누군가 장애인 동료에 대해 장애 차별성                                         |



| 범주 | 척도명 | 척도 문항구성           |                                                                                                                                                                                                                                                                                                                                                                                                                                                                                                                                                                                                                  |
|----|-----|-------------------|------------------------------------------------------------------------------------------------------------------------------------------------------------------------------------------------------------------------------------------------------------------------------------------------------------------------------------------------------------------------------------------------------------------------------------------------------------------------------------------------------------------------------------------------------------------------------------------------------------------|
|    |     | 장애<br>인           | <p>발언이나 인권 침해성 발언을 한다면 문제를 그냥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p> <p>(현재 부서에서) 장애인 동료가 직장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직접 나서서 도울 것이다.</p> <p>(내가 관리자라면) 장애인 직원과 비장애인 직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리적 업무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p> <p>(현재 부서에서) 장애인 동료의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업무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p> <p>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활동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정당한 편의사항 제공을 촉구하는 활동에 동참하겠다.</p> <p>(현재 직장에서) 장애인 직원과 함께 일할 기회가 생긴다면, 장애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다가가겠다.</p> <p>(내가 관리자라면) 우리 부서(팀)에 적합한 직원이라면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발탁하겠다.</p> <p>장애인이 과반수(이상) 근무하고 있는 회사라도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다닐 의향이 있다.</p> <p>(현재 직장에서) 적절한 보조공학 지원 또는 인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장애인 직원도 내가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p>         |
|    |     | 제도<br>적<br>영<br>향 | <p>직장생활에서 장애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어려움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사내 업무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p> <p>직원 모집과 채용단계에서 장애인 지원자에게 어떤 편의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 사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p> <p>장애인 근로자가 승진, 보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관리 매뉴얼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p> <p>장애인 채용 회사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근속관리, 고충 처리를 위한 상담 창구 또는 관리 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p> <p>장애인 근로자의 장애관리 및 재활을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휴가 추가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p> <p>회사(사업장)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근로자의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는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다.</p> <p>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하여 회사(사업체)의 평등하고 포용적인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p> <p>장애인을 채용한 기업(회사, 사업장)은 장애인의 근속(고용유지)을 위한 처우, 환경 개선 등의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p> <p>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민감한 장애 관련 정보를 공개하길</p> |

| 범주 | 척도명               | 척도 문항구성                                                                                                                                                                                                                                                                                                                                                                                                                                                                                                                                                                                                                                                             |                                                                                                                                                                                                                                                                                                                                                                                                                                                                                                                                                                              |
|----|-------------------|---------------------------------------------------------------------------------------------------------------------------------------------------------------------------------------------------------------------------------------------------------------------------------------------------------------------------------------------------------------------------------------------------------------------------------------------------------------------------------------------------------------------------------------------------------------------------------------------------------------------------------------------------------------------|------------------------------------------------------------------------------------------------------------------------------------------------------------------------------------------------------------------------------------------------------------------------------------------------------------------------------------------------------------------------------------------------------------------------------------------------------------------------------------------------------------------------------------------------------------------------------|
|    |                   |                                                                                                                                                                                                                                                                                                                                                                                                                                                                                                                                                                                                                                                                     | <p>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보호해주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p> <p>정부(또는 국회)는 장애인이 '일'을 통해 사회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p> <p>장애인 근로자가 회사(사업체)내에서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관리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p> <p>장애인을 고용한 회사(사업체)라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p> <p>직장 내 활동환경 안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이동성과 편의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p> <p>누구나 잘하는 일과 상대적으로 잘하지 못하는 일이 있듯이 장애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p> <p>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 and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p> <p>장애인 채용은 회사(사업체)의 사회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p> <p>장애인도 자신의 소신대로 일하고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다.</p> <p>회사(사업체)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은 법적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p> |
|    | SADP 및 ATDP-O 한국판 | <p>요인</p> <p>문항</p> <p>염세주의 고정관념</p> <p>           장애를 가진 사람은 도덕적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br/>           장애인은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성적행동에 몰두한다.<br/>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쉽게 화를 낸다.<br/>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br/>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br/>           장애인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면 안 된다.<br/>           장애인에게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 적합하다.<br/>           일반학급의 장애 아동은 다른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br/>           장애인은 자주 통명스럽게 군다.<br/>           장애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린아이 같다.         </p> <p>낙관주의 이점</p> <p>           (역)장애인에게도 동등한 구직기회가 주어져야 한다.<br/>           (역)장애인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과 장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br/>           (역)장애인은 생활시설 외부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         </p> |                                                                                                                                                                                                                                                                                                                                                                                                                                                                                                                                                                              |



| 범주                  | 척도명              | 척도 문항구성   |                                                                                                                                                                   |
|---------------------|------------------|-----------|-------------------------------------------------------------------------------------------------------------------------------------------------------------------|
|                     |                  | 손상된 성격    | 대부분의 장애인은 걱정을 많이 한다.                                                                                                                                              |
|                     |                  |           | 대부분의 장애인은 스스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
| 삶의 질<br>및<br>사회적 배재 | 성인 발달장애인 삶의 질 척도 | 요인        | 문항                                                                                                                                                                |
|                     |                  | 신체적 안녕    | 신체적으로 건강합니까?<br>(역)6개월 이상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까?<br>대부분의 신체활동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까?<br>(역)신체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까?                                                    |
|                     |                  | 물질적 안녕    |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까?<br>사고 등 돈이 필요한 상황에 금전적인 대비책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br>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습니까?<br>일상적 생활에 필요한 개인용품(옷, 화장품, 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
|                     |                  | 사회적 안녕    | 주변사람과 잘 어울립니까?<br>다른 사람들과 원하는 만큼 교류하고 있습니까?<br>친목활동에 자주 참여하고 있습니까?<br>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동료가 많이 있습니까?                                                              |
|                     |                  | 생산적 활동·발달 |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근로활동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br>자기 역량 내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을 돌보는 활동을 합니까?<br>가족이나 시설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br>자신의 능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각종 훈련, 치료) |
|                     |                  | 심리적 안녕    |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까?<br>(역)자주 우울해합니까?<br>대체로 기분이 좋아보입니까?<br>자신에 대해 만족스러워합니까?                                                                                          |

| 범주                     | 척도명 | 척도 문항구성                       |                                                                                 |
|------------------------|-----|-------------------------------|---------------------------------------------------------------------------------|
| 발달장애인<br>가족 삶의<br>질 척도 |     | 요인                            | 문항                                                                              |
|                        |     | 심리적<br>건강                     | 나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편안하다.                                                         |
|                        |     |                               | 우리 가족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격려한다.                                                |
|                        |     |                               | 우리 가족은 집과 직장, 학교나 지역사회 환경에서 안전하다고 느낀다.                                          |
|                        |     |                               | 우리 가족은 일 또는 학업과 휴식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다.                                        |
|                        |     |                               | 우리 가족은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
|                        |     | 발달장애<br>인<br>대<br>한<br>부<br>담 | (역)우리 가족은 발달장애인을 가진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의견 충돌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
|                        |     |                               | (역)우리 가족은 발달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에게 들어가는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                                   |
|                        |     |                               | (역)우리 가족은 발달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교육이나 편의 등을 고려해야 하기에 거주지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                    |
|                        |     |                               | (역)발달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의 일상생활을 돕는 것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다.                               |
|                        |     |                               | (역)발달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일이 우선이라 내가 좋아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어렵다.                    |
|                        |     | 지역사<br>회<br>참<br>여            | 우리 가족은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                        |     |                               | 우리 가족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나 혜택 등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
|                        |     |                               | 우리 가족은 발달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을 위한 학교나 복지관 등의 기관을 이용할 때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                        |     |                               | 발달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의 주 양육자는 그 밖의 가족 구성원과도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                         |
|                        |     |                               | 발달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이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 어렵지 않게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다. (예: 치과 진료나 정형외과 물리치료 등) |
|                        |     |                               | 발달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의 주 양육자가 여가생활을 하는 동안 다른 가족구성원의 협조가 가능하다.                         |
|                        |     |                               | 우리 가족은 발달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과 함께 친인척 모임에 자유롭게 참석한다. (예: 친인척의 생일이나 결혼식, 장례식 등 가족 모임)   |
|                        |     |                               | 우리 가족은 발달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과 함께 원하는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                        |     | 개방                            | 직장이나 학교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에 관한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                               |



| 범주                   | 척도명 | 척도 문항구성 |                                                                                  |
|----------------------|-----|---------|----------------------------------------------------------------------------------|
|                      |     | 성       | 우리 가족은 각자의 일상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
|                      |     | 응집력     | 우리 가족은 한 가족으로서 비슷한 신념이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br>발달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이 있기에 우리 가족은 더 단합할 수 있다. |
| 장애인용<br>사회적<br>배제 척도 |     | 요인      | 문항                                                                               |
|                      |     | 물       | 나는 돈 때문에 사람 만나는 일이 꺼려진다.                                                         |
|                      |     | 질       | 나는 문화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는 안 된다.                                                  |
|                      |     | 적       | 나는 경제적 형편이 안 돼 살 집을 구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     | 분       | 나는 생활필수품을 줄일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
|                      |     | 배       | 나는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곤 한다.                                                            |
|                      |     | 에       | 나는 매월 공과금을 꼬박꼬박 내는 게 힘들다.                                                        |
|                      |     | 서       |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
|                      |     | 의       | 나는 빚 때문에 생활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                                                         |
|                      |     | 배       | 일 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있다.                                                 |
|                      |     | 제       | 타인으로부터 차별, 사기 등을 당할 때 법적으로 도움받기가 쉽다.                                             |
|                      |     | 사       | 나는 필요할 때 쉽고 편안하게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다.                                                  |
|                      |     | 회       | 직장에서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있다.                                          |
|                      |     | 적       | 내가 가고 싶은 음식점이나 식당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                                                  |
|                      |     | 권       | 장애인 콜택시는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
|                      |     | 리       | 우리 동네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 복지관, 평생교육시설 등이 있다.                                      |
|                      |     | 에       | 나는 대중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                      |     | 서       | 나는 취미생활이나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한다.                                                          |
|                      |     | 의       | 나는 친구, 계모임, 자조모임에 참여한다.                                                          |
|                      |     | 배       | 나는 영화나 연극, 콘서트 등과 같은 공연을 관람한다.                                                   |
|                      |     | 제       | 나는 가족의 대소사나 행사에 참여한다.                                                            |
|                      |     | 참       | 나는 복지관, 문화센터, 장애인단체 등에 참여한다.                                                     |
|                      |     | 여       |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
|                      |     | 와       |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이웃들과 인사할 정도의 친분은 갖고 있다.                                             |
|                      |     | 관       | 나는 친구, 동료들, 이웃들과 만나서 교제한다.                                                       |
|                      |     | 계       | 나의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                                                               |
|                      |     | 에       | 나의 인간관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
|                      |     | 서       |                                                                                  |
|                      |     | 의       |                                                                                  |
|                      |     | 배       |                                                                                  |
|                      |     | 제       |                                                                                  |

| 범주        | 척도명      | 척도 문항구성        |                                                 |
|-----------|----------|----------------|-------------------------------------------------|
|           |          |                | 나의 사적인 고민을 의논할 사람이 있다.                          |
|           |          |                | 나는 소속된 조직이나 단체에서 비장애인만큼 인정받는다.                  |
|           |          |                | 나는 직장, 학교, 단체 활동에서 비장애인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
|           |          |                | 나는 주변사람들로부터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
|           |          |                | 나는 참여하는 단체나 조직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           |          |                | 나는 비장애인과 어울리는 사회적 모임이 즐겁다.                      |
|           |          |                | 나는 소득을 얻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           |          | 문화, 규범으로 인한 배제 | 나는 가족으로부터 투자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대해진다.                  |
|           |          |                |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한 시선을 느낀다.                     |
|           |          |                |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기대를 받지 못한다.                     |
|           |          |                | 나의 의견이나 주장을 말하면 이기적인 장애인으로 인식된다.                |
|           |          |                | 나는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어린아이를 취급된다.                      |
|           |          |                | 나는 우리 동네 가게 주인들에게 손님으로 대우받지 못한다.                |
|           |          |                |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성이 없는 존재로 취급된다.                   |
|           |          |                | 나는 치료 받아야 하는 환자로 취급된다.                          |
|           |          |                |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비장애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으로 취급된다.          |
|           |          |                | 주변사람들은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결혼은 당연히 못한다고 생각한다.          |
|           |          |                | 가족 또는 친척들은 내가 장애인들과 함께 모여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                | 직장직원이나 상사는 나를 직장동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           |          |                | 주변사람들은 나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       |
|           |          |                | 주변사람들은 내가 주로 장애인과 어울리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 정체성 및 주체성 | 장애정체감 척도 | 요인             | 문항                                              |
|           |          | 인간으로서의 가치      | 장애가 있지만 내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           |          |                | 사람들을 사귀는 데 있어 내가 가진 신체적 결함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           |          |                | 사람들은 장애와 상관없이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           |          |                | 나는 장애인의 결혼생활이 비장애인의 결혼생활과 다를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
|           |          |                |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만큼 일할 수 있다.                          |
|           |          | 치              |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사회에 더 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
|           |          |                |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더 많은 장점들도 있다.                 |



| 범주 | 척도명                | 척도 문항구성     |                                                                                                                                                                                                           |
|----|--------------------|-------------|-----------------------------------------------------------------------------------------------------------------------------------------------------------------------------------------------------------|
|    |                    |             |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생활의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
|    |                    | 장애 수용       | 나는 내 장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br>사람들이 나를 장애인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br>장애가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없다.<br>장애로 인해 잃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
|    |                    | 권리 주장       | 나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공공시설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 있다.<br>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br>나는 사람들이 장애인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를 부여하는 것에 이익을 제기할 수 있다.<br>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승진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이익을 제기할 수 있다. |
|    |                    | 공동근거        | 유형이 다른 장애인과 대화를 나누더라도 편안함을 느낀다.<br>나는 장애인에 대하여 매우 강한 애착을 느껴진다.<br>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친밀감이 느껴진다.                                                                                                           |
|    |                    | 외적장애물       | 신체적 결함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br>장애 때문에 재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br>장애인들은 모두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br>나는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지적으로 우월하다는 태도를 보일 때 거부감이 든다.                                      |
|    | 장애대학생<br>주체성<br>척도 | 변수명         | 포함된 요인<br><br>문항                                                                                                                                                                                          |
|    |                    | 자기조절, 자기조절성 | 나는 새로운 배움을 통해 삶에서 의미를 찾을 것이다.<br>나는 어떤 상황에도 집중하면 침착할 수 있다.<br>평소 나의 마음은 대체로 평안하다.<br>나는 대학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할 것이다.<br>나는 가장 나은 방법을 찾아 결정한다.<br>나는 가장 좋은 결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br>나는 대학에서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할 것이다.            |
|    |                    | 자내          | 나는 대체로 내가 하는 일이 매우 즐겁고 재미있다.                                                                                                                                                                              |

| 범주 | 척도명 | 척도 문항구성                                   |                                                                      |                                        |
|----|-----|-------------------------------------------|----------------------------------------------------------------------|----------------------------------------|
|    |     | 기<br>결<br>정<br>동<br>기<br>역<br>량           | 적<br>동<br>기,<br>외<br>적<br>동<br>기                                     |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나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
|    |     |                                           |                                                                      |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편이다.          |
|    |     |                                           |                                                                      | 나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
|    |     |                                           |                                                                      |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    |     |                                           |                                                                      | 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한다.              |
|    |     | 자<br>기<br>기<br>반<br>정<br>서<br>자<br>원      | 자<br>율<br>성,<br>유<br>능<br>성,<br>관<br>계<br>성                          | 나는 내 삶을 효율적으로 살아간다.                    |
|    |     |                                           |                                                                      | 나는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    |     |                                           |                                                                      | 나는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다.                  |
|    |     |                                           |                                                                      |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               |
|    |     |                                           |                                                                      |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낸다.                  |
|    |     | 미<br>래<br>지<br>향<br>자<br>기<br>실<br>천<br>성 | 목<br>적<br>의<br>식,<br>자<br>기<br>반<br>응,<br>자<br>기<br>성<br>찰           | 나는 명확한 목표를 잘 알고 일한다.                   |
|    |     |                                           |                                                                      | 나는 어떤 일에 집중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다.             |
|    |     |                                           |                                                                      | 내 인생에서 다가올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안다.             |
|    |     |                                           |                                                                      | 나는 계획한 바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을 계속한다.            |
|    |     |                                           |                                                                      |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
|    |     | 관<br>계<br>기<br>반<br>독<br>립<br>성           | 부<br>모<br>지<br>지,<br>부<br>모<br>의<br>존,<br>의<br>사<br>결<br>정<br>관<br>련 | (역)나는 내 일을 결정할 때 부모님께 먼저 물어본다.         |
|    |     |                                           |                                                                      | (역)나는 일을 할 때 내 방식보다 부모님의 의견을 더 많이 따른다. |
|    |     |                                           |                                                                      | (역)나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부모님을 찾는다.          |
|    |     |                                           |                                                                      | 부모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응원해 주신다.             |
|    |     |                                           |                                                                      | 나는 부모님께 내게 중요한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



| 범주                  | 척도명           | 척도 문항구성             |                                       |
|---------------------|---------------|---------------------|---------------------------------------|
| 환경<br>및<br>평가<br>체계 | 장애인의<br>환경 척도 | 요인                  | 문항                                    |
|                     |               | 사회적<br>태도           | 사회적 편견이 내가 이동하는데 방해를 주지 않는다.          |
|                     |               |                     |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나의 자존감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는다.  |
|                     |               |                     | 나는 비슷한 능력을 가진 비장애인과 차별 없는 대우를 받는다.    |
|                     |               |                     | 나는 자유롭게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비장애인 친구가 많다.     |
|                     |               | 가족의<br>태도           | 가족 내에서 나의 의견은 존중된다.                   |
|                     |               |                     | 나의 가족들은 나를 지지(신뢰)한다.                  |
|                     |               |                     | 나의 가족은 나의 장애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           |
|                     |               |                     | 나의 가족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                |
|                     |               |                     | 나는 나의 가족에 만족한다.                       |
|                     |               |                     | 나의 가족들은 가족 공동체에서 나의 역할을 기대한다.         |
|                     |               | 이동<br>과<br>편의<br>시설 | 나의 주변 환경은 안전하다.                       |
|                     |               |                     | 내 주변의 편의시설은 적절하다.                     |
|                     |               |                     | 나의 활동 반경 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
|                     |               |                     | 우리 집은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으로 개조되어 있다. |
|                     |               |                     | 지역사회의 공공건물은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
|                     |               | 지지<br>적<br>관계       | 나는 많은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
|                     |               |                     | 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
|                     |               |                     |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료 장애인들과 친한 관계를 맺고 있다. |
|                     |               |                     |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          |
|                     |               |                     | 나는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
|                     |               |                     | 나에게 소속감을 줄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이 있다.           |
|                     |               |                     | 나는 배우고 따를 만한 선배 장애인(롤모델)이 있다.         |
|                     |               | 서비스<br>와<br>정책      | 사람들은 내 말을 귀 담아 듣는다.                   |
|                     |               |                     | 나는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있다.             |
|                     |               |                     | 나는 장애인정책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있다.       |
|                     |               |                     | 나는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는다.                |
|                     |               |                     | 장애인지원 제도 하에서 내가 사회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
|                     |               |                     | 나는 나의 생활에 필요한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다.           |
|                     |               |                     | 나의 환경 속에서, 나의 직업적 능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
|                     |               |                     | 내가 원하는 교통편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

| 범주 | 척도명                   | 척도 문항구성                                |                                                                                    |
|----|-----------------------|----------------------------------------|------------------------------------------------------------------------------------|
|    | 한국어판<br>WHODAS<br>2.0 | 요인                                     | 문항                                                                                 |
|    |                       | 지난 한 달 동안 다음의 활동을 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
|    |                       | 이해                                     | 어떤 것에 10분 동안 집중하기                                                                  |
|    |                       | 해야                                     | 해야 할 중요한 일을 기억하기                                                                   |
|    |                       | 와                                      |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
|    |                       | 의사                                     | 새로운 것을 배우기, 예를 들면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는 길을 배우기                                              |
|    |                       | 소통                                     |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
|    |                       | 대화를 시작하고 유지하기                          |                                                                                    |
|    |                       | 돌아다니기                                  | 오랜 시간, 예를 들어 30분 동안 서 있기                                                           |
|    |                       |                                        | 앉아 있다가 일어서기(바닥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것은 제외)                                                 |
|    |                       |                                        |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
|    |                       |                                        | 집 밖으로 나오기(심리적인 문제로 집밖으로 나오기 어려운 경우 포함)                                             |
|    |                       | 자기관리                                   | 장거리, 예를 들어 1km의 거리를 걷기(1km는 보통걸음으로 15분 동안 걷는 거리를 말함)                               |
|    |                       |                                        | 몸 전체를 씻기                                                                           |
|    |                       |                                        | 옷 입기(입을 옷을 고르는 것도 포함)                                                              |
|    |                       |                                        | 식사하기(식사준비 제외. 식사하기 만을 생각하며 응답)                                                     |
|    |                       |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 며칠간 혼자서 지내기(지난 한 달간 며칠간 혼자서 지낸 적이 없다면 '없다'로 응답)                                    |
|    |                       |                                        | 모르는 사람과 상대하기                                                                       |
|    |                       |                                        | 우정을 유지하기                                                                           |
|    |                       |                                        |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
|    |                       | 일상생활 활동                                |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
|    |                       |                                        | 가벼운 애정표현에서 성관계까지 포함하는 성적 활동                                                        |
|    |                       |                                        | 집안일을 처리하기(청소나 설거지뿐 아니라 재정관리나 차나 집수리, 자녀 양육과 등하교 도와주기, 숙제 도와주기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 포함) |
|    |                       |                                        | 중요한 집안일을 잘하기(일을 '서툴지 않게 잘 처리했는지'에 관한 질문)                                           |
|    |                       |                                        | 해야 하는 모든 집안일을 마치기(처리한 일들의 '범위'와 '완수'에 관한 질문)                                       |
|    |                       |                                        | 집안일을 필요에 따라 빨리 마치기(일을 마치는 '속도'에 대한                                                 |



| 범주 | 척도명 | 척도 문항구성                                                                                        |                  |
|----|-----|------------------------------------------------------------------------------------------------|------------------|
|    |     | 질문                                                                                             |                  |
|    |     | 만약 직업이 있다면, 지난 한 달 동안 건강상태 때문에 다음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나요?                                       | 매일 하는 일          |
|    |     |                                                                                                | 중요한 일을 잘하기       |
|    |     |                                                                                                | 해야 하는 모든 일을 마치기  |
|    |     |                                                                                                | 일을 필요에 따라 빨리 마치기 |
|    |     | 행사나 종교적 모임 등의 사회활동에 보통 사람들처럼 참여하는데 얼마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                  |
|    |     | 당신 주변의 장애물이나 방해물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있었습니까?(장애물은 물리적 장애물뿐 아니라 법이나 제도 같은 사회적 장애물도 포함)                   |                  |
|    |     | 당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 때문에 당신이 품위 있게 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                  |
|    |     | 당신의 건강문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까?(건강문제로 들인 시간은 병원진료나 검사, 약 구입, 건강과 관련된 재정관리, 건강과 관련된 정보 수집 등을 포함) |                  |
|    |     | 당신의 건강상태로 인해 얼마 많은 심적인 영향을 받았습니까?(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를 포함)                                     |                  |
|    |     | 당신의 건강상태로 인해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에게 얼마나 경제적 부담이 있었습니까?                                                  |                  |
|    |     | 당신의 건강상태 때문에 가족들에게 얼마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                  |
|    |     | 혼자 휴식을 취하거나 여가를 즐기는 데 얼마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                  |

본 표에 제시된 장애 관련 인식 및 태도 척도들은 문항 수준에서 볼 때, 단순한 호의·비호의의 태도를 넘어 인지, 정서, 행동의지 및 사회적 맥락을 다층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인권 및 사회정의 범주의 척도(문용린 외, 2002)는 특정 상황(에피소드)을 제시한 후, 이를 인권 문제로 인식하는지(상황 지각), 그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지(결과 지각), 그리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지(책임 지각)를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응답자의 가치판단뿐 아니라 인권 이슈를 해석하고 실천으로 연결하는 과정 자체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태도 척도보다 행동지향적 성격을 갖는다.

인식 및 태도 범주의 척도들은 문항 내용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이중적 태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양가적 장애인차별척도(ADS)(감정기, 임은애, 2004)는 “장애인에게 특별한 배려는 바람직하지 않다”, “장애인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와 같은 적대적 문항과 함께, “장애인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와 같은 동정·보호 중심의 문항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차별이 부정적 감정뿐 아니라 호의적 감정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직장 내 장애 포용척도(이미지, 지은, 2022)는 “관련 법과 제도를 알고 있다”는 인지 문항, “함께 일하면 부담이 될 것이다”와 같은 수용(태도) 문항, 그리고 “차별 발언을 방관하지 않겠다”, “편의 제공을 촉구하겠다”와 같은 실천적·제도적 옹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지식-태도-행동(advocacy)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삶의 질(정소연 외, 2016; 한민정, 강영심, 2022), 사회적 배제(김경미 외, 2013), 정체성(이익섭, 신은경, 2006) 및 환경 관련 척도(김경미, 윤재영, 2013)들은 문항을 통해 장애인의 실제 경험과 주관적 인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삶의 질 척도는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친구와 교류하고 있는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와 같이 일상생활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반면, 사회적 배제 척도(김경미 외, 2013)는 “돈이 없어 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진다”,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한 시선을 느낀다”와 같은 문항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배제 경험을 측정한다. 또한 장애 정체감 척도(이익섭, 신은경, 2006)는 “장애가 있지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차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자기수용과 권리주장을 평가하



며, 환경 척도와 WHODAS 2.0(신은경, 신형익. 2012)은 이동, 의사소통, 사회 참여 등 기능과 환경 조건에 대한 구체적 어려움 수준을 묻는다. 이러한 문항 구성은 장애를 둘러싼 경험이 개인 내부의 태도에 그치지 않고 삶의 조건, 관계, 환경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Ⅲ. 인권 기반 장애 인식 개념화

1. 인권 기반 장애 인식 개념화의 필요성
2. 인권 실현의 조건과 논거
3. 장애 인식의 개념화
4.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규범적 구성 요소 및 개념화



### Ⅲ. 인권 기반 장애 인식 개념화

#### 1. 인권 기반 장애 인식 개념화의 필요성

장애 개념을 둘러싼 최근 논의에서 장애인권모델(human rights model)은 사회모델 이후의 대안적 접근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인권모델과 사회모델 간의 관계는 ‘개선론(improvement thesis)’과 ‘보완론(complementarity thesis)’ 사이에서 여전히 모호하게 규정되고 있으며, 사회모델과 같이 장애의 개념, 원인, 대응에 대해 선명하고 일관된 설명들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모델은 장애당사자, 일반 시민, 정책 당국 등 장애정책 공론장의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충분한 설명력과 소구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모델은 사회모델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 등장하였다. 특히 사회모델이 의도적으로 배제해 온 손상의 문제—즉 손상을 가진 몸(존재)이 경험하는 육체적 감각과 정신적 의미화(부정성 또는 긍정성),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적·사회심리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하고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하였다. 또한 장애 내부의 이질성, 즉 손상의 다양성과 성, 인종, 계급 등과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던 사회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다 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인권모델은 개인모델이나 사회모델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장애 개념을 제시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인권모델의 제도적 구현으로 평가되는 장애인권리협약(CRPD)에서도 장애 정의가 어떠한 모델에 기초하고 있음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인권모델은 손상의 중립성 또는 긍정성의 가능성 인정, 예방과 재활의 중요성, 교차성 이슈의 수용 등 사회모델의 한계를 보완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통합된 개념들로 체계화하지 못한 채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장애가 무엇이며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적 틀을 ‘장애 모델’로 이해할 때(Sivers, 2020), 장애 개념과 원인에 대한 차별적 해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인권모델은 엄밀한 의미에서 독자적인 장애 모델로 규정하기 어렵



다.

한편, 장애 모델을 단일한 설명 체계로 이해하는 관점 자체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장애는 존재론적, 윤리적, 정치사회적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이 이를 전면적으로 포착하여 설명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완전한 장애 개념에 대한 기대는 일종의 이론적 환상에 가깝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장애 모델의 공존은 중요한 개념적·실천적 의의를 갖는다. 각각의 장애 모델은 장애 현상의 특정 측면을 포착하여 설명하며, 지배적인 모델에서 가시화되지 않았던 존재를 드러내고, 타자(비장애인)로 하여금 기존에 인식하지 못했던 존재에 대한 전회적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이는 공존의 태도를 재고하도록 만들고, 그동안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간과되었던 욕구와 필요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개입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더 나은 인간 존재와 더 나은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장애인권모델’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대신에 보다 포괄적이고 확장적인 개념으로서 ‘인권 기반 장애 인식(human rights-based disability perception)’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권리(right)’가 법률적 차원에 보다 밀접한 개념인 반면, ‘인권(human rights)’은 보다 확장적이고 규범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인권’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UN과 EU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인권기반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이하 HRBA)’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인권기반접근(HRBA)은 국제 인권 규범을 기초로 하여 정책, 프로그램, 제도의 설계와 실행 전반에 인권 원칙과 국가의 의무를 중심에 두는 개념적·운영적 틀이다. 유럽국가인권기구네트워크(ENNHRI)는 HRBA를 “국제 인권 기준에 기반하여 인권을 증진·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틀로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힘을 부여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된 접근”으로 정의한다(ENNHRI, 2023). 이 접근은 권리보유자(rights-holders)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의무이행자(duty-bearers)가 인권을 존중·보호·촉진·실현할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또한 HRBA는 참여(Participation), 책임성(Accountability), 비차별과 평등(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역량강화(Empowerment), 적법성(Legality)으로 구성된 이른바 PANEL 원칙을 핵심 원리로 삼는다(ENNHRI, 2023).

유엔 또한 HRBA를 “국제 인권 규범에 기초하며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지향하는 인간발전의 개념적 틀”로 정의하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차별, 권력의 불균형을 분석하고 이를 시정함으로써 특정 집단이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고 설명한다(UNSDG, 2024). 이를 위해 정책·제도·프로그램의 전 과정은 국제인권법에 명시된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기초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보편성, 불가분성, 참여, 비차별, 책임성 등의 인권 원칙이 지속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 또한 HRBA는 권리보유자와 의무이행자의 역량(capacities)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핵심 요소로 하며, 모든 공공정책과 개발협력은 국제인권규범에 명시된 인권의 실현을 증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UN, 2003; UNSDG, 2024).

요컨대 HRBA는 단순히 인권을 고려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의 목적, 절차, 성과 전반을 인권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전면적인 정책 패러다임이다. 이는 국가에 대해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무성 강화 모델’이며, 동시에 권리보유자의 역량과 참여를 확대하는 ‘권리주체 역량 강화 모델’을 결합한 이중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HRBA는 장애인권리협약(CRPD)과 긴밀히 연결되며,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권리보유자로서의 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의무이행자로서 국가의 책임 강화가 동시에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규범적 틀로 기능한다.

한편, 장애 인식의 중요성은 이러한 인권 규범의 확립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 규범의 발전은 장애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이지만, 이러한 규범이 실제 사회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이 인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전문 제7문단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고 밝힌 내용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장애 인식은 단순한 태도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구조, 내용, 그리고 국가의 의무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인식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나아가 인권 기반 장애인 정책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이 인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으며, 이는 곧 장애 인식이 인권 이해에 기반해야 함을 의미한다.



## 2. 인권 실현의 조건과 논거

### 1) 인권 실현의 조건

본 연구는 인권을 “어떠한 몸의 존재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명제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정의는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조건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지닌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어떠한 몸의 존재’라는 표현은 인간의 다양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장애를 포함한 모든 차이를 인간 존재의 한 형태로 인정하는 인권 이해를 반영한다. 따라서 인권은 특정한 능력이나 정상성(normativity)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로부터 도출되는 보편적 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은 단순한 선언적 권리에 그치지 않으며, 실제 삶의 조건 속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즉, 인권은 추상적 규범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와 제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인권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첫째, 타인으로부터의 수용이다. 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타인에 의해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는 단순히 법적 평등의 문제를 넘어, 개인의 존재와 삶의 방식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수용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며, 이러한 인정이 결여될 경우 개인은 사회적 배제와 낙인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차이는 타자화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수용은 인권 실현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자기 긍정이다. 개인은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인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와 삶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존엄한 존재이며 권리를 지닌 주체라는 인식에 기초한 자기 이해를 의미한다. 자기 긍정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권리의 실현을 요구할 수 있는 내적 기반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만약 개인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내면화하게 된다면, 이는 권리 주체로서의 자기 인식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인권 실현의 가능성 자체

를 제한하게 된다.

셋째, 정치사회공동체의 보장이다. 인권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 차원에서 이를 보장할 때 비로소 실질적으로 구현된다. 이는 법률과 정책의 제정, 무장애 환경의 구축,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 개입을 포함한다. 특히 장애를 포함한 사회적 불리 조건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될 수 없는 구조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정치사회공동체는 이러한 불리함을 완화하고 권리의 실질적 향유를 가능하게 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인권의 실현은 국가의 소극적 불개입이 아니라, 적극적인 제도적 보장을 요구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요컨대 인권은 단순히 ‘존재로서의 권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수용, 자기 긍정, 정치사회적 보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신체적·정신적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존엄과 정의에 기초한 삶의 조건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조건은 사회적 인정, 개인의 자기 이해, 그리고 제도적 보장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다.

결국 “어떠한 몸의 존재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명제는 인간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 보편적 인권 이해를 함축하는 동시에, 인권 실현을 위한 관계적·제도적 조건을 함께 요구하는 규범적 주장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권을 단순한 선언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실천과 제도적 개입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하는 실질적 권리로 재정의하며, 나아가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한다.

## 2) 인권 실현 조건의 철학적·규범적 논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권 실현의 세 가지 조건, 즉 타인의 수용, 자기 긍정, 정치사회공동체의 보장은 단순한 규범적 선언이 아니라, 이론적 근거와 국제 인권 규범에 의해 뒷받침되는 구조적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관계적 존재론에 기반한 Honneth(1995)의 인정 이론과 국제 인권 규범이라는 이중의 이론적 논거에 기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 (1) 타인으로부터의 수용(Acceptance by Others)

### ① 철학적 근거

Honneth의 인정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와 정체성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경험, 특히 ‘존중(respect)’과 ‘연대(solidarity)’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개인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존재와 삶의 방식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 비로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

Honneth는 도덕적 존중의 차원에서, 개인이 권리 주체로 인정된다는 것은 “개인이 모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라고 설명한다(Honneth, 1995, p. 121). 이는 타인의 인정이 단순한 감정적 수용을 넘어, 개인을 권리의 주체로 승인하는 규범적 행위임을 의미한다.

또한 연대적 인정은 개인의 특성과 삶의 양식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될 때 성립하며, 이러한 인정은 개인의 자긍심(self-esteem)을 가능하게 한다(Honneth, 1995, pp. 129-130). 즉, 개인의 차이가 부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일부로 인정될 때 개인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타인의 수용은 단순한 사회적 호의가 아니라 개인이 사회적 배제 없이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인권 실현의 기초적 전제에 해당한다.

### ② 국제 인권 규범 근거

타인의 수용, 즉 사회적 인정의 필요성은 국제 인권 규범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서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1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타인의 인정이 인권의 전제 조건임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3조(일반원칙)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천부적인 존엄성과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

## 한 존중

(나) 비차별

(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라)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 및 수용

(마) 기회의 균등

(바) 접근성

(사) 남녀의 평등

(아)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를 위한 장애아동 권리에 대한 존중”

특히 (라)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및 수용은 호네프가 제시한 연대적 인정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대응한다. 이는 장애를 인간 다양성의 일부로 인정하고, 장애인을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것이 인권 실현의 핵심 조건임을 의미한다.

## (2) 자기 긍정(Self-affirmation)

### ① 철학적 근거

Honneth(1995)는 개인이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의 긍정적 인정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자기긍정 능력을 정체성 형성의 전제 조건으로 규정한다.

“인간은 타인의 승인과 지지를 통해서만 자신이 긍정할 만한 존재라고 느끼며, 이러한 인정은 ‘긍정적 자기관계’의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Honneth, 1995, p. 95).

또한 “사랑, 존중, 연대의 세 가지 인정 영역을 통해 개인은 자기신뢰(self-trust), 자기존중(self-respect), 자기존중(self-esteem)을 획득하며, 이는 인간의 자유 실현의 조건이 된다”(Honneth, 1995, p. 129).

이와 같이 자기긍정은 개인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 인정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산물이다. 따라서 자기긍정은 인권 실현의 결과이자 동시에 출발점으로서, 개인이 권리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 ② 국제 인권 규범 근거

자기긍정의 규범적 근거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 가장 명확히 확인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인간의 존엄(dignity)을 인간 존재의 본질적 속성으로 규정하며, 개인이 스스로를 존엄한 존재로 이해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Honneth가 말하는 긍정적 자기관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적 토대에 해당한다.

## (3) 정치사회공동체의 보장(Community/State Support)

### ① 철학적 근거

Honneth(1995)는 인정이 사랑, 권리, 연대라는 세 차원에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보며, 특히 법적 인정은 국가가 개인을 권리 주체로 승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법적 관계에서의 인정은 개인을 권리의 주체로 승인하며, 이는 국가가 법 제도를 통해 보장해야 하는 규범적 의무이다”(Honneth, 1995, p. 118).

또한 그는 “사회적 자유는 개인들이 제도 속에서 서로를 상호적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관계를 제도가 보장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고 지적한다(Honneth, 2014, p. 34).

이는 인권이 개인 간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적·구조적 조건 속에서 실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사회공동체의 보장은 인정 구조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인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 ② 국제 인권 규범 근거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는 세계인권선언과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확히 규정된다. 세계인권선언 제2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

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국가가 인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이고 제도적인 의무를 부담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일반의무)는 국가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 정책, 예산, 참여 보장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제3항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인권 실현이 단순한 보호를 넘어 참여와 권한 부여(empowerment)를 포함해야 함을 명확히 한다.

이와 같이 국제 인권 규범은 인권 실현이 국가의 소극적 불개입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개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사회공동체의 보장이 인권 실현의 필수 조건임을 뒷받침한다.

#### (4) 소결

인권 실현의 세 가지 조건인 타인의 수용, 자기 긍정, 정치사회공동체의 보장은 각각 독립된 요소가 아니라, 인정의 관계적 구조와 국제 인권 규범 속에서 상호 연계된 하나의 체계를 구성한다. 즉, 타인의 수용은 개인을 사회적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조건이며, 자기 긍정은 이러한 인정이 내면화된 결과이고, 정치사회공동체의 보장은 이러한 인정 구조를 제도적으로 안정화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은 단순한 선언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인정, 개인의 자기관계, 그리고 제도적 보장이 결합된 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표 3-2-1〉 인권 실현의 조건과 논거

| 인권 실현의 조건   |                                                                         | 철학적 논거(Honneth의 인정이론)                                         | 국제인권규범적 논거                   |
|-------------|-------------------------------------------------------------------------|---------------------------------------------------------------|------------------------------|
| 영역          | 의미                                                                      |                                                               |                              |
| 타인의 수용      | 나는 나와 더불어 세계에 존재하는 타인으로부터 동등한 존엄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존중과 연대의 인정은 개인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능하게 한다.”(Honneth, 1995, p.129)    | 세계인권선언 전문, 제1조 / 장애인권리협약 제3조 |
| 자기 긍정       | 나는 존엄한 존재로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으며, 권리주체로서 권리의 실현을 정치공동체에 요구할 수 있다.             | “긍정적 자기관계는 인정의 경험을 통해서만 발달한다.”(Honneth, 1995, p.95)           | 세계인권선언 제1조                   |
| 정치사회공동체의 지원 | 정치사회공동체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와 법률을 통해 나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 “법적 인정은 국가가 개인을 권리의 주체로 승인하는 제도적 의무이다.”(Honneth, 1995, p.118) | 세계인권선언 제22조 /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    |

### 3. 장애 인식의 개념화

장애 인식은 단순히 장애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라는 특정한 속성을 지닌 타자에 대한 인식, 즉 ‘타자성(otherness)’을 지닌 존재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장애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성과 결합된 사회적 의미의 구성물으로써 이해되며, 따라서 장애 인식은 곧 타자 인식의 한 형태로 파악될 수 있다.

타자성이란 무엇보다도 특정한 존재가 ‘나와 다른 존재’로 인식되는 조건과 그 차이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이러한 타자성에 대한 이해는 우선적으로 개념적 인식, 즉 인지적 차원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타자 인식은 타자의 속성과 조건, 그리고 그 차이가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장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나 비정상성으로 이해할 것인지, 혹은 인간 다양성의 한 형태이자 손상과 사회적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장애 인식의 방향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타자 인식은 단순한 인지적 이해에 머물지 않는다. 타자는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존재이며, 외면할 수 없는 만남(encounter)의 대상이다. 이러한 만남은 단순한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공존해야 하는 존재와의 접촉을 의미한다. 특히 타자는 세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미래의 나’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존재라는 점에서, 타자와의 관계는 일회적이거나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상호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타자 인식은 타자성과의 대면 상황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차원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즉, 우리는 타자의 속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넘어서, 그러한 타자를 어떤 심리적 태도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구받는다. 이는 타자에 대한 정동적 태도(예: 거리감, 수용, 공감)와 행동적 대응(예: 배제, 회피, 협력, 연대)을 포함하는 ‘타자 윤리’의 문제로 확장된다. 따라서 장애 인식 역시 장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타자는 단순히 개인 간 관계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료이자 구성원이다. 즉, 타자는 사회적·정치적 공간 속에서 함께 살아가며 공동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이러한 점에서 타자 인식은 공동체 차원에서 타자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확장되며, 이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구성의 문제, 즉 정의(justice)의 문제로 귀결된다. 공동체는 타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떠한 수준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할 것인지, 어떠한 방식의 지원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공론화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적 규범과 제도가 형성된다.

결국 타자 인식은 단일한 차원의 인식이 아니라, 다층적 구조를 가진 복합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첫째, 타자성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인지적 차원, 둘째, 타자와의 만남과 공존 속에서 요구되는 태도와 행위를 포함하는 윤리적 차원, 셋째, 공동체가 타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어느 수준까지 지원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규정하는 정치사회적 합의로서의 정의 차원이 상호 결합된 구조를 이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 인식을 단순한 태도나 편견의 문제가 아니라, 타자성



에 대한 이해, 타자에 대한 윤리적 대응, 그리고 공동체 차원의 정의 원칙이 결합된 다차원적 인식 체계로 개념화한다. 이러한 개념화는 장애를 개인의 특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제도 속에서 구성되는 문제로 재위치 시키며,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 4.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규범적 구성 요소 및 개념화

본 연구는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을 인지(cognition), 윤리(ethics), 정의(justice)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개념화한다. 이러한 구분은 장애를 둘러싼 인식이 단순한 지식이나 태도에 국한되지 않고, 타자성에 대한 이해, 타자에 대한 윤리적 대응, 그리고 정치사회적 제도와 규범에 대한 판단이 결합된 다차원적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 기초한다.

또한 이러한 세 영역은 앞서 제시한 인권 실현의 세 가지 조건—타인의 수용, 자기 긍정, 정치사회공동체의 보장—과 상호 긴밀하게 연결된다. 즉, 인지 영역은 타자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타인의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적 기반을 제공하며, 윤리 영역은 타자에 대한 태도와 행위를 통해 타인의 수용을 실천하고 자기 긍정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적 조건을 형성한다. 나아가 정의 영역은 이러한 인식과 태도가 제도화된 형태로서 정치사회공동체의 보장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권리주체로서의 자기 긍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1) 인지 영역: 장애에 대한 이해와 타인의 수용의 인식적 기반

인지 영역은 장애를 인간 조건의 일부이자 손상과 사회·환경적 조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하는 관점에 해당한다. 이는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나 비정상성으로 환원하는 인식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 조건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인식적 전환을 요구한다. 이러한 이해는 타자를 배제하거나 낙인찍는 인식이 아니라, 타인을 동등한 존재로 수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인권 실현의 첫 번째 조건인 ‘타인의 수용’의 인식적 기반을 형성한다.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인지 영역을 구성하는 명제와 구체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명제 1(손상의 보편성): 손상은 인간의 삶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인간 조건이다.** 손상의 보편성 명제는 손상이 특정 집

단에 국한된 예외적 상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인간 조건임을 강조한다. 이는 장애를 ‘타자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적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거리두기나 배제를 정당화하는 인식을 약화시키고, 타인의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적 인식틀을 제공한다.

**명제 2(손상의 실존성):** 손상은 당사자의 일상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며, 그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 손상의 실존성 명제는 손상이 개인의 일상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를 단순한 사회적 구성물로 환원하지 않고, 개인의 경험 차원을 포함하여 이해함으로써, 타자의 경험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명제 3(사회적 억압에 따른 고통·불리의 가중):** 손상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 지원체계의 부재 또는 불충분함으로 인해 일상생활, 이동, 사고, 교육, 고용, 문화·정치활동 등 사회적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추가적인 불편함과 사회적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다. 사회적 억압에 따른 고통과 불리의 가중 명제는 장애로 인한 불이익이 단순히 손상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원체계의 부재나 불충분함에 의해 확대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장애를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전환시키며, 타인의 수용이 단순한 인식 차원을 넘어 구조적 조건과 결합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명제 4(장애의 상호작용적 본질):** 장애는 손상과 사회·환경적 조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개인의 사회적 참여가 제한되거나 불리함을 초래하는 상태이다. 장애의 상호작용적 본질 명제는 장애가 손상과 사회·환경적 조건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이는 장애를 개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구조적 문제로 이해하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타자를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인지 영역은 장애를 둘러싼 개념적 이해를 재구성함으로써, 타인을 동등한 존재로 수용할 수 있는 인식적 토대를 제공한다.



## 2) 윤리 영역: 타자에 대한 태도와 자기 긍정의 관계적 조건

윤리 영역은 손상과 장애를 바라보는 규범적 태도와 가치, 그리고 타자에 대한 정동적·행동적 대응을 포함한다. 이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며, 인권 실현의 조건 중 ‘타인의 수용’을 실제 관계 속에서 구현하는 동시에 ‘자기 긍정’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적 환경을 형성한다.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윤리 영역을 구성하는 명제와 구체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명제 5(손상의 중립성·긍정 가능성):** 손상은 인간 다양성의 한 형태이며 본질적으로 비정상·결함·부정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손상은 적어도 규범적 중립성을 지니며, 인간 경험의 다양한 형태로서 긍정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손상의 중립성 및 긍정 가능성 명제는 손상이 본질적으로 비정상성이나 결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인간 다양성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장애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규범적 틀을 해체하고, 장애를 가진 존재가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자기 긍정의 가능성을 확장한다.

**명제 6(심리적 태도(감정)의 평등성):**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은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므로, 장애인을 향한 심리적 태도는 비장애인을 향한 태도와 동일한 수준의 존중, 개방성, 호의가 보장되어야 한다. 즉, 장애는 부정적 감정·거리두기·불편함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심리적 태도(감정)의 평등성 명제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며, 장애인을 향한 심리적 태도 역시 비장애인을 향한 태도와 동일한 수준의 존중과 개방성을 가져야 함을 요구한다. 이는 장애를 부정적 감정이나 거리두기의 근거로 삼는 인식을 배제함으로써, 타인의 수용을 정서적·관계적 차원에서 실현한다.

**명제 7(외부적 태도(행동)의 평등성):** 모든 사람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등한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상호작용에서의 배제, 회피, 과잉보호 등 차별적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외부적 태도(행동)의 평등성 명제는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배제, 회피, 과잉보호와 같은 차별적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이는 타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가 실제 행위로 이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장애인을 동등한 관계의 주체로 인정하는 실천적 조건을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윤리 영역은 타자에 대한 존중과 수용을 관계 속에서 구현하는 동시에, 장애인이 스스로를 존엄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자기 긍정의 조건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 3) 정의 영역: 정치사회공동체의 보장과 권리의 제도화

정의 영역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국가의 의무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며, 인권 실현의 세 번째 조건인 ‘정치사회공동체의 보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동시에 이는 장애인을 권리 주체로 인정하고, 자기 긍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다.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정의 영역을 구성하는 명제와 구체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명제 8(장애인의 권리주체성): 장애인**은 인간 존엄에 기초한 권리주체로서, 자신의 삶의 경험과 관점에 기반하여 권리의 내용과 의미를 재해석하고 확장하며 새롭게 요구·형성해 나갈 수 있는 능동적 주체이다. 장애인의 권리주체성 명제는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나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 기반하여 권리를 재해석하고 확장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 규정한다. 이는 자기 긍정을 제도적 차원에서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건이다.

**명제 9(동등한 대우): 사회와 국가는 장애인**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해야 하며, 장애를 이유로 권리·기회·참여 수준의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 더불어 사회적 억압으로 인해 초래된 기회 불평등 및 결과적 불이익을 보상하고자 하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는 동등한 대우의 원칙에 부합한다. 동등한 대우 명제는 사회와 국가가 장애인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해야 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동시에 사회적 억압으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는 동등한 대우의 원칙에 부합함을 강조한다.

**명제 10(국가의 의무성): 국가는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 향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가진다. 국가의 의무성 명제는 장애인의 권리 실현이 국가의 선택적 정책이 아니라 필수적 의무임을 규정한다. 이는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명제 11(지원의 효과성): 사회와 국가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무장애 환경, 서비스 접근성, 합리적 편의 등)은 손상으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불이익을 완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지원의 효과성 명제는 사회적 지원이 단순한 형식적 제공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로 손상으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불이익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요구한다.

**명제 12(지원의 충분성):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은 형식적 제공을 넘어 손상의 고통과 사회적 억압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부족하거나 제한된 지원은 국가의 권리 보장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



원의 충분성 명제는 지원의 수준이 최소한의 생존을 넘어 존엄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불충분한 지원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명제 13(지원의 주류화): 사회적 지원은 ‘주류화(mainstreaming)’를 원칙으로 하며, 특정 장애인구의 특수한 필요 또는 교차적 불리(intersectional disadvantage)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수화(분리 접근)’ 전략을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원의 주류화 명제는 장애인 지원이 분리된 방식이 아니라 일반 제도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수화 전략이 보완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명제 14(당사자 참여): 국가는 장애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이는 민주적 정당성과 권리기반 접근의 필수 요소이다.** 당사자 참여 명제는 관련 정책의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는 민주적 정당성과 권리기반 접근의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

이와 같이 정의 영역은 인권 실현의 제도적 조건을 구성하며, 타인의 수용과 자기 긍정이 사회적 구조 속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 4) 소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은 인지, 윤리, 정의의 세 차원이 상호 결합된 구조를 가지며, 각각은 인권 실현의 세 가지 조건과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인지 영역은 타인의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이해의 조건을, 윤리 영역은 타인의 수용과 자기 긍정을 실천하는 관계적 조건을, 정의 영역은 이러한 조건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구조적 기반을 형성한다.

따라서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은 단순한 태도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차원적 규범 체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표 3-4-1〉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규범적 구성요소

| 영역 | 구분         | 명제                                                                  |
|----|------------|---------------------------------------------------------------------|
| 인지 | 손상과 장애 개념  | 명제 1. 손상의 보편성                                                       |
|    |            | 명제 2. 손상의 실존성                                                       |
|    |            | 명제 3. 사회적 억압에 따른 고통·불리의 가중                                          |
|    |            | 명제 4. 장애의 상호작용적 본질                                                  |
| 윤리 | 손상성 평가     | 명제 5. 손상의 중립성·공정 가능성                                                |
|    | 심리적 태도(감정) | 명제 6. 심리적 태도(감정)의 평등성                                               |
|    | 외부적 태도(행동) | 명제 7. 외부적 태도(행동)의 평등성                                               |
| 정의 | 권리주체성      | 명제 8. 장애인의 권리주체성                                                    |
|    | 지원의 당위성    | 명제 9. 동등한 대우                                                        |
|    |            | 명제 10. 국가의 의무성                                                      |
|    | 지원의 원칙     | 명제 11. 지원의 효과성<br>명제 12. 지원의 충분성<br>명제 13. 지원의 주류화<br>명제 14. 당사자 참여 |



## Ⅳ.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의 인권 기반 장애 인식 수준 분석

1.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 입법 배경 및 입법 추진 경과
2.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 비교 분석
3.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의 인권 기반 장애 인식 수준 분석
4. 소결



## Ⅳ.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의 인권 기반 장애 인식 수준 분석

### 1.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 입법 배경 및 입법 추진 경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논의는 2012년 이후 지속되어 왔으며, 20·21대 국회에서도 다수 법률안 발의와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3건의 법률안이 재발의되었으나, 각 법률안의 견해 차이를 조율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수정대안'이 최종적으로 하나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으로 채택되었다. 해당 법률안은 2026년 3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률안의 주요 쟁점으로는 탈시설의 명시 여부, 거버넌스 구조, 예산주류화 등이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관련 입법 배경은 크게 네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첫째, 현행 장애 관련 법체계, 특히 「장애인복지법」 중심의 법체계가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서비스 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둘째, 장애계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해 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부합하는 권리중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요구이다. 셋째,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개별 욕구 충족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본법 체계 수립의 필요성 대두이다. 마지막으로 2000년 이후 다수의 장애 관련 법률이 분화 및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정부차원에서도 대두되었다. 실제 2021년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정부는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공식화하였으며, 2026년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안 역시 의료모델의 한계, 법체계의 분절성, 권리중심의 국제적 패러다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정책 전환 등을 제정 배경으로 명시하였다.

한편 장애계 내에서 법 제정 논의는 2012년부터 본격화되었다. 2012년 이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등은 각각 초안을 마련한 뒤 통합안 조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20대 국회로 이어져 2017년 1월 양승조 의원이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



였고, 이후 2019년 7월에는 오제세 의원안과 김승희 의원안이 추가로 발의되었다. 같은 시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으며, 정부 차원의 연구와 제도 검토가 실행되었다.

20대 국회 단계에서의 관련 입법은 성사되지 못했다. 양승조 의원안은 2017년 1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2017년 3월 23일 상정되었으나 2020년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19년 10월 30일 국회 공청회도 개최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법령의 제정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는 법률안의 방대한 구조, 탈시설과 지원체계 재편을 둘러싼 당사자간 이견,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등의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21대 국회에서는 전대 대비 입법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 장혜영 의원안(2021.9.27), 김민석 의원안(2021.10.14), 최혜영 의원안(2021.11.18), 이종성 의원안(2022.11.1)이 연이어 발의되었으며, 2022년 4월 7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장애인권리보장 및 탈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후 장혜영 의원안과 최혜영 의원안은 소위 심사를 거쳐 2023년 11월 21일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대안반영폐기 의견이 의결되었으며, 결국 21대 국회 임기 내 최종 제정에 이르지 못하였다.

22대 국회에서 상기 법과 관련한 입법 논의가 다시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안(2024.7.9), 최보운 의원안(2024.8.7), 서미화 의원안(2024.11.4)이 발의되었으나, 최보운 의원안은 8월 22일 철회되었다. 김예지 의원안은 2024년 11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2025년 8월 20일 법안소위 축조심사와 2026년 2월 27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안반영폐기되었다. 이어 2026년 3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세 의원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가결하였고, 3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를 수정가결하여 본회의로 회부하였다.

이상의 입법 과정에서 다수의 쟁점이 장애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25년 장애계 합동토론회에서는 탈시설의 명시 여부, 여성장애인 권리 포함, 안정적 재원 확보, 실효성 있는 이행전략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2026년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이후에도 장애계는 법의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탈시설이 탈시설화 등으로 완화된 점, 재정·거버넌스·권리구제 체계의 미비는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5년 3

월 18일 제정·공포되어 2027년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장애인권리보장법 내 이상적 가치가 별도 입법을 통해 자립생활·주거전환 등 특정 영역에서 먼저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단일 법률안이 아니라 지역사회 자립·주거전환·활동지원·권리구제·정책조정 등을 포괄하는 상위 기본법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정책의 규범적 기초를 복지·시혜 중심에서 권리·참여 중심으로 재구성하려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도로서, 장애계의 요구에 대응하여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입법 과정은 이 법률안이 인권과 권리 기반으로의 장애 정책의 전환을 상징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 시점(2026년 4월 기준)을 기준으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이나 최종 의결 및 공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정 과정에 있는 법률안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본회의 통과 및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조문의 세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2.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 비교 분석

### 1) 김예지 의원안

의원별 발의한 세 법률안은 공통적으로 장애인 권리 중심 전환을 지향하고 있으나, 제도화의 깊이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먼저 김예지 의원안은 현행 국내 장애 관련 법체계가 복지 급여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이 요구하는 사회모델로의 전환을 구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과 2022년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의료모델 채택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서비스 접근을 제한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예지 의원안은 이를 근거로 장애 관련 법률 간 체계성 부족과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정책 공백을 해소할 새로운 기본법 체계의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법률안의 조문을 분석한 결과, 김예지 의원안은 다음의 세 가지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한다.

첫째, 장애 개념의 재구성이다. 제3조는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 개인적 요인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의 제약 상태'로 정의한다. 이는 장애를 개인의 기능적 손상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의료적 관점에서 벗어나 환경과 개인의 관계적 산물로 재개념화한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정책 개입의 초점을 개인의 치료·재활에서 사회적 장벽 제거로 전환하는 인식론적 토대를 구성한다. 둘째, 포괄적 권리 체계의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률안은 제9조부터 제26조까지 18개 조문을 통해 권리 목록을 제시한다. 존엄권·평등권·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에서 출발하여, 생활안정·직업·안전·건강·재활·자립생활·교육·이동·정보 접근·문화·체육·관광·사법 접근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을 포괄한다. 특히 제19조 자립생활권은 시설 중심 체계를 지역사회 기반 체계로 재편하려는 정책 방향을 법적 원칙으로 확립한다. 셋째, 법 이행 구조의 제도화이다. 국무총리 소속 정책위원회, 장애영향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권리를 정책 집행 과정에 통합하며, 5년 단위 종합계획, 3년 단위 실태조사, 매해 관련 지표 구축으로 기획·집행·환류를 체계화한다.

〈표 4-2-1〉 김예지 의원안 주요 조문

| 구분       | 조문 번호 | 조문 내용 전문                                                                                                                                                                                                                                            |
|----------|-------|-----------------------------------------------------------------------------------------------------------------------------------------------------------------------------------------------------------------------------------------------------|
| 목적       | 제1조   | 이 법은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하여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기본이념     | 제2조   | 이 법은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과 배제 없이 권리를 존중받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 정의       | 제3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장애"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br>2.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br>3. "장애인 정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으로서 제2호에 따른 장애인과 관련된 제반 정책을 말한다. |
| 국가와 지방자치 | 제4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필요한 장애인 정책을 수립·실시하고, 법제(法制)·재                                                                                                                                                                           |

| 구분         | 조문 번호 | 조문 내용 전문                                                                                                                                                                                                                                                                                                                                                                                                                                                                                                                                |
|------------|-------|-----------------------------------------------------------------------------------------------------------------------------------------------------------------------------------------------------------------------------------------------------------------------------------------------------------------------------------------------------------------------------------------------------------------------------------------------------------------------------------------------------------------------------------------|
| 단체의<br>책무  |       | <p>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 성별 특성 및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욕구에 적합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권리 옹호 및 구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의 관점에서 장애인 정책과 계획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
| 존엄권        | 제9조   | <p>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p> <p>② 누구든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신체적, 정신적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유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평등권        | 제10조  | <p>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에 대하여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
| 자기결정권      | 제11조  | <p>① 장애인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누구든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배제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p>                                                                                                                                                                                                                                                                                                              |
| 자립생활<br>권리 | 제19조  | <p>①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



| 구분         | 조문 번호 | 조문 내용 전문                                                                                                                                                                                                                                                                                                                                                                                                                                                                                                                                                                                                                                                                                                                            |
|------------|-------|-------------------------------------------------------------------------------------------------------------------------------------------------------------------------------------------------------------------------------------------------------------------------------------------------------------------------------------------------------------------------------------------------------------------------------------------------------------------------------------------------------------------------------------------------------------------------------------------------------------------------------------------------------------------------------------------------------------------------------------|
|            |       |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 장애인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p> <p>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과 주택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별·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는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
| 장애영향<br>평가 | 제36조  |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사업(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li> <li>2.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 사업</li> <li>3.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 사업</li> </ol>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정책에 대하여는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행 중인 법령</li> <li>2. 대상 정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장애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li> <li>3. 대상 정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장애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li> </ol> |

| 구분             | 조문 번호 | 조문 내용 전문                                                                                                                                                                                                                                                                                                                                                                                                                                                                                                                                                                                                                                                                                                                                                                                                                                        |
|----------------|-------|-------------------------------------------------------------------------------------------------------------------------------------------------------------------------------------------------------------------------------------------------------------------------------------------------------------------------------------------------------------------------------------------------------------------------------------------------------------------------------------------------------------------------------------------------------------------------------------------------------------------------------------------------------------------------------------------------------------------------------------------------------------------------------------------------------------------------------------------------|
|                |       |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장애인 권리와 차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br>(이하 ③~⑧항 생략)                                                                                                                                                                                                                                                                                                                                                                                                                                                                                                                                                                                                                                                                                                                                              |
| 한국장애인<br>권리보장원 | 제38조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장애인 권리 보장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br>②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br>③ 보장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단위에 지원을 둘 수 있다.<br>④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br>1.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지원<br>2.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정책 정보의 수집·분석·관리·조사·연구 및 정책개발<br>3. 통계 및 지표의 구축 및 관리 지원<br>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br>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br>6. 장애영향평가 지원<br>7.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br>8. 장애인 권리보장 및 장애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 및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br>9.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제도·정책·서비스 등의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지원<br>10.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 개발 및 협력사업 지원<br>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 2) 최보운 의원안

최보운 위원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요구하는 권리 중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포괄적 접근과 장애주류화 개념의 법제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률안의 조문을 분석한 결과, 최보운 의원안은 다음의 세 가지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한다. 첫째, 장애 개념을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간 상호작용으로 재정의하고(제3조제1호), 장애포괄적 접근을 ‘물리적 환경·교통·정보통신 등에 대한 장벽 제거와 새로운 장벽 생성 방지’로 규정한다(제3조제6호). 이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사후 편의 제공을 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전에 물리적 장벽 제거를 정책 원칙으로 수립한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본 법률안에서는 장애주류화를 제도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법령 제정·개정, 정책 기획,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장애포괄적 관점을 통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장애 정책을 특정 부처의 개별 사업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횡단적 과제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셋째,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법률안 제8조에 따르면, 법령·예산·기금사업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형성 단계에서부터 장애 관점을 통합하는 예방적 장치 마련이 기술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최보운 의원안은 장애주류화와 영향평가를 통해 권리를 정책 집행을 전 과정에 내재화하는 체계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실제 이행력은 주류화 의무와 평가 결과의 구속력 확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2〉 최보운 의원안 주요 조문

| 구분 | 조문 번호 | 조문 내용 전문                                                                                                                                                              |
|----|-------|-----------------------------------------------------------------------------------------------------------------------------------------------------------------------|
| 목적 | 제1조   | 이 법은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하여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구분             | 조문 번호 | 조문 내용 전문                                                                                                                                                                                                                                                                                                                                                                                                                                                                                                                                                                                                                                                                                                                                                                                         |
|----------------|-------|--------------------------------------------------------------------------------------------------------------------------------------------------------------------------------------------------------------------------------------------------------------------------------------------------------------------------------------------------------------------------------------------------------------------------------------------------------------------------------------------------------------------------------------------------------------------------------------------------------------------------------------------------------------------------------------------------------------------------------------------------------------------------------------------------|
| 기본이념           | 제2조   | 이 법은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과 배제 없이 권리를 존중받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 정의             | 제3조   |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li> <li>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li> <li>3. "장애인 권리침해"란 장애인 학대 및 제2장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li> <li>4.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li> <li>5.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목~머목 생략)</li> <li>6. "장애포괄적 접근"이란 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에 기반한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및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 등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장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li> </ol>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필요한 장애인 정책을 수립·실시하고, 법제(法制)·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li> <li>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 성별 특성 및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적합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서비스 결정 및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li> <li>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li> <li>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및 국가종합계획의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장애인지 관점을 도입하고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li> <li>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포괄적 접근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의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한다.</li> <li>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권리옹호 및 권리구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li> <li>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li> <li>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li> </ol> |



| 구분          | 조문 번호 | 조문 내용 전문                                                                                                                                                                                                                                                                                                                                                                                                |
|-------------|-------|---------------------------------------------------------------------------------------------------------------------------------------------------------------------------------------------------------------------------------------------------------------------------------------------------------------------------------------------------------------------------------------------------------|
|             |       | <p>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의 관점에서 장애인 정책과 계획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
| 장애주류화 조치    | 제6조   |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포괄적 관점을 통합하는 장애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장애포괄적 접근조치  | 제7조   |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애포괄적 접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통, 숙박 시설, 음식점, 카페, 극장, 공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서비스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조치</li> <li>2. 정보·통신 기술 및 시스템에 모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조치</li> <li>3. 물리적, 제도적, 사회적 장벽 없는 의사소통 보장 조치</li> <li>4. 물리적, 제도적, 사회적 장벽 없는 이동권, 보행권 보장 조치</li> <li>5.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서비스 접근을 방해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 조치</li> </ol> |
| 장애영향 평가의 실시 | 제8조   |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차별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 정책 또는 예산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p>                                                                                                                                                                                                                                                                                                |
| 존엄권         | 제12조  | <p>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p> <p>② 누구든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신체적, 정신적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유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평등권         | 제13조  | <p>①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법률적 권한을 행사하고자 요구하는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에 대하여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

| 구분                      | 조문 번호 | 조문 내용 전문                                                                                                                                                                                                                                                                                                                                                                                                                                                                                                                                                                                                                                                                                                                                                                                                   |
|-------------------------|-------|------------------------------------------------------------------------------------------------------------------------------------------------------------------------------------------------------------------------------------------------------------------------------------------------------------------------------------------------------------------------------------------------------------------------------------------------------------------------------------------------------------------------------------------------------------------------------------------------------------------------------------------------------------------------------------------------------------------------------------------------------------------------------------------------------------|
| 자기결정권                   | 제14조  | ① 장애인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br>② 누구든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배제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br>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지역사회에서<br>자립적으로<br>살 권리 | 제23조  | ① 장애인은 주거, 건강 및 재활, 교육, 여가·체육·문화, 정보 등의 삶의 제반 영역에서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br>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특성 및 생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는 장애서비스를 필요한만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br>③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 및 각종 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
| 장애인정책<br>위원회            | 제45조  | 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주요정책을 수립·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br>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2. 종합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li> <li>3.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li> <li>4. 장애인정책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li> <li>5. 교육, 고용, 문화, 체육, 이동 및 접근성, 자립지원 등 장애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li> <li>6. 장애인정책의 평가 및 점검, 개선에 관한 사항</li> <li>7.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li> <li>8. 장애인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li> <li>9. 장애인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li> <li>10. 지역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li> <li>11. 장애인정책의 개발·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li> <li>12. 장애영향평가에 관한 사항</li> <li>13. 장애인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li> <li>1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li> <li>1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li> </ol>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



| 구분             | 조문 번호 | 조문 내용 전문                                                                                                                                                                                                                                                                                                                                                                                                                                                                                                                                                                                                                                                                                                                                                                                                                                                                                                                                                                                                                                                                                                            |
|----------------|-------|---------------------------------------------------------------------------------------------------------------------------------------------------------------------------------------------------------------------------------------------------------------------------------------------------------------------------------------------------------------------------------------------------------------------------------------------------------------------------------------------------------------------------------------------------------------------------------------------------------------------------------------------------------------------------------------------------------------------------------------------------------------------------------------------------------------------------------------------------------------------------------------------------------------------------------------------------------------------------------------------------------------------------------------------------------------------------------------------------------------------|
|                |       | <p>소속 직원의 출석, 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한국장애인<br>권리보장원 | 제53조  |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장애인 권리 보장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③ 보장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단위에 지원을 둘 수 있다.</p> <p>④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지원</li> <li>2.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정책 정보의 수집·분석·관리·조사·연구 및 정책개발</li> <li>3. 통계 및 지표의 구축 및 관리 지원</li> <li>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li> <li>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li> <li>6. 장애영향평가 지원</li> <li>7.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li> <li>8. 장애인 권리보장 및 장애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 및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li> <li>9.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제도·정책·서비스 등의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지원</li> <li>10.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 개발 및 협력사업 지원</li> <li>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li> </ol>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장원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⑥ 보장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

### 3) 서미화 의원안

서미화 의원안 역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강조하며, 현행 장애인복지법 내 시혜적·동정적 관점을 비판한다. 특히 해당 법률안은 탈시설의 명시적 법제화와 권리옹호체계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에 법률안의 조문을 분석한 결과, 서미화 의원안은 다음의 네 가지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한다.

첫째, 본 법률안은 탈시설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2조제6호는 탈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 서비스를 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규정하고, 시설 수용 종식을 법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 본 법률안에는 확장된 장애인권리침해 개념이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제2조제4호를 살펴보면, 장애인권리침해를 "학대·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일체와 장애서비스 이용 과정의 권리침해"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권리보호의 범위를 물리적 침해에서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하여 명시한다.

셋째, 제도화된 권리옹호체계가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제3조, 제7조),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의무 설치하여(제52조) 신고접수·현장조사·응급조치·법률지원 권한을 부여(제54조)하고, 단체소송 제도를 도입하여(제57조), 집단적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경로 마련에 대한 내용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넷째, 장애인 당사자별 개인별지원계획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83조에 따르면, 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개별 계획에 따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획일적 급여 체계를 개인 중심 지원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서미화 의원안은 탈시설 명시, 권리옹호센터, 단체소송, 개인별 계획이라는 다층적 장치를 통해 당사자의 권리보장을 추상적 선언 수준을 넘어 실질적 이행 구조로 전환하려는 입법적 시도를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실효성 있는 권리보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탈시설 관련 구체적 이행 경로 설계 및 권리옹호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2-3〉 서미화 의원안 주요 조문

| 구분         | 조문 번호 | 조문 내용 전문                                                                                                                                                                                                                                                                                                                                                                                                                                                                                                                                                                                                                                                                                                                                                              |
|------------|-------|-----------------------------------------------------------------------------------------------------------------------------------------------------------------------------------------------------------------------------------------------------------------------------------------------------------------------------------------------------------------------------------------------------------------------------------------------------------------------------------------------------------------------------------------------------------------------------------------------------------------------------------------------------------------------------------------------------------------------------------------------------------------------|
| 목적         | 제1조   | 이 법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리며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종식하고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정의         | 제2조   |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li> <li>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li> <li>3. "장애서비스이용자"란 제2호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장애서비스를 지원 받는 사람을 말한다.</li> <li>4. "장애인권리침해"란 장애인 학대 및 폭력행위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와 장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차별행위를 포함한다.</li> <li>6. "탈시설"이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8.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에 관한 선택, 통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를 말한다.</li> </ol> |
| 국가 장애인 위원회 | 제3조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li> <li>② 국가위원회는 민간위원 대표 1인과 정부위원 대표 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 2인 및 15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 중 1인 및 비상임위원 중 과반수는 장애인으로 한다.</li> <li>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li> <li>2. 장애인정책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li> <li>3. 장애인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li> <li>4.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li> </ol> </li> </ol>                                                                                                                                                                                                                               |

| 구분              | 조문 번호 | 조문 내용 전문                                                                                                                                                                                                                                                                                                              |
|-----------------|-------|-----------------------------------------------------------------------------------------------------------------------------------------------------------------------------------------------------------------------------------------------------------------------------------------------------------------------|
|                 |       | 5. 장애인정책의 개발·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br>6. 장애인 관련 국제조약의 국내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br>7. 장애인지 정책에 관한 사항                                                                                                                                                                                                                                |
| 장애인지 정책 및 예산 조치 | 제11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기획, 수립, 시행, 평가되는 각종 정책 및 제도 등에 장애인의 권리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항을 제거하는 등 장애인지 관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r>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수립·집행하여야 한다.<br>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정책 또는 예산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장애인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존엄성의 존중         | 제13조  |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br>② 누구든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신체적, 정신적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 법앞의 평등 실현       | 제14조  | 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가지고 향유하며, 사회 참여의 모든 기회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br>② 누구든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법률로 부여되는 자격의 취득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br>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법률적 권한을 행사하고자 요구하는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자기 결정권의 보장      | 제17조  | ① 장애인은 자신의 삶 전반에 관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br>② 누구든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br>③ 장애인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탈시설과 자립생활 보장    | 제1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는 수용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정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 제37조  | 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br>1.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구분              | 조문 번호 | 조문 내용 전문                                                                                                                                                                                                                                                                                                                                                                                                                                                                                                |
|-----------------|-------|---------------------------------------------------------------------------------------------------------------------------------------------------------------------------------------------------------------------------------------------------------------------------------------------------------------------------------------------------------------------------------------------------------------------------------------------------------------------------------------------------------|
| 책무              |       | 2. 장애인지예산의 도입 및 실시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재원의 우선적 마련<br>3. 건물, 주거시설 및 도로 등의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교육, 건강, 안전, 사회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장애인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br>4.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br>5.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정책에 관한 정보를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br>6. 장애인의 연령, 성, 장애특성 및 생활환경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개인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결정 및 전달 체계의 구축<br>7. 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옹호할 수 있는 권리옹호 및 구제 체계의 구축<br>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 국가장애 연구원        | 제44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 권리옹호 및 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관련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br>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br>③ 연구원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
| 장애인 권리옹호 센터의 설치 | 제52조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리보장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이하 "장애인권리옹호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br>1.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br>2.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br>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옹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업무를 통할하고 지역 및 관계 기관 사이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br>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상담, 교육 및 구제 등 구체적인 권익옹호활동을 수행한다.                                                                                                                                                               |
| 장애 서비스 지원의 원칙   | 제82조  | ① 누구든지 장애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br>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br>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요구,                                                                                                                                                                                                                                                                                                                                                                      |

| 구분          | 조문 번호 | 조문 내용 전문                                                                                                                                                                                                                 |
|-------------|-------|--------------------------------------------------------------------------------------------------------------------------------------------------------------------------------------------------------------------------|
|             |       | <p>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서비스의 제공 여부, 장애서비스의 유형, 장애서비스의 제공량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장애서비스를 판정하는 경우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의학적 기준이 아닌 개인의 필요 정도 및 환경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
| 개인별<br>지원계획 | 제83조  |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요구, 의견,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서비스 결정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

### 3.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의 인권 기반 장애 인식 수준 분석

#### 1)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이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에 기반한 정성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서미화 의원안, 최보윤 의원안, 김예지 의원안의 해당 조문이며, 분석 단위는 각 법률안의 정의 조문에 포함된 개념적 요소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앞서 제시한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다차원적 구성, 즉 인지(cognitive), 윤리(ethical), 정의(justice)의 세 영역과 각 영역별 명제들로 구성된다. 각 명제는 장애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태도를 요구하며, 사회와 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개념적 기준으로 작동한다. 이에 따라 각 법률안이 이러한 명제들을 어느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방식은 3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첫째, ‘명확히 반영됨(2점)’은 해당 명제의 핵심 개념이 법률 조문에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포함된 경우를 의미한다. 둘째, ‘부분적으로 암시됨(1점)’은 명제의 일부 요소가 간접적이거나 함축적인 형태로 표현된 경우를 의미한다. 셋째, ‘전혀 반영되지 않음(0점)’은 해당 명제의



핵심 개념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평가는 단순한 용어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개념적 정합성과 의미 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그것이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취지—예컨대 장애의 상호작용적 이해, 인간 조건으로서의 손상 인식, 권리주체성 등—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법률 조문이 장애를 어떠한 존재론적·규범적·정치사회적 틀 속에서 개념화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방법은 인지, 윤리 및 정의 등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각 영역별 분석에서는 해당 영역의 명제에 따라 법률 조문이 반영하고 있는 장애 인식의 수준과 특징을 비교·평가한다. 이를 통해 각 법률안이 장애를 인간 조건, 사회적 관계, 그리고 권리의 문제로서 어떠한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 2) 인지 영역 분석 결과

### (1)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 관련 조문

| 구분         | 관련 조문                                                                                                                                                                                      |
|------------|--------------------------------------------------------------------------------------------------------------------------------------------------------------------------------------------|
| 서미화<br>의원안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장애”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br>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 최보윤<br>의원안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장애”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br>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 김예지<br>의원안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장애”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br>2.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 (2) 분석 결과

### ① 명제 1: 손상의 보편성

명제 1에 대한 분석 결과, 세 법률안 모두 손상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의원안은 손상을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로, 최보운 의원안과 김예지 의원안은 ‘신체적·정신적 특성’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 간 차이를 기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손상이 인간 삶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 조건이라는 인식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특히 세 법률안 모두 손상을 특정 개인에게 귀속된 속성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손상의 예측불가능성이나 잠재적 보편성에 대한 고려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장애를 특정 집단의 특수한 상태로 한정하는 경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장애를 인간 조건의 일부로 이해하는 보편주의적 관점과는 일정한 거리를 보이는 결과로 해석된다.

| 구분      | 점수 | 근거                                                                                                             |
|---------|----|----------------------------------------------------------------------------------------------------------------|
| 서미화 의원안 | 0  | 손상을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로 기술하고 있으나, 손상이 인간 삶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 조건이자 예측불가능한 잠재적 속성임을 명시하거나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부재하다.     |
| 최보운 의원안 | 0  | 손상을 ‘신체적·정신적 특성’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보편성에 대한 진술이라기보다 개인적 차이를 지칭하는 기술적 표현에 그치며, 손상의 보편성이나 예측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 김예지 의원안 | 0  | 최보운 의원안과 동일한 장애 정의를 채택함으로써, 역시 손상을 특정 개인의 특성으로만 전제하고 있으며, 손상을 인간 조건의 보편적 일부로 이해하는 관점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

### ② 명제 2: 손상의 실존성

명제 2에 대한 분석 결과, 세 법률안 모두 손상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이나 불편함과 같은 실존적 차원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법률안은 장애를 ‘사회참여의 제약’ 또는 ‘일상생활의 제약’이라는 기능적 결과로만 정의하고 있으며, 손상 경험 자체에서 비롯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감각적 경험에 대한 인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장애를 철저히 기능적 제한 상태로 환원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손상을 경험하는 개인의 삶의 질, 감각적 경험, 주관적 고통과 같은 측면을 법적 정의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장애 개념이 개인의 실존적 경험보다는 외부적으로 관찰 가능한 기능 제한에 중심을 두고 구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구분         | 점수 | 근거                                                                                                     |
|------------|----|--------------------------------------------------------------------------------------------------------|
| 서미화<br>의원안 | 0  |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의 제약’만을 언급할 뿐, 손상으로 인한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나 불편함이라는 실존적 차원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
| 최보운<br>의원안 | 0  |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의 제약’이라는 결과만 제시될 뿐, 손상 경험 자체의 고통이나 감각적·정신적 차원에 대한 인식은 결여되어 있다.                            |
| 김예지<br>의원안 | 0  | 최보운 의원안과 동일한 장애 정의를 채택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손상 경험 자체의 고통을 비롯한 실존적 경험은 법적 정의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으며, 장애는 기능적 제약 상태로만 이해된다. |

### ③ 명제 3: 사회적 억압에 따른 고통·불리의 가중

명제 3에 대한 분석 결과, 세 법률안 모두 부분적으로 해당 명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법률안 모두 ‘사회적·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과 같은 표현을 통해 장애 발생에 있어 사회적 요인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모델의 핵심 요소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벽이 손상의 고통을 가중시키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구조적으로 확대한다는 인과적 관계까지는 명확하게 서술되지 않는다. 즉, 사회적 요인이 장애 발생의 조건으로 제시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삶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불리함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분석적 수준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세 법률안은 사회적 억압의 존재를 인정하는 수준에는 도달하고 있으나, 그것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구조적 불평등의 심화 과정까지 충분히 포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구분         | 점수 | 근거                                                                                                              |
|------------|----|-----------------------------------------------------------------------------------------------------------------|
| 서미화<br>의원안 | 1  | '사회적·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회적 억압 요인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장벽이 손상의 고통을 가중시키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확대한다는 인과관계까지는 명확히 서술되지 않는다. |
| 최보윤<br>위원안 | 1  | 사회적 장벽을 장애 발생 요인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지원체계의 부재·불충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심화라는 문제의식은 암시적 수준에 머문다.                                     |
| 김예지<br>의원안 | 1  | 최보윤 의원안과 동일하게 환경적 요인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사회적 억압이 개인의 삶 전반에서 불리함을 구조적으로 증폭시킨다는 인식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

#### ④ 명제 4: 장애의 상호작용적 본질

명제 4에 대한 분석 결과, 세 법률안 모두 해당 명제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법률안은 장애를 개인적 요인(신체적·정신적 특성 또는 능력의 차이)과 환경적 요인(사회적·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의 상호작용적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특히 장애의 발생 원인을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지 않고, 개인과 환경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의료모델을 넘어서는 개념적 진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CRPD에서 제시하는 장애 개념과도 정합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명제 4는 세 법률안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반영된 요소로 판단되며, 이는 현재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이 최소한 장애의 발생 구조에 있어서는 상호작용적 관점을 일정 수준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구분         | 점수 | 근거                                                                                              |
|------------|----|-------------------------------------------------------------------------------------------------|
| 서미화<br>의원안 | 2  | 장애를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참여의 제약을 그 결과로 제시함으로써 상호작용적 장애 개념을 가장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
| 최보윤<br>위원안 | 2  | 장애를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장벽의 결합으로 설명하여, 단일 원인론을 배제하는 이원적 기원 개념을 분명히 반영한다.                                |
| 김예지<br>의원안 | 2  | 장애의 발생을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의 이원적 기원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다.                                    |



### 3) 윤리 영역 분석 결과

#### (1)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 관련 조문

| 구분         | 관련 조문                                                                                                                                                                                           |
|------------|-------------------------------------------------------------------------------------------------------------------------------------------------------------------------------------------------|
| 서미화<br>의원안 | 제2조(정의) 1호<br>제13조(존엄성의 존중)<br>제15조(고유성의 보장)<br>제10조(국민의 책임) ②<br>제79조(교육·홍보) ①<br>제80조(사회적 인식개선) ①~②<br>제16조(인권침해 및 차별 금지) ①~③<br>제14조(법 앞의 평등 실현) ②<br>제10조(국민의 책임) ③<br>제18조(장애인지 정책 및 예산) ① |
| 최보윤<br>의원안 | 제3조(정의) 1호<br>제12조(존엄권) ①<br>제13조(평등권) ①<br>제5조(국민의 책임) ①<br>제40조(사회적 인식개선) ①~②<br>제41조(교육·홍보) ①~④<br>제5조(국민의 책임) ②<br>제4조(국가·지자체 책무) ⑤<br>제23조(지역사회 거주 및 자립생활권) ①                              |
| 김예지<br>의원안 | 제3조(정의) 1호<br>제9조(존엄권) ①~②<br>제4조(국가·지자체 책무) ②<br>제47조(사회적 인식개선) ①~②<br>제4조(국가·지자체 책무) ⑥<br>제10조(평등권) ①~②<br>제4조(국가·지자체 책무) ④<br>제11조(자기결정권) ①~②<br>제23조(지역사회 거주 및 자립생활권) ①                     |

#### (2) 분석 결과

##### ① 명제 5: 손상의 중립성·긍정 가능성

명제 5에 대한 분석 결과, 세 법률안 모두 손상의 보편성에 관한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미화 의원안은 손상을 ‘차이’로 표현하고, 고유성 및 정체성의 개념을 활용하여 손상을 결핍이나 일탈이 아닌 다양성의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세 법률안 모두 손상이 본질적으로 비정상이나 결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인간 경험의 다양한 형태로써 규범적으로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일 수 있다는 원칙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세 법률안은 손상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 조건이 아니라 특정 집단 내 특수한 상태로 전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손상의 예측불가능성, 생애주기 전반의 보편 가능성, 손상을 인간 조건의 일부로 보는 관점 전환이 조문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세 법률안은 장애인을 인간 조건의 일부를 구성하는 존재이자 보편적 권리의 주체로 위치시키는 보편주의적 관점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구분      | 점수 | 근거                                                                                      |
|---------|----|-----------------------------------------------------------------------------------------|
| 서미화 의원안 | 1  | 손상을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로 표현하여 다양성 관점의 접근은 보이나, 이를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인간 조건으로까지 명시하지는 않는다. |
| 최보운 의원안 | 0  | 손상을 '신체적·정신적 특성'으로 서술하나, 이는 기능적 차이의 기술에 머물며 손상의 보편성이나 인간 조건으로서의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다.           |
| 김예지 의원안 | 0  | 손상을 특정 개인의 상태로 전제하고 있으며, 손상을 생애주기 전반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조건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

## ② 명제 6: 심리적 태도(감정)의 평등성

명제 6에 대한 분석 결과, 세 법률안은 모두 심리적 태도의 평등성 원칙을 충실하게 구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법률안은 편견 제거를 위한 서로 다른 접근을 취하면서도 장애를 부정적 감정의 정당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규범적 원칙을 명확히 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세 법률안의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서미화 의원안은 비하·모욕 금지와 편견·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교육·홍보 의무화로 접근하며, 최보운 의원은 인격 존중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정규교육 과정 및 인권교육에 편입시켜 태도 형성의 제도적 기반 조성, 김예지 의원안은 고정관념·편견·유해 관행 근절을 국가책무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구조적 재생산을 차단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세 법률안은 금지·교육·국가책무라는 상이한 강조점을 보이기는 하나,



편견 제거와 평등의식 확산이라는 명제 6의 핵심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구분         | 점수 | 근거                                                                                                                               |
|------------|----|----------------------------------------------------------------------------------------------------------------------------------|
| 서미화<br>의원안 | 3  | 장애인에 대한 비하·모욕을 직접 금지하고, 편견·고정관념·유해한 관행의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및 사회적 인식개선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태도의 평등성 원칙을 직접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
| 최보운<br>의원안 | 3  | 장애인의 인격 존중을 모든 국민의 의무로 명시하고, 편견·고정관념의 근절과 권리 존중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 및 인권교육 체계에 편입함으로써, 평등한 태도의 형성을 제도적으로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
| 김예지<br>의원안 | 3  | 고정관념·편견·유해한 관행의 근절과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장애인의 동등한 존엄과 가치를 선언함으로써, 장애가 부정적 감정이나 차별적 태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규범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

### ③ 명제 7: 외부적 태도(행동)의 평등성

명제 7에 대한 분석 결과, 세 법률안은 모두 외부적 태도의 평등성 원칙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세 법률안 모두 배제·회피·과잉보호와 같은 차별적 행동을 직접 금지할 뿐 아니라 장애인의 참여를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의 제거까지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명제 7의 핵심 요소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법률안의 접근 방식에는 미미한 차이가 있다. 서미화 의원안은 차별금지권과 함께 지역사회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외부적 배제를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다룬다. 최보운 의원안은 생활 전 영역의 포괄적 차별금지와 함께 권리옹호·구제 체계를 의무화하는 등 사전 금지와 사후 구제를 결합하여 명시한다. 김예지 의원 안은 차별금지권과 국가의 법적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자기결정권 조항을 통해 온정주의적 개입까지 규율 범위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세 법률안은 차별행위의 금지, 구조적 장벽의 제거, 권리옹호·구제체계의 마련을 통해 외부적 태도의 평등성 원칙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차별금지를 선언적 원칙에 그치지 않고 예방·조치·구제에

이르는 제도적 장치를 국가 책무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명제 7은 세 법률안 모두에서 비교적 충실하게 제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구분         | 점수 | 근거                                                                                                                               |
|------------|----|----------------------------------------------------------------------------------------------------------------------------------|
| 서미화<br>의원안 | 3  | 장애인에 대한 비하·모욕을 직접 금지하고, 편견·고정관념·유해한 관행의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및 사회적 인식개선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태도의 평등성 원칙을 직접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
| 최보윤<br>의원안 | 3  | 장애인의 인격 존중을 모든 국민의 의무로 명시하고, 편견·고정관념의 근절과 권리 존중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 및 인권교육 체계에 편입함으로써, 평등한 태도의 형성을 제도적으로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
| 김예지<br>의원안 | 3  | 고정관념·편견·유해한 관행의 근절과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장애인의 동등한 존엄과 가치를 선언함으로써, 장애가 부정적 감정이나 차별적 태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규범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

#### 4) 정의 영역 분석 결과

##### (1)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 관련 조문

| 구분         | 관련 조문                                                                                                                                                                                                                           |
|------------|---------------------------------------------------------------------------------------------------------------------------------------------------------------------------------------------------------------------------------|
| 서미화<br>의원안 | 제13조(존엄성의 존중)<br>제17조(자기결정권)<br>제14조(법 앞의 평등 실현)<br>제16조(인권침해 및 차별 금지)<br>제4조(국가·지자체 책무)<br>제9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br>제11조(재정 확보)<br>제19조(합리적 편의제공)<br>제20조(무장애 환경의 조성)<br>제18조(장애인인지 정책 및 예산)<br>제22조(정책결정 과정 참여권)<br>제77조(장애인정책위원회) |
| 최보윤<br>의원안 | 제12조(존엄권)<br>제14조(자기결정권)<br>제13조(평등권)<br>제5조(국민의 책임) ②                                                                                                                                                                          |



| 구분         | 관련 조문                                                                                                                                                                                                                  |
|------------|------------------------------------------------------------------------------------------------------------------------------------------------------------------------------------------------------------------------|
|            | 제4조(국가·지자체 책무)<br>제7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br>제8조(재정 확보)<br>제37조(합리적 편의)<br>제38조(무장애 환경의 조성)<br>제23조(지역사회 거주 및 자립생활권)<br>제6조(장애주류화)<br>제16조(참여권)<br>제45조(장애인정책위원회)                                                             |
| 김예지<br>의원안 | 제9조(존엄권)<br>제11조(자기결정권)<br>제10조(평등권)<br>제4조(국가·지자체 책무) ④<br>제4조(국가·지자체 책무)<br>제7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br>제9조(재정 확보)<br>제44조(합리적 편의)<br>제45조(무장애 환경의 조성)<br>제23조(지역사회 거주 및 자립생활권)<br>제8조(장애주류화)<br>제15조(참여권)<br>제43조(장애인정책위원회) |

## (2) 분석 결과

### ① 명제 8: 장애인의 권리주체성

명제 8에 대한 분석 결과, 세 법률안은 모두 장애인의 권리주체성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법률안 모두 존엄권과 자기결정권 조항을 통해 장애인을 보호나 시혜의 대상이 아닌 능동적 권리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명제 8의 핵심 내용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 법률안이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서미화 의원안은 존엄성 조항에서 장애인을 동등한 존엄을 지닌 권리 주체로 규정하고 자기결정권과 이들의 자율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최보운 의원안은 동등한 존엄과 가치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자기결정권 조항을 마련하는 등 권리주체성과 자기결정 원칙을 구조적으로 분리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안은 존엄권과 자기결정권을 통해 장애인을 능동적 권리주체

로 규정하고, 자신의 삶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세 법률안은 장애인을 권리 주체로 명시하고 자기결정권을 핵심 권리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명제 8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자기결정권의 법적 명시는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능동적 주체임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보호 중심에서 권리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규범적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 구분      | 점수 | 근거                                                                                                     |
|---------|----|--------------------------------------------------------------------------------------------------------|
| 서미화 의원안 | 3  | 장애인을 동등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주체로 규정하고 자기 삶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능동적 권리주체로 법제화하고 있다.    |
| 최보윤 의원안 | 3  | 장애인을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존엄과 가치를 지닌 주체로 선언하고, 자기 삶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선택·결정할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권리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
| 김예지 의원안 | 3  | 장애인의 동등한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고, 자기 삶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주체성을 자율성과 결합된 형태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

## ② 명제 9: 동등한 대우

명제 9에 대한 분석 결과, 세 법률안은 모두 동등한 대우의 원칙을 비교적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세 법률안 모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장애인을 동등한 시민적 지위를 가진 권리주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적 규범으로 확립하고 있으며, 이는 명제 9의 핵심 내용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 법률안의 접근하는 방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서미화 의원안은 법 앞의 평등 조항과 인권침해·차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두어, 동등한 인정의 원칙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이중으로 보장한다. 최보윤 의원안은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법적 보호 의무를 부과하여, 평등 원칙을 권리보장과 공적 책임의 차원에서 구체화한다. 김예지 의원안은 포괄적 차별금지와 함께 국가의 효과적 법적 보호 의무를 명시하여, 동등한 대우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인한다.

따라서 세 법률안은 차별금지를 선언적 원칙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명제 9를 비교적 충실하게 제도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과 법적 보호의무의 결합은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한다는 점에 있어 동등한 대우 원칙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핵심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

| 구분         | 점수 | 근거                                                                                                                             |
|------------|----|--------------------------------------------------------------------------------------------------------------------------------|
| 서미화<br>의원안 | 3  | 장애인이 법 앞에서 동등하게 인정받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한편, 차별과 인권침해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동등한 대우의 원칙을 권리보장과 공적 책임의 차원에서 구현하고 있다. |
| 최보운<br>위원안 | 3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차별금지 및 법적 보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등한 대우의 원칙을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
| 김예지<br>의원안 | 3  |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금지와 국가의 효과적인 법적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차별행위의 방지 및 권리보호 체계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동등한 대우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

### ③ 명제 10: 국가의 의무성

명제 10에 대한 분석 결과, 세 법률안은 모두 국가의 의무성을 상당한 수준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법률안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재정 확보, 정책 마련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국가의 재량적 선택이 아니라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제 10의 핵심 요소를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세 법률안은 국가책임을 구체화하는 방식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서미화 의원안은 권리보장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을 제시한다. 최보운 의원안은 장애인의 인권 존중과 완전한 사회참여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종합계획과 재정 확보 의무를 함께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이행수단을 명시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안 역시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의무

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세 법률안은 모두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국가의 필수적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종합계획, 재정, 정책 집행과 같은 구체적 장치와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책임의 원칙을 상당한 수준에서 제도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이 국가의 소극적 배려가 아니라 적극적 이행책임의 문제임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구분         | 점수 | 근거                                                                                                         |
|------------|----|------------------------------------------------------------------------------------------------------------|
| 서미화<br>의원안 | 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에 관한 책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의무성을 법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
| 최보윤<br>의원안 | 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의 인권 존중과 완전한 사회참여 보장 의무를 부과하고,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재정 확보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적극적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있다. |
| 김예지<br>의원안 | 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장 및 사회참여 실현 책임을 명시하고, 필요한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이행책임을 포괄적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

#### ④ 명제 11: 지원의 효과성

명제 11에 대한 분석 결과, 세 법률안은 모두 지원의 효과성에 관한 요소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세 법률안 모두 합리적 편의 제공, 무장애 환경 조성, 필요한 지원의 제공과 같은 규정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와 접근성 보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지원이 단순한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개선 효과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손상으로 인한 고통이나 사회적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야 한다는 점까지는 명시적으로 기술적으로 있지 않다. 즉, 지원의 수단과 내용은 제도화되어 있으나 그러한 지원이 어떠한 결과를 산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효과성 기준은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제시되고 있다. 다만 최보윤 의원안이 지역사회 거주 및 자립생활에 관한 규정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은 의의가 있으나, 이 역시 지원의 궁극적 효과를 독립



된 규범 원칙으로 제시하는 수준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세 법률안은 모두 지원의 효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것을 명시적이고 독자적인 원칙으로 충분히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질적 참여’, ‘완전한 포용’, ‘동등한 거주’와 같은 표현은 지원이 형식적 제공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제로 장애인의 생활조건과 사회참여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능하여야 한다는 점을 일정 부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구분      | 점수 | 근거                                                                                                                           |
|---------|----|------------------------------------------------------------------------------------------------------------------------------|
| 서미화 의원안 | 2  | 합리적 편의 제공과 무장애 환경 조성을 통해 실질적 참여를 위한 지원 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이 손상으로 인한 고통이나 사회적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야 한다는 효과성 기준까지는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
| 최보운 의원안 | 2  | 실질적 접근성 보장과 지역사회 거주·포용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의 성과나 실효성을 판단할 명시적 기준은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
| 김예지 의원안 | 2  | 합리적 편의, 무장애 환경,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통해 실질적 참여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지원이 고통과 사회적 불이익의 완화라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효과성 원칙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

#### ⑤ 명제 12: 지원의 충분성

명제 12에 대한 분석 결과, 세 법률안은 모두 지원의 충분성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법률안 모두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일정 부분 제도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존엄한 삶과 실질적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할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는 점까지는 상기 법률안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즉, 세 법률안은 국가의 재정적 의무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그 의무가 어떠한 양적·질적 수준에서 충족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불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서미화 의원안은 필요한 재정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

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고, 최보운 의원안과 김예지 의원안 역시 재정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지원의 적정 수준과 이것이 장애인의 존엄한 삶의 실현과 연계되는 관계까지는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 법률안은 모두 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수준에는 도달하고 있으나, 지원의 충분성을 독자적이고 명시적인 규범 원칙으로까지 충분히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지원이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넘어 존엄한 삶과 실질적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관점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구분      | 점수 | 근거                                                                                                          |
|---------|----|-------------------------------------------------------------------------------------------------------------|
| 서미화 의원안 | 1  |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재정의 우선적 확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원이 존엄한 삶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충분하여야 한다는 기준이나 불충분한 지원을 판단할 기준은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
| 최보운 의원안 | 1  | 재정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의 충분성 기준이나 최소 생존을 넘어 존엄한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수준까지는 명시적으로 규범화하고 있지 않다.                        |
| 김예지 의원안 | 1  | 재정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지원이 실질적으로 충분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그 충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

#### ⑥ 명제 13: 지원의 주류화

명제 13에 대한 분석 결과, 세 법률안은 모두 지원의 주류화 원칙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법률안 모두 정책 및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주류화 조향을 통해 장애 관점을 일반 정책과 행정 체계 속에 통합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장애 관련 지원을 분리된 특수 영역에 한정하지 않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률안에 장애 주류화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특수화 전략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완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까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즉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은 제도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일반 정책과 장애인 지원 사이의 우선관계 및 보완관계는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서미화 의원안이 장애인지 정책 및 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나, 이 역시 주류화와 특수화의 관계를 명시적 원칙으로 구조화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세 법률안은 모두 장애 문제를 별도의 분리된 정책영역으로만 다루지 않고, 정책과 예산의 일반적 구조 속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도달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의 주류화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지원은 예외적·보완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는 점까지 충분히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구분      | 점수 | 근거                                                                                                                              |
|---------|----|---------------------------------------------------------------------------------------------------------------------------------|
| 서미화 의원안 | 2  | 모든 정책과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참여를 고려하고 장애주류화 조치를 명시함으로써 통합적 접근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류화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화는 보완적으로 활용한다는 규범 구조까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
| 최보운 의원안 | 2  | 법령·정책·예산 전 과정에 장애포괄적 관점을 통합하는 장애주류화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주류화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주류화와 특수화의 우선관계 및 보완관계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
| 김예지 의원안 | 2  | 정책과 예산 과정에 장애 관점을 통합하도록 규정하여 지원의 주류화 방향을 반영하고 있으나, 분리된 특수 지원이 어떠한 조건에서 보완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명시적 원칙은 제시하지 않는다.                    |

#### ⑦ 명제 14: 당사자 참여

명제 14에 대한 분석 결과, 세 법률안은 모두 당사자 참여 원칙을 상당한 수준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법률안 모두 장애인 관련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견수렴과 참여 보장을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고 있는 등 명제 14의 핵심 요소를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각 법률안별 당사자 참여의 구체화 방식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먼저 서미화 의원안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견수렴과 참여 보장을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에 장애인과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규정함으로써 참여 보장의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최보운 의원안은 장애인이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위원회에 장애인과 전문가의 참

여를 명시함으로써 참여의 범위와 절차를 보다 분명하게 구조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예지 의원안은 참여권 조항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정책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세 법률안 모두 당사자 참여를 단순한 형식적 의견수렴에서 벗어나 정책결정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장애인을 정책의 대상에만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정책 형성과 집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권리주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제 14는 세 법률안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구분      | 점수 | 근거                                                                                                           |
|---------|----|--------------------------------------------------------------------------------------------------------------|
| 서미화 의원안 | 3  |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견수렴과 참여 보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장애인과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명시함으로써 당사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 최보운 의원안 | 3  | 장애인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의 계획·집행·평가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관련 위원회에 장애인과 전문가의 참여를 명시함으로써 당사자 참여를 정책과정의 핵심 원리로 제도화하고 있다. |
| 김예지 의원안 | 3  | 장애인의 삶과 관련된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회 구성에 장애인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당사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



## 4. 소결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인권 기반 장애 인식 개념의 규범적 구성요소를 입법 발의된 세 개 주요 법률안에 적용하여 개별 법률의 인권 기반 장애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4-4-1〉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 분석 결과

| 구분 | 명제                        | 법률안 점수     |            |            |
|----|---------------------------|------------|------------|------------|
|    |                           | 서미화<br>의원안 | 최보윤<br>의원안 | 김예지<br>의원안 |
| 인지 | 명제 1. 손상의 보편성             | 0          | 0          | 0          |
|    | 명제 2. 손상의 실존성             | 0          | 0          | 0          |
|    | 명제 3. 사회적 억압에 따른 고통불리의 가중 | 1          | 1          | 1          |
|    | 명제 4. 장애의 상호작용적 본질        | 2          | 2          | 2          |
| 윤리 | 명제 5. 손상의 중립성·긍정 가능성      | 1          | 0          | 0          |
|    | 명제 6. 심리적 태도(감정)의 평등성     | 3          | 3          | 3          |
|    | 명제 7. 외부적 태도(행동)의 평등성     | 3          | 3          | 3          |
| 정의 | 명제 8. 장애인의 권리주체성          | 3          | 3          | 3          |
|    | 명제 9. 동등한 대우              | 3          | 3          | 3          |
|    | 명제 10. 국가의 의무성            | 3          | 3          | 3          |
|    | 명제 11. 지원의 효과성            | 2          | 2          | 2          |
|    | 명제 12. 지원의 충분성            | 1          | 1          | 1          |
|    | 명제 13. 지원의 주류화            | 2          | 2          | 2          |
|    | 명제 14. 당사자 참여             | 3          | 3          | 3          |
| 총점 |                           | 27         | 26         | 26         |

세 개 법률안(서미화안, 최보윤안, 김예지안)은 전반적으로 인권 기반 장애 인식 중 윤리 및 정의 영역에서는 높은 수준의 반영도를 보이는 반면, 인지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반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지 영역에 있어서는 세 법률안 모두 명제 1(손상의 보편성)과 명제 2(손상의 실존성)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를 인간 조건의 보편적 특성이나 개인의 실존적 경험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법률안의 장애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명제 3(사회적 억압에 따른

고통·불리의 가중)은 모든 법률안에서 1점에 해당하여 부분적으로 반영되었으며, 명제 4(장애의 상호작용적 본질)는 모두 2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현행 법률안이 사회적 장벽과 환경 요인을 고려하는 사회모델의 관점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명제 5(손상의 중립성·긍정 가능성)는 서미화안에서만 제한적으로 반영되고, 나머지 법률안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손상에 대한 규범적 재해석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윤리 영역에서는 세 법률안 모두 명제 6(심리적 태도의 평등성), 명제 7(외부적 태도의 평등성)에서 동일하게 최고 점수인 3점을 기록하여, 장애인을 동등한 존엄의 주체로 존중하고 차별적 태도를 배제해야 한다는 윤리적 원칙은 충분히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의 영역 역시 전반적으로 높은 반영 수준을 보였는데, 명제 8(권리주체성), 명제 9(동등한 대우), 명제 10(국가의 의무성), 명제 14(당사자 참여)는 모두 3점으로 나타나, 권리보장과 국가 책임, 참여 원칙 등은 세 법률안에 모두 강하게 구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명제 11(지원의 효과성)과 명제 13(지원의 주류화)은 2점, 명제 12(지원의 충분성)는 1점으로 나타나, 지원의 질적·양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완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총점을 기준으로 세 법률안의 인권 기반 장애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서미화안(27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최보윤안과 김예지안은 각각 26점으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점수 차이는 크지 않으며, 세 법률안 모두 공통적으로 인지 영역의 핵심 요소—특히 손상의 보편성, 실존성, 규범적 중립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행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이 윤리적·규범적 선언 수준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개념 자체의 인식론적 기초, 즉 장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개념적 전환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장애 정의의 재구성이 단순한 권리 조항의 강화가 아니라, 장애 개념의 인지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함축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V. 인권 기반 주관적 장애 인식 측정 문항 개발

1. 주관적 장애 인식 측정 문항 개발 절차
2. 주관적 장애 인식 측정 문항(안) 제안



## V. 인권 기반 주관적 장애 인식 측정 문항 개발

### 1. 주관적 장애 인식 측정 문항 개발 절차

인권 기반 주관적 장애 인식 측정 문항 개발 절차는 1단계, 개념정의 및 차원구성, 2단계, 초기 문항 풀(Item Pool) 구성, 3단계, 연구진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 검토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권 기반 주관적 장애 인식 척도 개발이 아니라 척도 관련 문항 개발이기 때문에, 4단계 내용타당도 검증, 5단계 예비조사, 6단계 본조사 및 타당도 검증의 절차는 수행하지 않았다.

#### 1) 1단계: 개념정의 및 차원구성

우선, 1단계는 ‘개념 정의 및 차원구성’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권 기반 주관적 장애 인식’ 척도 문항은 이론적으로 장애 인권모델, 장애인권리 협약 및 Honneth(1995)의 인정 이론 등에 기반하고 있는데, ‘인권 기반 주관적 장애 인식’이란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적·구조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고, 장애인을 보호나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며,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그리고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 내면화한 개인의 인식체계”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화에 근거하여, ‘인권 기반 주관적 장애 인식’ 개념을 타자성에 대한 이해(인지), 타자에 대한 윤리적 대응(윤리), 그리고 공동체 차원의 정의(정의)로 차원을 구성하였다.

#### (1) 인지(Cognition) 차원

인지 차원은, “장애를 인간 조건의 일부이자 손상과 사회·환경적 조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인지 차원은 세부적으로 손상의 보편성, 손상의 실존성, 사회적 억압에 따른 고통·불리의 가중 및 장애의 상호작용적 본질로 구성된다. 첫째, 손상의 보편성은 “손상은 인간의 삶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인간 조건”을 의미한다. 둘째, 손상의 실존성은 “손상은 당사자의 일상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며, 그 과정에서 육체



적·정신적 고통이나 불편함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적 억압에 따른 고통·불리의 가중은 “손상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 지원체계의 부재 또는 불충분함으로 인해 일상생활, 이동, 사고, 교육, 고용, 문화·정치활동 등 사회적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추가적인 불편함과 사회적 불이익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의 상호작용적 본질은 “장애는 손상과 사회·환경적 조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개인의 사회적 참여가 제한되거나 불리함을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2) 윤리(Ethics) 차원

윤리 차원은, “손상과 장애를 바라보는 규범적 태도와 가치, 그리고 타자에 대한 정동적·행동적 대응”을 포함한다. 윤리 차원은 세부적으로 손상의 중립성·긍정 가능성, 심리적 태도(감정)의 평등성 및 외부적 태도(행동)의 평등성으로 구성된다. 첫째, 손상의 중립성·긍정 가능성은 “손상은 인간 다양성의 한 형태이며 본질적으로 비정상·결함·부정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손상은 적어도 규범적 중립성을 지니며, 인간 경험의 다양한 형태로서 긍정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심리적 태도(감정)의 평등성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은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므로, 장애인을 향한 심리적 태도는 비장애인들을 향한 태도와 동일한 수준의 존중, 개방성, 호의가 보장되어야 한다. 즉, 장애는 부정적 감정·거리두기·불편함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외부적 태도(행동)의 평등성은 “모든 사람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등한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상호작용에서의 배제, 회피, 과잉보호 등 차별적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정의(Justice) 차원

정의 차원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국가의 의무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정의 차원은 세부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주체성, 동등한 대우, 국가의 의무성, 지원의 효과성, 지원의 충분성, 지원의 주류화 및 당사자 참여로 구성된다. 첫째, 장애인의 권리주체성은 “장애인은 인간 존엄에 기초한 권리주체로서, 자신의 삶의 경험과 관점에 기반하여 권리의 내용과 의미를 재해석하고 확장하며 새롭게 요구·형성해 나갈 수 있는 능동적 주체”임을 의미한다. 둘째, 동등한 대우

는 “사회와 국가는 장애인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해야 하며, 장애를 이유로 권리·기회·참여 수준의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 더불어 사회적 억압으로 인해 초래된 기회 불평등 및 결과적 불이익을 보상하고자 하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는 동등한 대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국가의 의무성은 “국가는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 향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지원의 효과성은 “사회와 국가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무장애 환경, 서비스 접근성, 합리적 편의 등)은 손상으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불이익을 완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지원의 충분성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은 형식적 제공을 넘어 손상의 고통과 사회적 억압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부족하거나 제한된 지원은 국가의 권리 보장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지원의 주류화는 “사회적 지원은 ‘주류화(mainstreaming)’를 원칙으로 하며, 특정 장애인구의 특수한 필요 또는 교차적 불리(intersectional disadvantage)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수화(분리 접근)’ 전략을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참여는 “국가는 장애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이는 민주적 정당성과 권리기반 접근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 2) 2단계: 초기 문항 풀(Item Pool) 구성

초기 문항 풀을 구성하는 단계는 위에서 정의된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수많은 질문 후보를 생성하는 단계로서, 통상적으로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을 혼용한다. 즉, 연역적 방법은 기존 문헌 연구나 이론을 바탕으로 문항을 추출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귀납적 방법은 대상자 인터뷰나 개방형 질문을 통해 실제 언어사용 습관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연역적 방법을 활용하여 초기 문항 풀을 구성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검토한 인권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주관적 장애 인식 관련 국내외 척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분석하여, 초기 문항 풀을 구성하였다.



### 3) 3단계: 연구진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 검토

안면 타당도 검토 단계는 연구진들이 위에서 구성된 초기 문항 풀이 측정 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명의 연구진들이 초기 문항 풀을 대상으로 3가지 차원 및 14개 세부 차원을 반영하는 지를 교차검증하였다.

## 2. 주관적 장애 인식 측정 문항(안) 제안

위에서 제시한 3단계를 거쳐서 본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주관적 장애 인식 측정 문항을 개발 및 제안하고자 한다. 각 차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인지 차원

인지 차원은 세부적으로 손상의 보편성, 손상의 실존성, 사회적 억압에 따른 고통·불리의 가중 및 장애의 상호작용적 본질로 구성되며, 각각의 세부 차원에 포함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5-2-1〉 인지 차원 문항

| 세부 차원                   | 문항                                                                 |
|-------------------------|--------------------------------------------------------------------|
| 1. 손상의 보편성              | 장애(손상)를 가졌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다                                |
|                         | 장애(손상)는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이다                                       |
|                         | 장애(손상)는 누구에게나 삶의 어느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 삶의 보편적 조건이다.                  |
|                         | 장애(손상)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다양성 중 하나다.                                       |
| 2. 손상의 실존성              | 장애(손상)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모습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
|                         | 장애(손상)는 개인의 일상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                         | 장애(손상)는 개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
| 3. 사회적 억압에 따른 고통·불리의 가중 | 서비스 신청·심사 절차가 복잡해 실제 이용이 어렵다고 본다.                                  |
|                         | 적절한 지원이 있으면 장애인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                                   |
|                         |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격리와 같은 사회적 배제를 선고받는 것과 같다                              |
|                         | 장애(손상)로 인한 어려움은 사회적 지원이 부족할수록 더 커진다.                               |
|                         | 장애(손상)를 가진 사람은 사회적 장벽 때문에 이동, 교육, 고용, 문화생활 등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다. |

| 세부 차원           | 문항                                                         |
|-----------------|------------------------------------------------------------|
| 4. 장애의 상호작용적 본질 | 장애는 주로 개인의 신체·정신 손상 때문에 생긴다.(R) <sup>1)</sup>              |
|                 |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보다는 사회적 장벽과 차별로 인해 발생한다                  |
|                 |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주로 사회 환경의 문제이지 개인의 손상 때문이 아니다.         |
|                 | 장애는 개인의 손상(신체·정신적 특성)과 사회적 장벽(환경·제도·태도)이 함께 작용하면서 생기는 것이다. |
|                 | 동일한 장애(손상)를 가지고 있어도 사회적 환경에 따라 삶의 경험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 2) 윤리 차원

윤리 차원은 세부적으로 손상의 중립성·긍정 가능성, 심리적 태도(감정)의 평등성 및 외부적 태도(행동)의 평등성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세부 차원에 포함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5-2-2〉 윤리 차원 문항

| 세부 차원              | 문항                                                    |
|--------------------|-------------------------------------------------------|
| 5. 손상의 중립성·긍정 가능성  | 나는 장애(손상)를 숨기거나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정체성의 일부로 본다.    |
|                    |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손상)를 정체성으로 표현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장애(손상)는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거나 열등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
|                    | 장애(손상)가 있는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
| 6. 심리적 태도(감정)의 평등성 | 나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동일한 인간적 존엄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한다.       |
|                    | 장애인의 삶은 보호의 대상이기 이전에 존엄한 삶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본다.            |
|                    |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성'에 장애인을 맞추는 것은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 나는 장애인을 대할 때 불편함이나 어색함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
|                    | 나는 장애인을 대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다. |
|                    | 나는 장애인과 함께 있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

1) R은 역문항(Reverse Item)을 의미함



| 세부 차원              | 문항                                                          |
|--------------------|-------------------------------------------------------------|
| 7. 외부적 태도(행동)의 평등성 | 장애인의 삶을 대신 판단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존엄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                  |
|                    |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다.                  |
|                    | 나는 장애인이 학교, 직장,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인다.            |
|                    | 나는 장애인이 주변에 있을 때, 필요하지 않은데도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과하게 대하려 하지 않는다. |

### 3) 정의 차원

정의 차원은 장애인의 권리 주체성, 동등한 대우, 국가의 의무성, 지원의 효과성, 지원의 충분성, 지원의 주류화 및 당사자 참여로 구성되며, 각각의 세부 차원에 포함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5-2-3〉 정의 차원 문항

| 세부 차원          | 문항                                                     |
|----------------|--------------------------------------------------------|
| 8. 장애인의 권리 주체성 | 장애인의 일상적 선택과 삶의 방식은 존엄성의 표현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장애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
|                | 장애인도 결혼, 출산, 양육 등에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                | 장애인은 지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시민이다. |
|                | 장애인의 삶의 경험과 의견은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
| 9. 동등한 대우      | 장애인의 시민권, 노동권, 주거권은 다른 시민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
|                | 나는 장애인에게도 모든 기본적 인권이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장애인의 권리는 복지 차원의 배려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일부라고 본다.               |
|                | 장애 관련 지원에 대한 요구가 지나친 것 같다.                             |
|                |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 일자리, 이동, 문화생활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

| 세부 차원       | 문항                                                                       |
|-------------|--------------------------------------------------------------------------|
|             | 사회적 억압으로 인해 초래된 기회 불평등 및 결과적 불이익을 보상하고자 하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는 동등한 대우의 원칙에 부합한다. |
|             | 장애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다.                                            |
|             | 합리적 편의 제공은 최소화해야 한다.(R)                                                  |
| 10. 국가의 의무성 |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보다 사회의 책임 있는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             | 장애 관련 지원은 국가의 사회적 책임 범주에 속한다.                                            |
|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사회보장 제도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                                       |
|             | 국가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
| 11. 지원의 효과성 | 장애인 지원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
|             | 장애인 지원은 장애인의 자립과 자기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
|             | 장애인 지원은 실제 변화보다는 형식적인 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R)                                |
| 12. 지원의 충분성 | 우리 사회의 대중교통·건물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R)                               |
|             | 학교/직장/공공기관에서 합리적 편의 제공이 실제로 잘 이루어진다.(R)                                  |
|             | 장애인 지원 제도는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도달하고 있다.(R)                                      |
|             | 장애인 지원은 최소한의 생존 수준이 아니라, 존엄한 삶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
|             | 장애인 지원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 13. 지원의 주류화 | 장애인 지원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제도 안에서 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             |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나 제도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 14. 당사자 참여  | 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 결정 과정에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
|             | 장애인의 정치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                                 |
|             | 전문가가 결정하면 당사자 참여는 없어도 된다.(R)                                             |



## VI.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 VI. 결론

### 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본 연구는 장애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와 정책·제도 간의 괴리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장애 개념을 재구성하고 이를 개인의 인식과 제도적 구조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기존 장애 연구가 개인의 태도와 제도 분석을 분절적으로 다루어 온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 인식과 법·제도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한 개념 분석과 규범적 이론 구성을 통해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이라는 새로운 개념적 틀을 정립하였다. 이 개념은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나 비정상성으로 환원하지 않고, 인간 조건의 일부이자 손상과 사회적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인지적 차원, 장애를 바라보는 가치와 태도의 문제로서 존엄성과 평등을 요구하는 윤리적 차원,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권리 보장의 문제를 포함하는 정의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다차원적 구조는 장애를 단순한 상태나 속성이 아닌, 인식·관계·제도의 복합적 산물로 이해하는 데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근간을 이루는 인지적 차원은 손상의 보편성, 실존성, 사회적 억압에 따른 불리의 가중, 그리고 상호작용적 본질이라는 핵심 명제로 구성되는데, 이는 장애를 ‘결핍’이나 ‘부족’의 문제로 환원하는 기존의 의료모델적 사고와, 손상의 실존적 경험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사회모델의 한계를 동시에 비판적으로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나아가 인권 모델이 제시하는 존엄과 권리의 관점을 인권 기반 장애 개념의 중심축으로 포용함으로써, 장애를 인간 다양성의 한 형태로 재위치시키는 규범적 전환을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개념화를 토대로 본 연구는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을 중심으로 장애 개념의 반영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법률안은 장애를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의 관계적·상호작용적 본질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었으며, 윤리 및 정의 영역에



서는 권리주체성, 동등한 대우, 국가의 의무, 당사자 참여 등 인권적 요소가 높은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를 권리의 문제로 재구성하려는 인권모델의 영향이 일정 부분 법제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인지 영역에서는 손상의 보편성, 실존성, 그리고 규범적 중립성과 같은 핵심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억압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에 대한 설명 또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현행 법률안이 여전히 사회모델 중심의 제한적 개념 구조에 기반하고 있으며, 장애를 인간 조건과 다양성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권리 보장의 선연적 수준에서는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장애 개념의 인식론적 기초에 해당하는 인지적 전환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한편, 본 연구는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주관적 장애 인식 측정 문항(안)’을 개발하였다. 문항 개발은 개념 정의 및 차원 구성, 초기 문항 풀 구성, 연구진 안면 타당도 검토의 세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연구와 척도를 바탕으로 연역적 방식으로 문항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인지 차원 17문항, 윤리 차원 14문항, 정의 차원 30문항으로 구성된 총 61문항의 측정 문항(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장애 인식을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 구조로 측정할 수 있는 기초 도구로서, 향후 실증 연구와 정책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장애 개념 및 인식의 이론적 재구성, 법률 분석을 통한 제도적 적용 가능성 검토, 그리고 주관적 장애 인식 측정 도구 개발을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장애 인식을 둘러싼 이론·제도·경험 차원을 연결하는 연구 틀을 제시하였다. 이는 장애를 단순한 개인의 특성이 아닌 사회적 관계와 권리의 문제로 재구성하고, 나아가 인간 다양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개념적 정립과 그 법적·경험적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동시에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도 다수 존재한다.

첫째, 인권 기반 장애 인식 개념의 이론적 타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의료모델, 사회모델, 인권모델을 통합하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으나, 각 명제 간의 관계 구조와 개념적 경계 설정, 그리고 철학적 정당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특히 손상과 손상성의 구분, 타자성에 대한 인식과 인정 이론 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 다양성 개념과의 접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론적 확장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 관련 법률의 인권 기반 장애 인식 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의 고도화와 적용 범위의 확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미 인지, 윤리, 정의의 세 가지 차원에 기반한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명제를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세 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이 각 명제를 어느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틀은 장애 개념의 다차원적 구조를 법률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유효한 출발점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이 분석틀을 더욱 정교화하여, 개별 조문의 문언적 표현을 넘어 조문 간의 맥락적 연계성, 법률 체계 내에서의 기능적 역할, 그리고 실제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효과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2년 후 시행 예정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권 기반 장애 인식 분석틀을 적용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해당 법률이 장애 개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인권 기반 접근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은 장애 정의 조항에 국한되지 않고, 권리 보장 조항, 차별금지 관련 규정, 서비스 제공 체계, 그리고 당사자 참여 구조 등 법률 전반에 대한 다층적 검토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장애 관련 법률 체계의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이 법률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장애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이 전체 법체계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장애 정의의 통일적 재구성, 권리주체성에 기반한 조항 정비, 서비스 제공 기준의 재설계, 참여 및 거버넌스 구조의 강화 등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이 도출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권 기반 주관적 장애 인식 측정 문항의 타당화를 위한 후속 실증 연구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문항 개발 단계에 초점을 두어 개념 정의와 차원 구성, 초기 문항 도출 및 안면 타당도 검토까지를 수행하였으나, 척도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자료에 기반한 체계적인 검증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특히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이 인지, 윤리, 정의의 다차원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차원이 실제로 구별되는 개념적 영역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개별 문항들이 해당 차원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실증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비조사는 문항의 이해 가능성, 응답 분포, 문항 간 상관관계 등을 점검하여 부적절하거나 중복되는 문항을 선별·수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척도의 초기 구조를 정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어지는 본조사는 정제된 문항을 바탕으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단계로서,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차원 구조가 경험적으로 재현되는지를 확인하는 핵심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문항 간 내적 일관성뿐만 아니라, 각 차원이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연관된 구조를 이루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척도의 구조적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실증조사는 단순한 통계적 검증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됨으로써 측정 도구의 적용 가능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장애 인식은 개인의 경험, 직업적 위치, 사회적 역할 등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집단을 포함한 조사 설계를 통해 척도의 외적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반복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정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 도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결국 향후 연구는 인권 기반 장애 인식 개념의 이론적 정교화, 법률과 제도에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제 분석의 심화, 그리고 주관적 장애 인식 측정 도구의 실증적 검증이라는 세 차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장애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장애를 인간 다양성

---

의 일부로 인정하며 장애가 있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포용적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감정기, 임은애. (2004). 양가적 장애인 차별척도 개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 학술대회 자료집, 357-382.
- 김경미, 김동기, 유동철, 신유리. (2013). 장애인용 사회적 배제 척도개발 연구. 직업재활연구, 23(1), 47-64.
- 김경미, 윤재영. (2013). 장애인의 환경 척도 개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3(1), 189-208.
- 김진우. (2024). 사회적모델 기반 장애개념의 법 조문화(條文化)에 따른 쟁점 고찰. 사회복지법제연구, 15(2), 93-129.
- 김희선. (2018).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적 고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사회법연구, 36, 203-237.
- 노승현. (2025). 장애대학생의 주체성 규명 및 척도 개발 연구. 한국과 세계, 7(3), 129-162.
- 문용린, 문미희, 박윤정, 김민강, 유경재. (2002).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신은경, 신형익. (2012). World Health Organization Disability Schedule 2.0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신은경, 이한나. (2011). 장애인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SADP and ATDP-O)의 타당도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63(1), 267-289.
- 이동영. (2020). 통합적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69, 71-110.
- 이미지, 지은. (2022). 직장 내 장애인 인식 척도 개발 및 표준화 연구. 성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이익섭, 신은경. (2006). 장애정체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척수손상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5, 111-141.
- 이한나, 권영지, 이민경, 문영민, 신은경. (2025). 만성적 기능제한인의 지원욕구와 장애인 정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소연, 서홍란, 김정인. (2016). 성인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재활복지, 20(4), 111-134.



- 조원일. (2011). 장애모델의 다중 패러다임에 의거한 한·일 장애인복지법의 비교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3(2), 25-44.
- 조임영. (20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장애’의 정의에 대한 해석론 연구. *노동법논총*, 37, 351-418.
- 한민정, 강영심. (2022). 발달장애인 가족 삶의 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지적장애연구*, 24(3), 29-54.
- Antonak, R. F. (1981). Prediction of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A multivariate analysis.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04(1), 119-123.
- Antonak, R. F. (1982).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Scale of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SADP). *Journal of Applied Rehabilitation Counseling*, 13(2), 22-29.
- Bickenbach, J. (2020). *Disability, health and difference*. In A. Cureton & D. Wasserman (Eds.), *The Oxford handbook of philosophy and disa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Degener, T. (2016). *Disability in a human rights context*. In M. Sabatello & M. Schulze (Eds.), *Human rights and disability advocacy*.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Degener, T. (2024). The 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 in times of triage. *Scandinavian Journal of Disability Research*, 26(1), 437-449.
- European Network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ENNHRI). (2023). *Human rights-based approach*. <https://ennhri.org/about-nhris/human-rights-based-approach/>
- Findler, L., Vilchinsky, N., & Werner, S. (2007). The multidimensional attitudes scale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MAS): Construction and validation.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50(3), 166-176.
- Honneth, A. (1995).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J. Anderson, Trans.). Polity Press.
- Honneth, A. (2014). *Freedom's right: The social foundations of democratic life*. Polity Press.

- Lawson, A., & Beckett, A. E. (2021). The social and human rights models of disability: Towards a complementarity thesi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25(2), 348–379.
- Shannon, C. D., Schoen, B., & Tansey, T. N. (2009). The effect of contact, context, and social power on undergraduate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75(4), 11–18.
- Siller, J., Chipman, A., Ferguson, L., & Vann, D. (1967). *Studies in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New York, NY: New York University.
- Siller, J. (1969). *Generality of attitudes toward the physically disabled*. In J. Siller (Ed.), *Studies in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New York, NY: New York University.
- Sivers, A. (2020). *In pursuit of justice for disability: Model neutrality revisited*. In A. Cureton & D. Wasserman (Eds.), *The Oxford Handbook of Philosophy and Disabi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aylor, S. M., & Dear, M. J. (1981). Scaling community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 *Schizophrenia bulletin*, 7(2), 225–240.
- United Nations. (2003). *The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Towards a common understanding among UN agencies*.
-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roup (UNSDG). (2024). *Human rights-based approach*. <https://unsdg.un.org/2030-agenda/universal-values/human-rights-based-approach>
- Waddington, L. (2018). *Part IV: Influence of the CRPD on disability assessments and compilation of good practice*. In *Disability Assessment in European States: ANED Synthesis Report*. European Network of Academic Experts in the Field of Disability (ANED).
- Waddington, L., & Priestley, M. (2021). A human rights approach to disability assess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Social Policy*, 37(1), 1–15.
- Yuker, H. E., Block, J. R., & Campbell, W. J. (1960). A scale to measure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Human Resources Study*, 5, 1–24.



Yuker, H. E., Block, J. R., & Young, J. H. (1966).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Human Resources Center Monograph*, 7.



한국장애인재단 2026-02

## 인권 기반 장애 인식의 개념화와 적용 : 장애 법률 분석과 측정 도구 개발

발 행 처 한국장애인재단

발 행 일 2026년 4월 30일

발 행 인 권 선 진

주 소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2층

전 화 02)6399-6235

홈페이지 <https://kfpd.org/>

인쇄처 디자인이인

---

ISBN 979-11-86957-13-4





주소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207  
전화 02)6399-6235 홈페이지 <https://kfpd.org/>

